



경기도 외국인 산업재해자 실태조사

2017. 12.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
Gyeonggi Institute of Research and Policy Development for Migrants' Human Rights

경기도 외국인 산업재해자 실태조사

2017. 12.

연구책임자 _ 오경석

공동연구원 _ 이경숙, 박선희, 홍규호, 앙크자르갈 빌궁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

Gyeonggi Institute of Research and Policy Development for Migrants' Human Rights

경기도 외국인 산업재해자 실태조사

펴낸이_ 오경석

엮은이_ 이경숙

펴낸날_ 2017. 12.

펴낸곳_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

15385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화정로 26번 (초지동 667-2) 4층
26 Hwajeong-ro, Danwon-gu, Ansan-si, Gyeonggi-do, 15385 Korea

전화_ 031_ 492_ 9347

전송_ 031_ 492_ 9349

누리집_ www.gmhr.or.kr

꾸미고 찍음_ 윤기획 (070.7716.8323)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 2017.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

Gyeonggi Institute of Research and Policy Development for Migrants' Human Rights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는 「경기도 외국인 인권 지원에 관한 조례」의 이념과 목적에 근거해 국제 인권 규범에 명시된 외국인 주민과 이주민의 보편적이며 평등한 기본권의 제도화 및 주류화를 목표로 하는 전국 최초의 외국인 인권 정책 전담개발기관입니다.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는 민관협력 거버넌스와 다양한 네트워킹을 바탕으로 외국인 주민의 인권 실태 파악 및 개선안 마련을 위한 '연구-정책개발-실행'을 종합적으로 시행합니다. 또한, 정책개발 과정에서 외국인 주민과 시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모색합니다.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의 최종적인 지향점은 외국인 인권 정책 개발자와 집행자, 수요자 사이의 정책 환류 체계를 구축하고, 외국인 인권 정책의 지지 기반을 시민사회로 확장하여 인권과 다양성이 삶의 문화로 활성화되는 다문화 인권친화적인 지역사회형성에 이바지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주요 활동은 다음과 같습니다.

- 외국인 인권 향상을 위한 시책 발굴
- 외국인 실태조사 및 모니터링
- 관련단체 간 협력 네트워크 구축
- 인권 침해 예방과 인권 문화 확산을 위한 내·외국인 인권 교육
- 인권 상담과 차별 금지 및 권리구제 방안 연구

<차례>

I. 조사의 개요

1. 목적과 필요성	18
2. 조사 대상과 방법	20
3. 조사 내용	28
4. 기대 효과와 활용 방안	37

II. 외국인 산재 현황과 선행 연구

1. 외국인 산재 현황과 관련 정책	40
2. 선행 연구	50

III. 설문 조사 결과

1. 조사 대상자 특성	54
1) 성별 분포	54
2) 연령별 분포	55
3) 국적별 분포	56
4) 조사 대상자의 거주기간	58
5) 조사 대상자의 한국어 대화 능력	59
6) 산재 사고 당시의 체류 자격	60
7) 치료 및 요양이 진행 중인 경우	63
2. 산재 유형 및 사고 현장	64
1) 산재 유형	64
2) 산재 발생 현장	65

3. 산재 원인 및 발생 환경	67
1) 산재 사고 사업장 직원 규모 및 근속 기간	67
2) 산재 발생 원인 및 이유	70
(1) 산재 발생 원인 및 이유	70
(2) 산재 발생 원인 및 이유 관련 요인 분석	73
3) 산재 발생 원인 및 이유 관련 교차 분석: 연령, 거주기간, 한국어 능력, 사업장 규모, 재직 기간, 체류자격	75
4. 산재 보험 처리 여부	78
1) 산재 사고 목격 여부	78
2) 산재 보험 신청 여부와 교차 분석	80
(1) 산재 보험 신청 여부	80
(2) 산재 보험 신청 관련 배경 변수별 분석	81
5. 산재 보험 이용시 어려운 점	85
1) 산재 보험 이용시 도와준 사람	85
2) 산재 보험 이용시 어려운 점	86
3) 산재 보험 이용시 어려운 점 관련 요인 분석	89
4) 산재 보험 이용시 어려운 점에 대한 배경 변인별 분산 분석: 연령, 거주기간, 한국어 능력, 사업장 규모, 재직기간, 비자유형 ...	91
6. 산재 보험을 신청하지 않은 이유	95
1) 사업주가 산재처리에 협조하지 않는 경우	95
2) 산재 보험 처리를 하지 않은 경우 치료 과정의 어려움	97
3) 산재 보험 미처리시 어려움 관련 배경 변인별 분산 분석: 연령, 거주기간, 한국어 능력, 사업장 규모, 재직기간, 체류자격 ...	100
4) 산재 보상	100
5) 산재 보험 미신청 이유	104

<차례>

7. 치료 및 요양 과정의 차별	107
1) 치료 및 요양 과정에서의 차별 경험	107
2) 차별 지각에 대한 분산 분석: 연령, 거주 기간, 한국어능력, 사업장 규모, 재직기간, 체류자격	109
3) 치료 기간 및 치료 기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111
4) 산재 발생 이후 거주와 고용	114
5) 산재 종결 후 경험한 어려움과 어려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119
6) 산재 예방을 위한 조치와 산재의 영향	121
8. 산재 보험 신청 여부에 따른 차이	125
1) 산재보험 신청 요인에 관한 회귀분석	125
2) 산재 치료비 부담 유형별 특성 비교 분석	127

IV. 면접 조사 결과

1. 면접 조사 개요	140
2. 산재 사업장과 노동 환경	142
1) 산재 사업장	142
2) 산재 사업장의 노동 환경	142
3. 산재 유형과 산재 신청 경로	146
1) 산재 유형	146
2) 산재 신청 경로	147
3) 후유증과 사업장 이동	149
4. 산재 처리 과정의 또 다른 어려움들	151
1) 산재 병원의 무성의와 인종주의	151
2) 산재 피해자의 신분 및 고용에 대한 불안	151

3) 취약한 공공 부문	152
4) 외국인 노동자들의 취약한 권리 의식	153

V. 요약과 시사점, 정책 제언

1. 요약과 시사점	156
2. 정책 제언	163

참고문헌	169
------------	-----

설문지	177
-----------	-----

<표 차례>

<표 I -1> 조사 대상 산재피해 경험자의 범위	20
<표 I -2> 조사대상자 국적	21
<표 I -3> 산재사고 당시 체류자격(VISA) 특성별 분류	21
<표 I -4> 산재보험 신청여부	22
<표 I -5> 면접 조사 외국인 산재 피해자 개요	22
<표 I -6> 외국인 산업재해자 실태조사 설문 문항	24
<표 I -7> 설문 조사 지원 기관과 담당 부수	25
<표 I -8> 케이스별 면접 대상자	26
<표 I -9> 전문가 조사 참여 자문위원 명단	26
<표 I -10> 1, 2차 전문가 조사 개요	27
<표 II -1> 2012년~2017년 5월 기준 이주노동자 재해현황	40
<표 II -2> 2013년~2016년 외국인 사고재해자 및 업무상 질병자 규모	40
<표 II -3> 2013년~2016년 외국인 사고재해자 성별 발생 현황	41
<표 II -4> 2015년~2016년 업종별 이주노동자 산업재해 현황	41
<표 II -5 > 2013년~2016년 발생형태별 외국인 사고재해자 현황	42
<표 II -6> 재해정도(요양기간)별 외국인 사고재해자 현황	43
<표 II -7> 근속기간별 외국인 사고재해자 현황	44
<표 II -8> 지역별 외국인 사고재해자 현황	45
<표III-1> 조사대상자 성별 분포	54
<표III-2> 조사대상자 연령 분포	55
<표III-3> 조사대상자 국적 분포	56
<표III-4> 2017년 6월 현재 한국 거주기간	58
<표III-5> 조사대상자의 사업장 내 한국어 대화 가능 정도	59
<표III-6> 산재사고 당시 체류자격(VISA)	60
<표III-7> 산재사고 당시 체류자격(VISA) 특성별 분류	62
<표III-8> 현재 치료 및 요양 진행 여부	63
<표III-9> 산재 유형	64
<표III-10> 산재 발생 현장	65

<표Ⅲ-11> 산재 시 재직 사업장 직원 수	67
<표Ⅲ-12> 사고 사업장 근무 기간	69
<표Ⅲ-13> 산재 원인 및 이유	72
<표Ⅲ-14> 산재 원인 및 이유의 요인별 문항별 평균 및 표준편차	74
<표Ⅲ-15> 산재발생시 체류자격(Visa)별 산재 원인 및 이유	75
<표Ⅲ-16> 한국어 능력별 산재 원인 및 이유	76
<표Ⅲ-17> 산재발생시 사업장 규모별 산재 원인 및 이유	76
<표Ⅲ-18> 한국 거주기간별 산재 원인 및 이유	77
<표Ⅲ-19> 산재보험 미처리 목격 경험 유무	78
<표Ⅲ-20> 목격한 산재보험 미처리 노동자 국적	79
<표Ⅲ-21> 산재보험 신청 유무	80
<표Ⅲ-22> 연령별 산재보험 신청 여부	81
<표Ⅲ-23> 한국 거주기간별 산재보험 신청여부	81
<표Ⅲ-24> 한국어 능력 수준별 산재보험 신청여부	82
<표Ⅲ-25> 산재발생 사업장 규모별 산재보험 신청여부	82
<표Ⅲ-26> 산재발생시 재직기간별 산재보험 신청여부	83
<표Ⅲ-27> 비자유형별 산재보험 신청여부	84
<표Ⅲ-28> 산재보험 이용시 조력자	85
<표Ⅲ-29> 산재보험 이용의 어려움	88
<표Ⅲ-30> 산재보험 이용 어려움의 요인별 평균 및 표준편차	90
<표Ⅲ-31> 산재 발생시 사업장 규모별 산재보험 이용의 어려움	91
<표Ⅲ-32> 산재 발생시 비자(Visa)유형별 산재보험 이용의 어려움	92
<표Ⅲ-33> 연령대별 산재보험 이용의 어려움	93
<표Ⅲ-34> 한국 거주기간별 산재보험 이용의 어려움	93
<표Ⅲ-35> 한국어 능력별 산재보험 이용의 어려움	93
<표Ⅲ-36> 산재 발생시 재직기간별 산재보험 이용의 어려움	94
<표Ⅲ-37> 사업주의 산재보험미처리 이유(중복응답)	96
<표Ⅲ-38> 산재치료비를 부담한 사람	97

<표 차례>

<표Ⅲ-39> 산재보험 미처리시 치료과정의 어려움	98
<표Ⅲ-40> 산재보험 미처리시 치료과정상 어려움의 평균 및 표준편차	99
<표Ⅲ-41> 산재발생시 비자(Visa)유형에 따른 치료과정상 어려움 정도	100
<표Ⅲ-42> 사업주로부터 제대로/충분한 보상을 받았는지 여부	101
<표Ⅲ-43> 연령별 산재시 적절한 보상 여부	102
<표Ⅲ-44> 한국 거주기간별 산재 시 적절한 보상 여부	102
<표Ⅲ-45> 한국어 수준별 산재시 적절한 보상 여부	103
<표Ⅲ-46> 산재 발생시 사업장 규모별 적절한 보상 여부	103
<표Ⅲ-47> 산재 발생시 재직기간별 적절한 보상 여부	104
<표Ⅲ-48> 산재보험 미신청 이유	105
<표Ⅲ-49> 치료 및 요양 과정시 경험한 차별 형태	107
<표Ⅲ-50> 치료 및 요양 과정상 차별경험의 평균값	108
<표Ⅲ-51> 연령별 차별지각	109
<표Ⅲ-52> 한국어 능력별 차별지각	109
<표Ⅲ-53> 산재 발생시 체류자격별 차별지각	110
<표Ⅲ-54> 한국 거주기간별 차별지각	110
<표Ⅲ-55> 산재 발생시 사업장 규모별 차별지각	110
<표Ⅲ-56> 산재 발생시 재직기간별 차별지각	110
<표Ⅲ-57> 산재 시 치료 및 요양 기간	111
<표Ⅲ-58> 비자 유형별 요양기간의 차이	113
<표Ⅲ-59> 산재보험 신청여부별 치료기간의 차이	113
<표Ⅲ-60> 통원치료 시 생활장소	114
<표Ⅲ-61> 비자 유형별 통원치료시 생활장소(중복응답)	116
<표Ⅲ-62> 치료 및 요양 종결 후 노동 여부	117
<표Ⅲ-63> 산재신청 여부에 따른 사고 작업장 복귀 여부	117
<표Ⅲ-64> 산재치료 후 일을 시작하지 않은 가장 큰 이유	118
<표Ⅲ-65> 산재 종결 후 경험한 어려움	119
<표Ⅲ-66> 산재 후 어려움 정도의 평균값	120

<표Ⅲ-67> 산재신청여부에 따른 산재 후 어려움 정도의 차이	120
<표Ⅲ-68> 산재 발생시 체류자격별 산재 후 어려움 정도	121
<표Ⅲ-69> 외국인노동자 산재예방에 필요한 조치(중복응답)	122
<표Ⅲ-70> 산재로 인한 가장 큰 손실	123
<표Ⅲ-71> 산재로 인한 영향 지속 예상 기간	124
<표Ⅲ-72> 산재보험신청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로지스틱회귀분석	126
<표Ⅲ-73> 비자(VISA)유형별 산재치료비 처리현황	127
<표Ⅲ-74> 성별 산재치료비 부담현황	128
<표Ⅲ-75> 연령별 산재치료비 부담현황	129
<표Ⅲ-76> 산재치료비 부담유형별 거주기간	130
<표Ⅲ-77> 산재치료비 부담유형별 한국어 능력	130
<표Ⅲ-78> 산재치료비 부담유형별 근무당시 사업장 규모	131
<표Ⅲ-79> 사고당시 근무기간별 산재치료비 부담 현황	132
<표Ⅲ-80> 산재치료비 부담유형별 요양기간	133
<표Ⅲ-81> 산재치료비 부담유형별 치료/요양 종결 후 노동 여부	133
<표Ⅲ-82> 산재치료 후 산재작업장 복귀 여부	134
<표Ⅲ-83> 산재치료비 부담유형별 일을 시작하지 않은 가장 큰 이유	135
<표Ⅲ-84> 산재치료비 부담유형별 산재의 가장 큰 손실에 대한 인식	135
<표Ⅲ-85> 산재치료비 부담유형별 산재 영향 지속 예상기간	136
<표Ⅲ-86> 산재치료비 부담유형별 산재치료시 주거지(중복응답)	136
<표Ⅲ-87> 산재치료비 부담유형별 산재 예방 조치에 대한 인식(중복응답)	137
<표Ⅲ-88> 산재치료비 부담유형별 산재 원인에 대한 인식차이	138
<표Ⅲ-89> 산재치료비 부담유형별 산재 후 어려움	138
<표Ⅳ-1> 케이스별 면접 대상자	140
<표Ⅳ-2> 면접 조사 외국인 산재 피해자 개요	141

<그림 차례>

<그림Ⅱ-1> 산재보험 산재처리절차·방법 및 산재보상의 종류	47
<그림Ⅱ-2> 산재처리 및 심사청구 절차	48
<그림Ⅲ-1> 조사대상자 성별 분포	54
<그림Ⅲ-2> 조사대상자 연령 분포	55
<그림Ⅲ-3> 조사대상자 국적 분포	57
<그림Ⅲ-4> 2017년 6월 현재 한국 거주기간	58
<그림Ⅲ-5> 조사대상자의 사업장 내 한국어 대화 가능 정도	59
<그림Ⅲ-6> 산재사고 당시 체류자격(VISA)	61
<그림Ⅲ-7> 산재사고 당시 체류자격(VISA) 특성별 분류	62
<그림Ⅲ-8> 현재 치료 및 요양 진행 여부	63
<그림Ⅲ-9> 산재 발생 현장	66
<그림Ⅲ-10> 산재 시 재직 사업장 직원 수	68
<그림Ⅲ-11> 사고 사업장 근무 기간	69
<그림Ⅲ-12> 산재보험 미처리 목격 경험 유무	78
<그림Ⅲ-13> 목격한 산재보험 미처리 노동자 국적	79
<그림Ⅲ-14> 산재보험 신청 유무	80
<그림Ⅲ-15> 산재보험 이용시 조력자	86
<그림Ⅲ-16> 산재치료비를 부담한 사람	97
<그림Ⅲ-17> 사업주로부터 제대로/충분한 보상을 받았는지 여부	101
<그림Ⅲ-18> 산재보험 미신청 이유	106
<그림Ⅲ-19> 산재 시 치료 및 요양 기간	111
<그림Ⅲ-20> 통원치료 시 생활장소	115
<그림Ⅲ-21> 산재치료 후 일을 시작하지 않은 가장 큰 이유	118
<그림Ⅲ-22> 외국인노동자 산재예방에 필요한 조치(중복응답)	122
<그림Ⅲ-23> 산재로 인한 가장 큰 손실	123
<그림Ⅲ-24> 산재로 인한 영향 지속 예상 기간	124

경기도 외국인 산업재해자 실태 조사

I. 조사의 개요

1. 목적과 필요성
2. 조사 대상과 방법
3. 조사 내용
4. 기대 효과와 활용 방안

1. 목적과 필요성

- 이 연구의 목적은 외국인 노동자 산업재해 피해자에 대한 양적, 질적 조사를 통해 외국인 산업재해 전반의 실체를 파악하고, 그러한 조사 결과를 기반으로 실질적인 개선 방안과 예방책을 제안하는 것임. 구체적으로 이 연구의 목적은 세 가지로 구분됨.
 - 첫째, 외국인 노동자 산업재해에 대한 양적, 질적 조사를 통해 현실적이고 실제적인 외국인 노동자 산업재해 전반의 실태를 파악하고자 함. 실태 파악을 위한 조사 내용에는 산재 유형 및 사고 사업장의 특징, 산재 원인 및 발생 환경, 산재 보험 처리 여부(누락율), 산재 보험 처리시 어려운 점, 산재 보험을 신청하지 않은 이유, 치료 및 요양 과정의 차별 등이 포함됨.
 - 둘째, 공식적인 통계에는 나타나지 않는 외국인 산재 피해를 조장하고 그 예방 및 개선을 어렵게 만드는 구체적인 요인들을 실증적으로 파악하고자 함. 이러한 요인에는 외국인 고용 사업장의 열악한 구조, 산재 피해자가 자력으로 접근하기 어려운 산재보상보험제도, 산재 피해자를 향한 인종주의와 문화적 차별, 산재 병원의 오진과 무성의, 외국인 노동자로서의 고용 및 체류에서의 불안감, 공공부문의 비협조, 피해자들 및 동료 외국인 노동자들의 낮은 권리의식 등이 포함됨.
 - 셋째, 이러한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나날이 더욱 심각해져 가고 있는 외국인 산재 실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촉구하고 ‘의사소통체계구축강화론’이라는 별다른 효과가 없는 외국인 산재 예방과 관련된 일반적인 가설을 넘어서는 실질적인 예방 및 개선 방안을 토론할 수 있는 공론화의 계기를 마련하고자 함.

- 이 연구의 필요성은 첫째, 외국인 노동자 산재 재해자의 입장에서 산재의 심각성과 복잡성을 실증적으로 파악하려는 연구가 매우 드물다는 점, 둘째, 2000년대 초반 이후 지속적으로 외국인 노동자의 높은 산업재해율 및 사망만인율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었으며 개선방안이 모색된 바 있으나, 이렇다 할 개선효과가 나타나지 않은 채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는 점, 셋째, 재해와 보상이라는 기술적인 프레임을 넘어서서 산재의 생애사적 의미가 재조명될 수 있어야 한다는 점 등에서 찾아질 수 있음.
 - 첫째, 주지하다시피 외국인 노동자 산재는 매우 심각하며, 산재는 단순히 ‘피해와 보상’이라는 기술적인 프레임으로 제한되는 중립적인 사건이 아니라 재해 당사자의 일생에 걸쳐 신체적, 정신적, 사회관계적 범위에서 치명적인 영향을 주는 생애

사적 사건이기도 함. 그러나 산재 피해자인 외국인 노동자의 입장에서 산재의 심각성과 복잡성을 실증적으로 파악하려는 연구는 매우 드문 편임. 선행 연구의 주류는 2차 자료에 근거한 양적 조사들이며 그마저도 최근에 이루어진 경우는 찾아보기 어려움.

- 둘째, 외국인 노동자 산업 재해의 원인과 예방책에 관해서는 일종의 ‘커뮤니케이션 환원론’이라고 불릴만한 가설이 존재함. 공공 부문과 학계는 커뮤니케이션의 문제를 외국인 산재의 매우 중요한 원인이자 해결책으로 설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공통적임. 이러한 입장은 외국인 노동자 산재와 관련 ‘부족한 언어능력 → 안전보건정보 제한 → 산업재해 발생률 증가 → 산업재해율 감소를 위해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한 지원시스템 마련’이라는 가설을 공유함. 그러나 이러한 가설에 근거한 진단과 조치들이 기대한 효과들을 실제로 만들어내지 못한다는 점에서 새로운 접근의 필요성이 제고됨.
- 셋째, 산재 사건은 ‘발생-승인-보상-사후적인 권리구제(재취업 교육)’의 기술적인 과정으로 이루어짐. 발생과 관련하여 소통적 요인 이외에 구조적, 환경적 요인이 탐색되고, 승인 과정에서는 강제적이건 자원적이건 불승인 혹은 은폐의 원인과 동기, 맥락이 파악될 수 있어야 하듯이, 사후 처리 과정에서는 치료 및 요양의 절차 및 내용뿐만 아니라 ‘질’이 파악 될 수 있어야 함. 이와 관련 치료 및 요양 과정에서 재해자들의 (의사 및 노무사 등 인터페이스 종사자들을 포함하는 다양한 이해관계 당사자들의) 인종주의를 포함한 다양한 경험들과 강제적이며 자원적인 선택지들이 조사될 수 있어야 함.

2. 조사 대상과 방법

1) 조사 대상

- 경기도 내에서 산업재해 피해를 경험한 외국인 노동자 208명에 대한 설문조사와 10명에 대한 면접 조사를 실시함.
- 이번 조사는 조사 대상 산업재해 피해자를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산재 승인을 받은 자’로 한정하지 않고 광의의 산재 경험자로 규정함.
- 따라서 본 조사에는 공식적인 산재승인자 뿐만 아니라 산재불승인자, 산재피해를 당했으나 산재신청 자체를 하지 않은 자, 공상처리자, 산재보험 예외업종 근로자 가운데 산재 경험자 등이 모두 포함됨.
- 이렇게 산재 피해자를 광의로 규정한 이유는 산재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공식적인 산재보상제도에서 제외된 피해자들의 현황과 실태를 파악해보이기 위해서임. (표 I -1)

<표 I -1> 조사 대상 산재피해 경험자의 범위

범주	대상
산업재해보상보험 신청 경험자	- 산재승인자: 업무상재해, 업무상질병 - 산재불승인자: 업무상재해, 업무상질병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 예외업종 근로자 가운데 산재 경험자	- 주택건설업자 등이 아닌 자가 시공하는 총 공사금액이 2천만원 이하 공사 등(근로기준법 적용) - 선원법,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적용사업장 - 농업, 임업(벌목업은 제외), 어업 및 수렵업 중 법인이 아닌 자의 사업으로서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인 사업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상 적용 대상자이나 제외된 경우	- 공상 처리 및 누락자
기타	- 산재 사망자 가족 등

- 설문 조사에 참여한 외국인 노동자 208명
 - 설문 조사에 참여한 외국인 노동자 산재 피해자 208명의 성별 분포는 남성 176명(84.6%), 여성 29명(13.9%), 무응답자 3명(1.4%)이었음. 20대 중후반에서 30대

후반까지의 연령대에 속한 젊은 노동자들이 응답자의 70%에 달했음.

- 조사대상자의 국적은 베트남 출신자가 40명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었음(19.2%), 태국(29명, 13.9%), 우즈베키스탄(27명, 13.0%), 스리랑카(23명, 11.1%), 방글라데시(19명, 9.1%), 캄보디아(17명, 8.2%), 중국(동포)(13명, 6.3%), 필리핀(9명, 4.3%) 순이었음.(표 I -2)

<표 I -2> 조사대상자 국적

출신국	빈도(%)	출신국	빈도(%)
베트남	40(19.2)	필리핀	9(4.3)
태국	29(13.9)	중국(한족)	7(3.4)
우즈베키스탄	27(13.0)	몽골	5(2.4)
스리랑카	23(11.1)	네팔	3(1.4)
방글라데시	19(9.1)	미얀마	2(1.0)
캄보디아	17(8.2)	기타	14(6.7)
중국(동포)	13(6.3)	합계	208(100)

- 전체 응답자의 55.8%인 116명이 산재 사고 당시 비전문취업비자인 E-9비자 소지자였음. 그 다음은 미등록 13.0%(27명), 방문취업비자인 H-2 비자소지자 10.6%(22명) 순이었음.(표 I -3)

<표 I -3> 산재사고 당시 체류자격(VISA) 특성별 분류

비자유형	빈도(%)	비자유형	빈도(%)
E-9(비전문취업)	116(55.8)	미등록	927(13.0)
H-2(방문취업)	22(10.6)	무응답	2(1.0)
그 외	41(19.6)	합계	208(100)

- 208명의 산재피해 외국인 노동자 가운데 산재를 신청한 경우는 43.3%에 불과했음. 산재 미신청자가 52.9%로 산재신청자보다 무려 10% 가량 많은 것으로 나타남.(표 I -4)

<표 I -4> 산재보험 신청여부

	신청	미신청	무응답	합계
빈도(%)	90(43.3)	110(52.9)	8(3.8)	208(100)

○ 면접 조사에 참여한 외국인 노동자 10명

- 면접 조사에 참여한 외국인 노동자 산재 피해자 10명의 국적은 모두 달랐음. 성별은 남녀 각각 50%였으며, E-9과 H-2와 미등록을 포함한 노동 비자 소지자가 7명이었고, 기타 비자 소지자가 3명이었음.(표 I -5)

<표 I -5> 면접 조사 외국인 산재 피해자 개요

번호	성별	나이	국적	비자	내용	산재 신청 여부
사례1	여	36	러시아	F4	손가락 화상	지원단체가 신청
사례2	여	51	중국	F5	손가락 통증과 마비	지원 개인이 신청
사례3	남	29	방글라데시	F2	다리골절	공상처리
사례4	남	30	몽골	E9	손가락 절단	지원단체 요청으로 신청
사례5	남	22	키르기즈스탄	E9	손가락 끼임	지원단체가 신청
사례6	남	35	우즈베키스탄	H2	다리 화학물질 노출	산재미적용 사업장
사례7	여	27	네팔	E9	새끼손가락부분절단	지원단체가 신청
사례8	남	45	나이지리아	미등록	손가락 끼임	병원이 신청
사례9	여	32	베트남	E9	방아쇠수지	지원단체가 신청
사례10	여	22	캄보디아	E9	손가락 끼임	사업주 신청 (병원비 급여공제강제)

2) 조사 방법

- 이번 조사에는 설문 조사, 면접 조사, 전문가 조사 등의 방법이 사용됨. 본 조사에 앞서 사전조사와 예비 조사를 통해 개략적인 도내 외국인 노동자 산재피해자 규모를 파악하고 설문 문항의 적절성을 평가함.

- 도내 외국인 상담 기관들의 산재 상담 사례에 관한 사전 조사를 통해 대략적인

외국인 노동자 산재 피해 규모를 파악하고자 함. 의정부외국인력지원센터 413건, 수원시외국인복지센터 98건, 시흥시외국인복지센터 83건, 김포시외국인주민지원센터 68건, 화성시외국인복지센터 15건 등 도내 주요한 외국인 상담기관이 다수의 산재 상담 사례를 처리한 바 있음을 확인한 후 본 조사에 들어감.

- 조사대상자 발굴 및 섭외, 설문 조사 등에 있어서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와 네트워크 관계에 있는 도내 외국인 지원 및 상담 전문 기관들의 적극적인 도움과 지원이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음.
- 고려인지원센터 너머(안산), 안산글로벌미션센터, 안산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의정부외국인력지원센터, 의정부 EXODUS, (사)경기글로벌센터(부천), 평택외국인복지센터, 수원이주민센터, 수원엠마우스이주민센터, 화성시외국인복지센터, 파주 EXODUS, 포천 나눔의집 이주민지원센터, 김포시외국인주민지원센터 등이 이번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함.

○ 그러나 지원 기관에 의존한 조사는 몇 가지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음.

- 첫째 대상자가 제한적임. 산재 사고 발생 후 요양 신청을 통해 바로 제도적 보상 절차에 진입한 경우 지원기관에 상담을 의뢰하지 않기 때문임. 산재발생 후 공상 처리 등 산재보험절차 진입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 혹은 산재처리가 다 완료되고 추후에 휴우증으로 재요양(치료)을 요할 때 사업주의 협조를 구하기 어려움 등의 이유로 센터를 이용함.
- 상담 종결자의 경우 추적 조사가 거의 불가능함. 상담 종결 이후에도 센터를 이용하는 경우는 거의 없기 때문임. 상담 종결 이후 이직하여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거나, 귀국하는 경우도 많음. 특히 건설업 종사자의 경우, 건설현장에 따라 옮겨 다니기 때문에 면대면 조사는 쉽지 않음.

○ 설문지 구성은 세 가지 과정을 거쳐서 이루어짐. 우선 우리 연구진이 기존의 설문 문항을 참조하여 초안을 만들(전용일 2016, 이관형 외 2010). 연구진의 설문지 초안을 전문가들에게 회람하여 수정 및 보완 의견을 수렴함(1차 전문가 회의). 전문가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최종 설문지 초안을 제작한 후, 이주민 당사자들을 대상으로 예비 조사를 실시함. 예비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최종 설문지를 구성함.

- 최종 설문지는 영어, 중국어, 베트남어, 태국어, 스리랑카어, 캄보디아어, 방글라데시어, 러시아어 등 8개 국어로 번역 사용함.

- 설문 문항은 조사대상자의 기본정보, 산재 발생 원인 및 환경, 산재보상보험제도 이용 여부(신청과 미신청), 치료 및 요양 등 사후처리 과정 관련 문항, 산재피해의 주관적 영향 등을 파악하기 위한 기타 문항 등으로 구성함.(표 I -6)

<표 I -6> 외국인 산업재해자 실태조사 설문 문항

범주	문항
(A) 기본정보	국적, 체류자격, 성별, 연령, 한국어 구사능력, 업종 등
(B) 원인 및 환경	작업환경 및 작업장 규모, 근속기간, 주관적 산재 원인, 간접 경험 등
(C) 산재보험 신청	산재보상보험 이용 경험, 산재보상보험 미처리 이유, 관리자의 반응과 조치 등
(D) 산재보험 미신청	산재보상보험 미신청 이유, 보상 형태와 정도, 산재보험 미 이용시 어려움 등
(E) 사후처리	요양 및 치료 기간, 치료기간 중 생활장소, 치료 후 작업장 복귀 여부 치료과정에서의 차별 경험 등
(F) 종합	산재 예방 조치, 산재로 인한 손실, 산재가 끼친 영향 등

- 의정부, 화성, 수원, 안산, 김포, 포천 등 도내 9개 지역 13개 기관으로부터 최종적으로 208부의 설문지 수거됨. 208부의 설문 조사를 지원해 준 기관과 각 기관으로부터 회수한 유효한 설문지 규모는 다음과 같음.(표 I -7)

<표 I -7> 설문 조사 지원 기관과 담당 부수

시군	장소	부수
의정부	의정부외국인력지원센터	37
	의정부EXODUS	1
화성	화성시외국인복지센터	36
수원	수원이주민센터	31
	수원엠마우스이주민센터	20
안산	고려인지원센터 너머	20
	안산글로벌미션센터	10
	안산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5
김포	김포시의국민주민지원센터	18
포천	포천나눔의집이주민지원센터	15
부천	(사)경기글로벌센터	8
평택	평택외국인복지센터	6
파주	파주EXODUS	1
계		208

○ 면접 조사 역시 네트워크 기관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이루어짐. 면접 조사는 네트워크 기관을 통한 면접자 소개 및 섭외, 면접 장소 및 시간 확정, 통역인 섭외, 면접 조사자 사이의 면접 조사 지침 공유 등의 방식으로 진행됨.

- 면접 조사 대상자는 설문 조사 결과를 보완하기 위해 업무상질병자(사례9), 고용허가제 노동자 중 산재 처리과정에서 직장이동문제가 이슈가 된 경우(사례4), 파견업체 노동자, 산재 입증문제로 어려움을 겪은 노동자(사업장에서의 비협조, 동료들의 증언 기피 등으로 입증이 어려웠던 경우 등(사례6, 사례7)), 고용허가제(E-9)나 방문취업제(H-2) 이외의 비자를 가진 외국인 노동자(결혼이민자, 미등록 체류자 등)(사례1, 사례2, 사례3, 사례8) 등으로 특정함.(표 I -8)

<표 I -8> 케이스별 면접 대상자

유형	면접 대상자
업무상 질병	사례 2, 사례 9
산재 처리과정에서 직장 이동 이슈	사례 4, 사례 5
파견 업체 노동자	사례 6
산재 입증의 어려움	사례 2, 사례6, 사례7
노동 비자 이외의 비자 소지자	사례1, 사례2, 사례3, 사례8
제조업 이외의 사업장	사례 6, 사례 10

- 면접에는 이번 조사의 공동 연구진이 조사원으로 직접 참여함. 면접 조사에는 통역원이 함께 했으며, 각 사례당 한 시간 정도가 소요됨.
- 산재 사업장과 노동 환경, 산재 유형과 산재 신청경로, 산재 신청 및 처리 과정, 치료 및 요양 등 사후 처리 과정에서의 어려움 등 설문 조사 결과를 보완할 수 있는 내용에 대한 심층 면접이 이루어짐.

○ 두 차례의 전문가 자문회의를 통해 전체적인 조사의 문제의식, 목표, 설문 구성과 관련한 조사방법론, 조사 결과의 해석과 관련된 정책 제언 등에 관한 자문을 구함.

- 1, 2차 자문회의에는 동일한 네 분의 전문가를 초청해서 연구의 기획 단계 및 수행 과정, 그리고 결과 제출 과정 전체에 대한 정보를 가진 분들로부터의 질적으로 완성도 높은 자문을 구하려고 노력함. 네 분의 전문가는 각각 의료, 노동, 산재보험, 현장 전문가로 섭외해, 자문 내용의 중복을 줄이고 종합성을 제고하고자 함.(표 I -9)

<표 I -9> 전문가 조사 참여 자문위원 명단

이름	소속
강충원	이대목동병원 직업환경의학과 교수
김상헌	안산시외국인주민상담지원센터 상담팀장
박은주	근로복지연구원 책임연구원
최진수	민주노총 서울본부 노동법률지원센터 법규국장, 공인노무사

- 이번 조사의 시작 단계에서 개최한 1차 전문가 조사에서는 주로 연구의 목표, 방법론, 차별성에 대한 토론이 이루어짐.
- 설문 조사 결과 보고 초안이 나온 직후 개최된 2차 전문가 조사에서는 설문 결과의 해석과 제시, 그와 관련된 정책 제언에 대한 토론이 이루어짐.(표 I -10)

<표 I -10> 1, 2차 전문가 조사 개요

차수	일시	장소	내용
1	2017. 3. 16. 10:00~11:30	경기도외국인 인권지원센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목표: 실태 조사, 산재 은폐율 실증, 산업구조상 문제(열악한 근로환경, 조직된 권력의 배제) 제기 - 조사방법: 양적 조사 샘플은 200건 이상 필요 - 연구차별성: 외국인 노동자의 높은 산재 은폐 실태 및 원인 규명, 보상프레임에 들어오지 못한 사람들의 상황 파악
2	2017. 9. 11. 10:30~12:00	경기도외국인 인권지원센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고서 구성(조사결과 표현): 가독성 제고 필요 - 조사 결과 해석 관련: 산재 이후 경로에 대한 기술, 척도에 대한 '기술적' 해석 경계할 것, 평생에 걸친 영향력 주목, 집단별 차이에 대한 맥락적 해석 필요 - 정책 제언 관련: 정보 평등 증진 방안, 사업주 관련 제언 필요

3. 조사 내용

1) 설문 조사

(1) 조사 대상자의 특성

- 성별 분포는 남성 176명(84.6%), 여성 29명(13.9%). 연령분포는 20대 중후반에서 30대 후반까지의 연령대에 속한 노동자들이 70%로 대체로 젊은 편이었음. 국적은 베트남 등 15개 국가 출신으로 분포함.
- 한국에서의 체류 기간은 5년 이상이라고 응답한 경우가 72명(34.6%)으로 가장 다수였고 1년 미만은 30명(14.4%)이었음. 체류 유형은 E-9비자 소지자가 55.8%로 가장 많았고 미등록 체류자도 13.0%에 달함.
- 한국어 능력의 경우 ‘업무에 필요한 최소한의 대화만 가능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전체의 39.4%, ‘거의 못한다’ 16.8%로 조사 참여자의 절반 이상은 한국어 의사소통이 어려운 수준이었으며, ‘거의 모든 내용을 이해’하는 경우는 11.5%에 불과했음. 치료 및 요양이 현재 진행중인 경우는 13.0%였음.

(2) 산재 유형 및 사고 현장

- 산재 유형은 ‘절단, 베임, 찢림’ 등의 사고유형이 48명(23.1%)으로 다수였으나, ‘업무상 질병’도 13명(6.3%)으로 나타남.
- 산재 사고를 당한 사업장은 공장이 161명(77.4%)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 건설현장으로 20명(9.6%)이었음.

(3) 산재 원인 및 발생 환경

- 산재피해가 발생한 사업장의 75.5%는 직원 29인 미만의 소규모였음. 그러나 100인 이상 규모의 작업장에서 산재를 경험했다고 응답한 경우도 약 5%에 달함. 산재 당

시 사고 사업장 근속일은 1년 미만인 45.2%(6개월 미만 29.3%+6개월 이상 1년 미만 15.9%)였음.

- 산재 발생 원인에 대한 요인 분석 결과 네 가지 요인이 추출됨. “안전관리 소홀 요인”, “열악한 근무환경 요인”, “한국사회 부적응 요인”, “직장 내 차별 및 폭행 요인” 등임. 이러한 요인 분석 결과는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사고나 질병의 경우 안전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는 작업장에서 과도한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나타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을 시사함.
- 산재 발생 요인에 대해 한국어능력, 산재발생시 사업장 규모, 체류 자격 등의 집단에 따른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존재함.
 - 한국어 능력이 낮을수록 산재 발생 원인을 열악한 근무환경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강함.
 - 산재 발생이 한국사회 부적응의 문제 때문이라는 인식은 5인 미만인 사업장에서 일한 경우 높았고, 50인 이상의 대규모 사업장에서 일한 경우가 그 뒤를 이었음.
 - 산재 발생 원인과 관련한 네 가지 요인 곧 안전관리 소홀, 열악한 근무환경, 한국사회 부적응 및 직장 내 차별 등 네 요인 모두에서 일관되게 H-2(방문취업)비자 소지자들이 다른 집단에 비해 평균값이 낮은 것으로 나타남.

(4) 산재 보험 처리 여부

- 산재피해를 당했으나 산재보상보험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가 52.9%로 신청한 경우를 10% 정도 압도함.
 - 산재 보험 신청 관련 한국 거주기간이 1년 미만인 집단과 한국어 능력이 미흡한 집단이 산재 보험을 가장 적게 신청하는 것으로 나타남. 사업장 규모는 5인 미만 사업장과 50인 이상 사업장이 가장 낮았음. 체류 자격은 방문취업비자인 H-2비자와 미등록 체류자의 산재보험 신청율이 낮았음.
- 산재 사고를 당했으나 산재 보험 혜택을 받지 못한 동료 노동자 목격여부를 묻는 문항에서 46.6%가 목격한 것으로 응답함.

- 산재 피해를 당했으나 보상을 받지 못한 동료 산재 피해 노동자의 90.7%는 ‘외국인’으로 특정됨.

(5) 산재 보험 이용시 어려운 점

- 응답자들은 전체적으로 산재 보험 이용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경향이 나타남. 특히 정보부족(신청방법 및 요양, 보상과정)의 어려움을 가장 많이 호소함. 다음은 사업주의 비협조로 인한 어려움임.
 - 산재 보험 이용시 어려움과 관련한 항목별 응답율은 다음과 같음: 산재보험 신청 방법을 모름 65.5%, 통역 부재로 인한 정보전달의 어려움 56.6%, 산재 입증의 어려움 54.4%, 짧은 치료 및 요양기간 44.4%, 사업주의 비협조 42.2%, 사업주로부터 비난을 당한 경우 23.4%.
- 산재 보험 이용의 어려움 관련 세 가지 요인이 추출됨. 세 가지 요인의 신뢰도는 0.73에서 0.88로 높은 수준이었음. 첫째 정보부족, 둘째 사업주의 비협조, 셋째 보험 처리 과정의 어려움으로 구분됨.
 - 사업장 규모와 비자 유형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확인됨. 연령과 거주기간에 있어서는 통계적으로는 유의미하지 않으나 경향성의 차이가 나타남. 한국어 능력과 산재 발생시 근속기간 관련해서는 어떠한 차이도 발견되지 않았음.
 - 사업장 규모와 관련 사업주의 비협조 때문에 산재보험 이용이 어려웠다는 응답은 5인 미만인 사업장에 재직했던 노동자들이 가장 크게 경험한 것으로 나타남.
 - 체류 자격 관련 미등록 집단이 정보부족으로 어려움을 겪었다는 응답의 평균이 가장 높았고 정보부족에 대한 어려움을 가장 낮게 지각한 집단은 H-2(방문취업) 비자를 지닌 집단이었음.

(6) 산재 보험을 신청하지 않은 이유

- 산재 보험 미신청자들의 미신청 이유 중 가장 많은 것은 사업주가 아무 설명 없이 신청에 조력하지 않는 이른바 ‘묻지마’ 미신청으로 18.6%이었음. 그 밖에 불법체류 및 불법고용 빌미로 산재 거부 9.3%, 외국인이라서 미신청 5.5% 등이었음. 사업장 이동

허용을 빌미로 산재보험을 미신청한 경우도 2.5%, 산재보험 신청시 해고 위협도 2.1%에 달했음.

○ 산재보험 미신청자들이 경험하는 치료 과정에서의 어려움 중 가장 많이 선택된 항목은 사업주의 안내로 적절치 못한 병원에 가야만 했던 경우로 44.5%에 이룸. 비슷한 비중으로 치료중 월급을 못 받거나 덜 받은 경우 40.0%, 치료중 노동을 강요당한 경우가 39.1%에 달했음.

- 사업주로부터 협박과 비난을 당한 경우 23.7%, 재해자 때문에 자신이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했다며 사업주로부터 면박을 받은 경우 23.7%, 충분히 치료받지 않았는데 사업주로부터 퇴원 및 치료중단을 종용 당한 경우 20.0%에 달했음. 그 밖에 사업장에 안 좋은 영향을 끼친다며 기숙사로부터 퇴출을 강요받은 경우도 10.9%로 나타남.

- 산재보험제도를 이용하지 못한 외국인 노동자들 가운데 약 1/3가량(30.0%)은 적절한 치료(의료기관이용, 기간)를 받지 못하여 장애가 생기거나 장애가 심해졌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확인됨.

- 체류자격에 따른 치료과정에서 느낀 어려움의 정도에 있어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다른 집단에 비해 H-2(방문취업)비자를 지닌 집단이 어려움을 덜 느끼는 것으로 분석됨.

○ 산재보험 미신청자들이 사업주로부터 제대로 된 보상을 받은 경우는 28.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남.

- 사업주로부터 제대로 된 보상을 받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산재보험을 신청하지 않은 이유 가운데 압도적인 1위는 '신청할 수 있는지 몰라서'로 36.1%에 달함. 그 다음 순위는 '현재도 그 사업주와 계속 일하고 있으므로'(12.5%), '불법체류/불법고용 상태가 드러날까봐'(12.5%)였음.

(7) 치료 및 요양 과정의 차별

○ 가장 많은 응답자들이 경험한 어려움은 '한국어 소통이 어려워 불이익을 받은' 경우로 47.1%에 달함. '음식 등으로 인한 불편'이 42.3%로 두 번째로 많이 선택됨.

- 다음으로는 '의료진의 진료방식으로 인한 불편'(21.2%), '출신국으로 인한 차별'

(20.2%), ‘의료진으로부터 외국인이라서 차별’(13.5%), ‘병원이나 요양시설의 한국인 환자로부터 차별’(9.1%) 등의 순으로 선택됨.

○ 연령, 한국어 수준, 체류 자격에 따른 치료 및 요양 과정의 차별 지각 수준에 있어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분석됨.

- 연령의 경우, 20대 이하 집단이 가장 높은 수준으로 차별을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연령이 높아질수록 차별지각 수준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남.
- 한국어 수준과 관련, 한국어를 잘 못하는 경우 한국어를 잘 하는 집단에 비해 차별에 대해 더 높게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남.
- 체류 자격의 경우, H-2(방문취업)비자 소지자들이 다른 집단에 비해 차별을 지각하는 수준이 낮은 것으로 분석됨.

○ 치료 기간은 1일에서 3일이었다는 응답이 21.2%, 석 달 이상의 비교적 장기간 요양을 한 경우가 17.8%로 상대적으로 짧은 기간과 긴 기간이 비슷한 수준이었음.

- 산재 신청자들의 치료 기간이 비신청자들에 비해 긴 것으로 나타남. 특히 6개월 이상의 장기 치료자의 경우, 산재 신청자의 규모가 비신청자의 규모의 거의 3배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됨.

○ 통원치료시 생활한 장소는 ‘사고당시 사업장 기숙사’가 42.6%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자기집’(36.4%)이었음.

- 미등록체류자와 E-9(비전문취업)비자 소지자의 경우 통원치료를 사고당시의 사업장이나 기숙사에서 했다는 경우가 각각 63.6%와 60.8%로 다수였음. 반면 H-2(방문취업) 비자 소지자나 기타 비자 소지자의 72.2%는 자기 집에서 통원 치료를 받은 것으로 나타남.

○ 치료 및 요양이 종결된 후에도 계속 노동을 하고 있는 경우는 64.4%였음. 그 가운데 70.9%는 사고가 났던 사업장으로 복귀하였음. 산재 미신청자들이 사고 사업장에서 계속 일하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산재 이후 일을 하지 않게 된 이유 중 가장 큰 것은 ‘신체적 후유증’으로 42.3%에 달했음. 그 외에 ‘재해 사업장 사용주의 복귀 거부’(7.7%), ‘재취업 정보 부족’(7.7%) 등의 사유가 선택됨.

- 산재 종결 후 경험한 어려움 중 응답자들이 가장 많이 선택한 것은 ‘재요양 승인의 어려움’으로서 53.9%였음. ‘사업주의 동일업무 강요’도 50.0%에 달함. ‘산재 치료가 완벽하지 않은 상태에서 치료나 요양이 종결’된 경우도 45.7%, ‘장해보상금이 너무 적었다’는 경우도 42.3%에 달함.
 - 산재 미신청자가 산재신청자에 비해 산재 종결 후 후유증상 치료 및 재요양의 필요성을 더욱 절감하는 것으로 분석됨.
 - H-2(방문취업)비자 소지자들이 다른 비자 소지자들에 비해 산재 종결 이후 느끼는 어려움의 체감 정도가 더욱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산재 예방을 위한 조치에는 작업환경 개선 16.6%, 안전교육 15.4%, 스스로 조심하기 13.7%, 안전장비 지급 및 착용 12.5%, 적절한 휴식 시간 및 휴가보장 10.9% 등이 선택됨.
- 산재시 감내해야 하는 손실의 유형은 압도적으로 신체적 손상이 45.2%에 달했음. 그 외에 경제적 손실 24.0%, 마음의 상처 11.1%로 나타남.
- 응답자들이 주관적으로 느끼는 산재의 영향력은 1년 미만이 41.8%로 가장 많았음. 그러나 평생이라고 답한 경우도 무려 22.6%로 두 번째로 높은 선택지였음.

(8) 산재 보험 신청 요인 및 집단별 특성

- 산재보험 신청 요인에 관한 회귀분석 결과 성별, 연령, 한국어 수준, 해당 사업장 근무기간, 체류자격 등은 보험신청여부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남. 한국 거주 기간과 사업장 규모에 따른 집단별 차이는 확인됨.
 - 한국 거주 기간의 경우, 1년 미만 거주 집단과 3년에서 5년 거주한 집단이 산재보험을 신청할 확률이 5년 이상 된 집단에 비해 각각 0.25배, 0.27배 낮은 것으로 나타남.
 - 사업장 규모의 경우, 50인 이상 사업장에 비하여 30명에서 49명 규모의 사업장에서 산재보험을 신청할 확률이 4.41배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집단별 산재 치료비 부담 유형(산재보험, 공상처리, 본인 부담)에서의 차이를 분석함.

- 비전문취업(E-9)비자를 지닌 경우 산재보험 신청자가 가장 많았고, 방문취업비자(H-2)의 경우는 공상처리자가 가장 많았고, 미등록 체류자들의 경우는 산재보험 신청과 본인부담이 동일한 수준이었음.
- 남성들의 경우는 산재보험 신청자가 가장 많고 본인부담이 가장 적었으나, 여성들의 경우 본인부담자가 가장 많았음.
- 거주 기간이 길수록 산재보험 신청율이 높았음. 1년 미만의 경우 산재보험 신청율은 10%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남.
- 사업장 규모의 경우, 10인에서 29인 규모의 사업장에서 일했던 경우 산재보험 신청율이 가장 높았음.

○ 치료비 부담 유형(산재보험, 공상처리, 본인 부담)별 특성을 비교 분석함.

- 본인 부담자의 경우 다른 경우보다 요양기간이 매우 짧은 것으로 나타남. 산재보험 신청자의 경우는 6개월 이상 요양을 한 비율이 20.5%로 본인부담자의 거의 3배, 공상처리자의 2배에 달함.
- 산재보험 신청자에 비해 공상처리자나 본인부담자의 경우 산재 이후 일하는 비율이 더욱 높은 것으로 나타남. 산재보험 신청자의 경우 공상처리자나 본인 부담자보다 산재 경험 사업장으로 복귀하는 비율이 다소 낮은 것으로 확인됨.
- 본인 부담자의 경우 작업환경 개선을, 산재보험 신청자의 경우 안전교육을 산재 예방을 위한 중요한 조치로 판단하는 경향이 있음.

2) 면접 조사

- 총 10명의 산재 피해 외국인 노동자를 대상으로 면접 조사가 이루어짐. 설문 조사 결과를 보완하기 위해 업무상질병자, 산재 처리과정에서 직장이동문제가 이슈가 된 경우, 파견업체 노동자, 산재 입증문제로 어려움을 겪은 노동자, 고용허가제(E-9)나 방문취업제(H-2) 이외의 비자를 가진 외국인 노동자(결혼이민자, 미등록 체류자) 등으로 대상자를 특정함.

- 조사에 참여한 외국인 노동자 산재 피해자 10명의 국적은 모두 달랐음. 성별은 남녀

각각 50%였으며 E-9과 H-2와 미등록을 포함한 노동 비자 소지자가 7명이었고 기타 비자 소지자가 3명이었음. 산재 신청자는 8명이었는데 한 명을 제외하곤 사측의 협조 없이 타기관의 도움을 통해 신청한 경우였음.

- 면접에 참여한 산재 피해 외국인 노동자의 산재 사고 당시 동일 사업장 근속 기간은 상대적으로 짧은 것으로 나타남. 5달 미만으로 비교적 짧은 경우가 5건에 달함. 그러나 1년 6개월에서 5년 사이 곧 상대적으로 근속 기간이 긴 경우도 5건에 달함. 면접자 전원이 매우 낮은 한국어 구사 능력 소지자로서 거의 못하거나 간단한 문장만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이었음.

(1) 산재 사업장과 노동 환경

- 면접에 참여한 외국인 노동자 산재 피해자들이 산재 당시 일했던 사업장에 대해 알아봄. 분야는 제조업 8곳(1곳은 닭가공업체로서 축산관련 제조업), 농업 1곳, 건설업 1곳이었음.
- 기본적으로 면접자들의 작업 환경은 열악한 노동조건, 기계작동에 대한 교육과 정보 전달 미흡, 임의적인 작업 변경, 안전 장구 미지급 등의 문제가 중첩되어 있는 곳이라는 점에서 ‘산재 유발’ 혹은 ‘항상적인 산재 위험 노출’ 환경이라 할 만 한 곳들임. 면접자들 이외에도 동일한 사업장에서 비슷한 유형의 산재 사고들이 발생함.

(2) 산재 유형과 산재 신청경로

- 면접자 10명 가운데 8명은 사고, 2명은 업무상 질병에 해당함. 가장 많았던 사고 유형은 기계에 손가락이 빨려 들어가는 사고였음. 두 번째 사고 유형은 골절과 화학물질 노출임. 업무상 질병 두 케이스는 손가락 통증과 마비(사례2), 방아쇠수지(사례9) 등 두 경우임. 공통점은 무리한 반복 작업으로 인한 손가락 부위 마비와 통증임.
- 면접을 통해 조사한 10가지 케이스 가운데 사업주가 산재 신청에 협조한 경우는 한 건에 불과함. 6건은 사업주의 거부나 다양한 방식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지원단체나 개인의 도움으로 산재신청을 한 경우임. 나머지 한 건은 공상처리, 나머지 한 건은 산재미적용 사업장이었음. 사업주가 산재 신청을 기피하거나 거부했으나 지원단

체나 개인이 신청한 경우가 가장 빈번했음.

- 10명의 면접자 가운데 후유증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두 경우를 제외한 나머지 여덟명은 모두들 후유증으로 고통 받고 있거나, 산재치료가 현재 진행형인 것으로 나타남. 산재 종결 이후 사업장 이동에 성공한 경우는 한 건에 불과함. 나머지는 퇴사, 사측의 퇴사 요구 거부, 사측의 사업장 복귀 요구 거부, 다른 업종으로 전직, 사고 사업장 복귀, 사업장 이동 미결정 등임.

(3) 산재 처리 과정의 또 다른 어려움

- 최초 방문 병원의 오진 내지 불완전한 치료로 다른 병원에 다시 방문하거나 재수술을 받은 경우가 다수 있음. 때로는 병원측에 의해 산재 거부와 더불어 인종주의적 모욕이 발생하기도 함.
- 산재 피해를 당한 외국인 노동자들이 사측의 산재 처리 거부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는 요인 중 하나는 ‘외국인 노동자’로서의 취약한 고용 및 체류에 있어서의 불안감 때문일 수 있다는 것이 이번 면접조사를 통해서도 확인됨.
- 산재 피해 외국인 노동자를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할 공공 부문에서 오히려 산재 피해 외국인들의 상황을 악용하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확인됨.
- 산재 피해를 당한 당사자는 물론이요, 동료 외국인 노동자들의 권리 의식도 매우 낮아, 정당한 보상 제도를 이용하는 것을 어렵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이 확인됨.

4. 기대 효과와 활용 방안

- 이 조사는 외국인 산업재해자 218명(설문조사 208명, 면접조사 10명)을 직접적인 조사 대상으로 하는 외국인 산업 재해에 관한 거의 최초의 실증적인 조사 연구로서,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점에서 향후 이 분야의 정책 개발 및 심화된 연구 조사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 첫째, 산업 재해 피해자인 외국인 노동자를 대상으로 직접적인 양적, 질적 조사를 수행함으로써 한국인의 시각보다는 외국인 산재 피해자의 시각에서 보다 현실감 있는 외국인 산업 재해의 실체를 드러냄으로써, 그간 공식적인 통계에 의존해 형성되었던 외국인 노동자 산업 재해에 대한 상식적인 인식의 내용 및 지평을 확장함.
- 둘째, 외국인 노동자 산재와 관련된 그간의 논의들이 주로 높은 산재발생율에 초점을 맞추었다면 이 조사는 높은 누락율과 산재 이후의 치료 및 요양 과정 그리고 산재 종결 이후에 산재 피해 외국인 노동자들이 경험하는 어려움 등으로 문제 의식을 확장함으로써, 외국인 노동자의 전생애에 영향을 미치는 산재 피해의 심각성을 공론화하고 그 해결방안 모색을 위한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함.
- 셋째, ‘부족한 언어능력 → 안전보건정보 제한 → 산업재해 발생률 증가 → 산업 재해율 감소를 위해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한 지원시스템 마련’이라는 기존의 연구들이 공통적으로 전제하는 외국인 산재 발생 원인 및 해결책과 관련된 일반화된 가설을 넘어서서 실효적인 외국인 산재 예방과 피해자 친화적인 사후 조치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들을 제시함.

경기도 외국인 산업재해자 실태조사

Ⅱ. 외국인 산재 현황과 선행 연구

1. 외국인 산재 현황과 관련 정책
2. 선행 연구

1. 외국인 산재 현황과 관련 정책

1) 외국인 산재 현황

- 전체 노동자 산업재해를 감소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노동자 산재율은 매년 증가함. 2012년에서 2016년에 이르는 기간, 전체 노동자 산재발생률은 0.59%에서 0.49%로 낮아졌지만 외국인 노동자의 경우 6.9%에서 7.4%로 증가함.
- 2017년 5월 기준 국내 노동자 산재발생률은 0.18%인 반면 외국인 노동자는 1.16%로 국내 노동자에 비해 산재 발생률이 무려 6배에 이르는 것으로 보고됨. (매일 노동뉴스 2017. 9. 25.) (표 II-1)

<표 II-1> 2012년~2017년 5월 기준 이주노동자 재해현황

(단위: 건, 명)

구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5월
재해발생 건수	6,390	5,556	6,014	6,419	6,703	2,491
재해자 수	6,404	5,586	6,044	6,449	6,728	2,497
사망자 수	106	88	85	103	88	41
사고부상자 수	6,165	5,373	5,839	6,227	6,524	2,410

자료: 고용노동부·안전보건공단

- 2013년부터 2016년에 이르는 기간 동안 외국인 산업재해자를 사고와 업무상 질병으로 구분해보면, 사고재해자의 규모는 급증하고 있는 반면, 업무상 질병자의 규모는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 확인됨.
- 이것은 외국인 산재 피해자의 신청건수 자체가 매우 적다는 것(내국인의 1.5%~1.8% 정도), 그리고 업무상 질병의 입증 및 승인이 그만큼 어렵다는 것을 뜻함.(표 II-2)

<표 II-2> 2013년~2016년 외국인 사고재해자 및 업무상 질병자 규모

(단위: 명)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재해자 수	5,586	6,044	6,449	6,728
업무상질병자 수	55	73	66	68

출처: 근로복지공단 정보공개청구자료 재가공 (2017.3.21./2017.5.24.)

- 같은 시기 산업재해자의 성별 비중은 남성이 85% 가량, 여성이 15% 가량 수준을 유지함.(표 II-3)

<표 II-3> 2013년~2016년 외국인 사고재해자 성별 발생 현황

(단위: 명, %)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남	4,764(85.3)	5,082(84.1)	5,403(83.1)	5,708(84.8)
여	822(14.7)	962(15.9)	1,046(16.9)	1,020(15.2)
계	5,586(100.0)	6,044(100.0)	6,449(100.0)	6,728(100.0)

출처: 근로복지공단 정보공개청구 자료(2018.3.21.)

- 외국인 노동자의 산업재해는 제조업과 건설업에서 발생하는 비중이 압도적임. 2016년의 경우 사망자의 88.6%, 재해자의 81.5%가 제조업과 건설업에서 발생함.(표 II-4)

<표 II-4> 2015년~2016년 업종별 이주노동자 산업재해 현황

(단위: 명)

구분	2015		2016	
	사망자	재해자	사망자	재해자
총계	103	6,449	88	6,728
금융 및 보험업	0	0	0	0
광업	0	5	1	7
제조업	41	3,554	38	3,499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0	1	0	0
건설업	53	1,750	40	1,987
운수·창고 및 통신업	0	30	0	31
임업	0	15	0	23
어업	0	13	0	12
농업	3	85	1	117
기타의 사업	6	996	8	1,052

출처: 김삼화 의원실, “무너지는 코리아 드림, 이주노동자 산재발생을 제조업·건설업이 압도적 비중 차지”(2017 환노위 국정감사 보도자료. 2017.9.26.)

- 발생형태별 사고 규모는 끼임이 압도적이고, 떨어짐, 넘어짐, 절단·베임·찢림 등이 비슷한 규모임. 소위 ‘후진국형’ 산재 사고들이 대부분임.(표Ⅱ-5)

<표Ⅱ-5> 2013년~2016년 발생형태별 외국인 사고재해자 현황

(단위: 명)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떨어짐	656	744	828	954
넘어짐	556	595	670	733
부딪힘	320	458	497	538
물체에 맞음	517	636	694	697
무너짐	40	26	39	35
끼임	2,098	2,131	2,098	2,058
절단·베임·찢림	575	604	784	784
감전	19	7	13	12
폭발·파열	29	21	27	15
화재	30	31	25	42
갈림·뒤집힘	224	177	204	194
이상온도 접촉	171	227	232	292
빠짐·익사	4	5	1	0
불균형 및 무리한 동작	56	71	73	98
화학물질누출·접촉	24	24	24	24
산소결핍	0	2	0	2
사업장내교통사고	3	1	1	1
체육행사 등의 사고	29	33	18	26
폭력행위	5	10	8	4
동물상해	16	12	13	15
기타	1	0	3	1
사업장의외교통사고	67	82	75	72
업무상질병	0	0	0	0
분류불능	25	19	3	8
계	5,465	5,916	6,330	6,605

출처: 근로복지공단 정보공개청구 자료(2018.3.21.)

- 외국인 산재 사고의 재해 정도(요양 기간)는 91일에서 180일이 가장 다수이며 그 다음으로 29일에서 90일, 6개월 이상의 순임. 사고의 대부분이 3달에서 6달의 요양을 요하는 중상임을 뜻함.(표 II-6)

<표 II-6> 재해정도(요양기간)별 외국인 사고재해자 현황

(단위: 명)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4일~7일	21	55	40	37
8일~14일	98	112	112	157
15일~28일	294	314	350	385
29일~90일	1,771	1,917	1,837	1,945
91일~180일	2,260	2,420	2,694	2,666
6개월 이상	929	1,021	1,194	1,334
사망자	92	77	103	81
분류불능	0	0	0	0
계	5,465	5,916	6,330	6,605

출처: 근로복지공단 정보공개청구 자료(2018.3.21.)

- 업무상 사고를 당한 외국인 노동자의 근속 기간을 보면, 6개월 미만이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표 II-7)

<표 II-7> 근속기간별 외국인 사고재해자 현황

(단위: 명)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6개월 미만	3,524	3,893	4,265	4,418
6개월~1년 미만	697	691	636	720
1년~2년 미만	685	691	712	705
2년~3년 미만	345	339	328	324
3년~4년 미만	108	159	186	198
4년~5년 미만	56	56	102	108
5년~10년 미만	30	43	65	92
10년 이상	1	2	4	7
분류불능	19	42	32	33
계	5,465	5,916	6,330	6,605

출처: 근로복지공단 정보공개청구 자료(2018.3.21.)

- 지역별 사고재해자수를 살펴보면, 2016년 기준 전체 사고재해자수는 6,605명으로 경인지역이 3,103명(경기 776명, 안산 555명, 성남 385명 등)으로 가장 많고 강원 및 제주가 73명, 56명으로 가장 적게 나타나 지역별로 약 40배 이상 차이를 보임. 그 외에 서울 1,079명, 충청지역이 791명(천안 335명), 부산경남지역이 751명(양산 233명), 대구경북지역이 466명, 전라지역이 286명(광주 90명) 등의 사고재해자 수를 보임.(표 II-8)

<표 II -8> 지역별 외국인 사고재해자 수

(단위: 명)

구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계	5,465	5,916	6,330	6,605
서울	750	843	1,044	1,079
경인	2,625	2,855	2,899	3,103
부산경남	647	696	708	751
대구경북	394	409	436	466
충청	669	705	816	791
전라	289	300	294	286
강원	67	80	95	73
제주	24	28	38	5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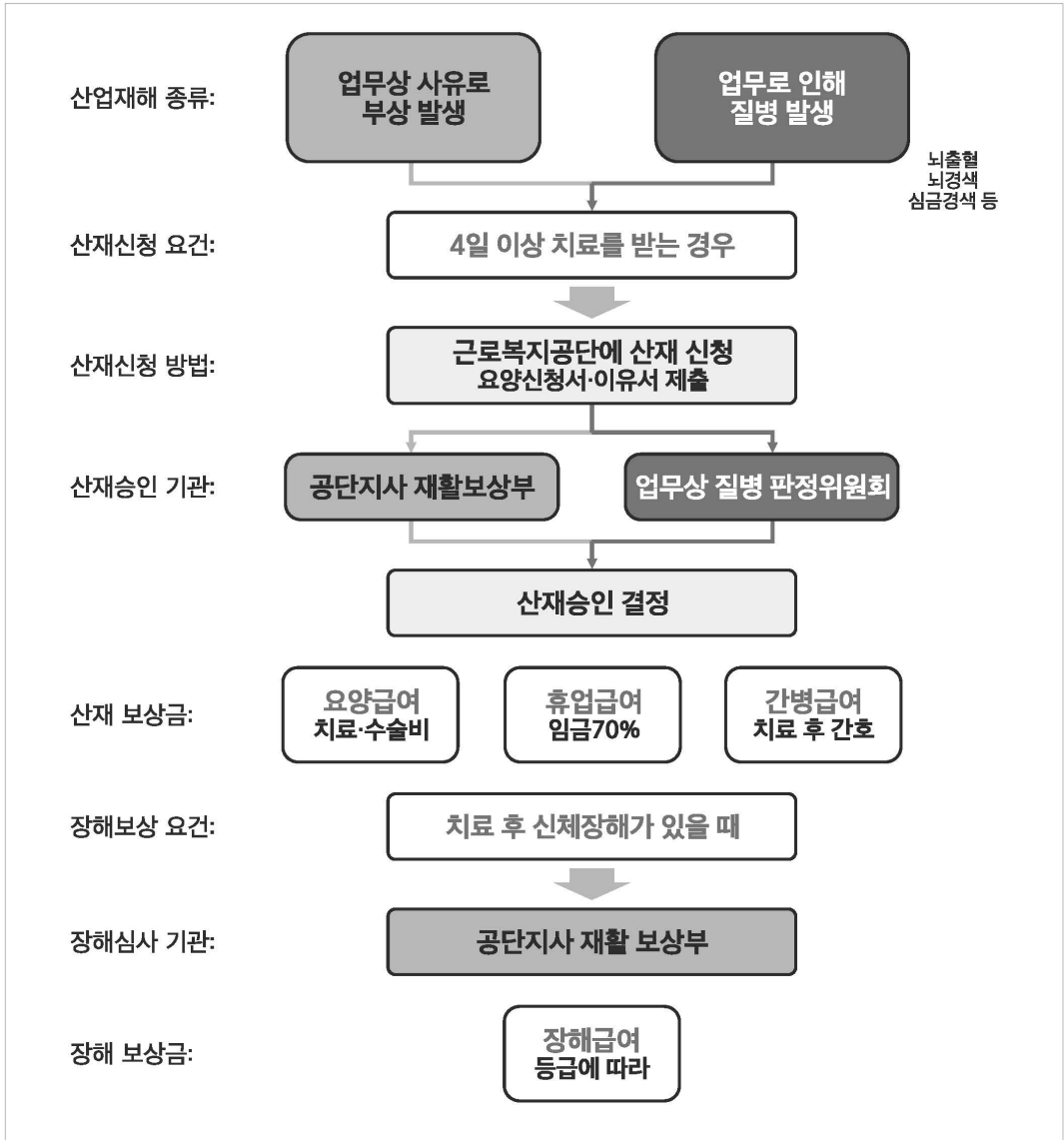
출처: 근로복지공단 정보공개청구 자료(2018.3.21.)

2) 외국인 산재 관련 정책과 산재보상보험

- 2015년 고용노동부는 제4차 산업재해 예방 5개년 계획(2015~2019)을 수립함.
 - 선진국 수준의 안전 일터 구현을 목표로 사고사망만인율은 2013년 0.71%에서 2019년 0.03%대로, 중상해재해율(휴업 90일 이상)은 2012년 0.26%에서 2019년 0.1%대로 감소하는 것을 목표로 함.
 - 주요 추진 과제로 안전보건 책임 명확화, 대응 능력제고, 확고한 기반 구축, 실천 중심의 안전보건 문화 확산을 설정함.
 - 외국인 노동자 산재 예방 관련 구체적인 과제로는 H-2 중국동포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시간 확대, 강의식 안전보건교육의 실습형 전환 등 교육 내실화, 화학물질, 위험기계·기구 등 유해 위험요인에 대한 다국어 안내 자료 작성·배포 및 교육, 외국인 고용 업무 담당기관과 산재예방업무 담당기관 간의 정보공유 시스템 구축 등을 설정함.
- 2014년 고용노동부는 외국인 노동자 산업재해 예방 대책 다섯 가지를 공표한 바 있음.(2014.5.9.)

- 첫째, 현행 강의식 교육을 참여형·실습형으로 보완하고 통역사를 대동한 이동교육버스를 운용하는 현장성·실효성 있는 교육 실시. 이에 따라 현재 4시간의 기초 안전보건교육이 시행중임.
 - 둘째, 매뉴얼, 외국어 동영상, 통역앱, 웹사이트 등 안전보건 정보자료 개발·보급 효율화.
 - 셋째, 특별감독 실시, 교육 미이수 등 적발시 과태료 부과, 외국인 사망재해 2년 연속 발생시 외국인력 배정 평가에 감점 부여 등 외국인 고용사업장에 대한 지도·감독 강화. 교육 미이수 시 과태료는 최고 5백만 원까지 부과됨.
 - 넷째, 5년 연속 무재해 또는 안전보건교육 이수 외국인 고용 사업장에 대한 외국인력 배정 평가 가점 부여 등 우수기업 등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
 - 다섯째, 산재 관련 상담시 3자 통역서비스 운영, 외국인용 보험급여 청구 서식 제작 배포, 다국어 가이드 제공 등을 통한 신속·공정한 산재보상 방안 마련하여 시행함.
- 정부는 노동자의 업무상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고, 재해 노동자의 재활 및 사회 복귀를 촉진하기 위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를 운영함.
- 업무상재해는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노동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하며,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업무상 사고, 업무상 질병으로 구분함.
 - 업무상재해로 4일 이상 치료를 받는 경우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산재 신청이 가능함.(그림 II-1)

<그림 II-1> 산재보험 산재처리절차·방법 및 산재보상의 종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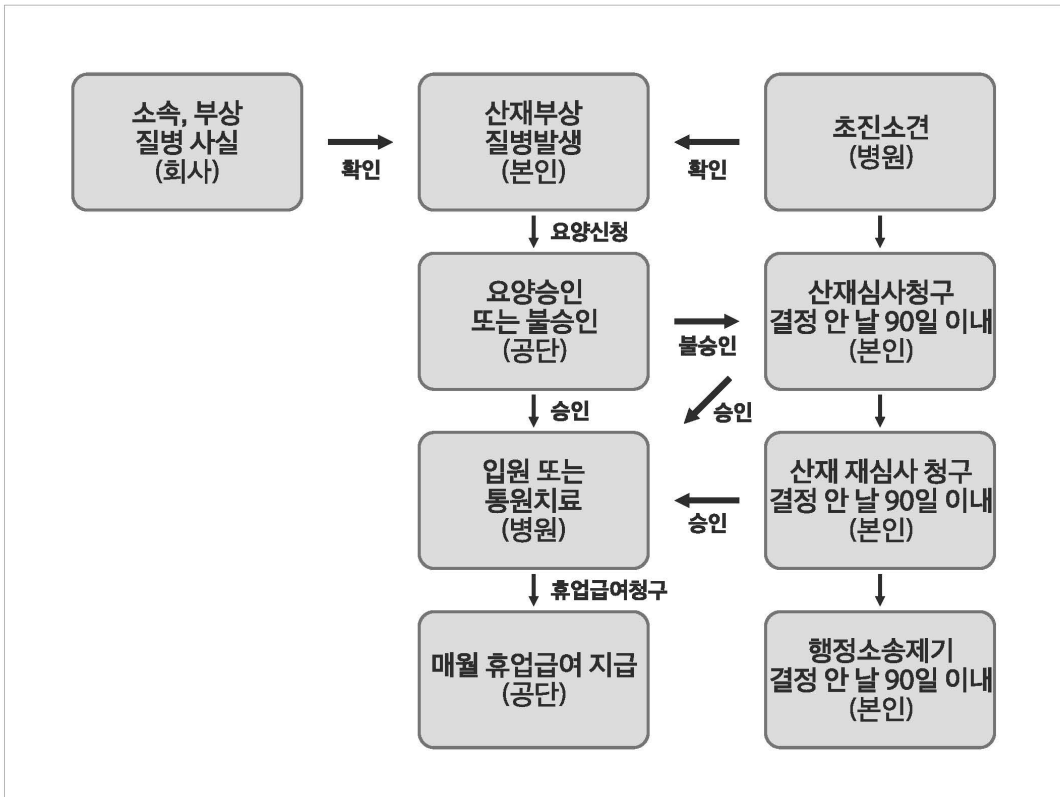
찾기쉬운 생활법령 정보(<http://easylaw.go.kr>) 산업재해보상보험 부문에서 재구성

- 산업재해보상보험은 원칙적으로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발생한 업무상 재해에 대해 적용가능하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업종도 존재함.
 -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선원법」,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또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등 별도의 재해보상규정을 갖는 업종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적용하지 않음.

- 주택건설업자 등이 아닌 자가 시공하는 총 공사금액이 2천만 원 이하 공사 등과 가구 내 고용활동, 상시근로자 수가 1명 미만인 사업, 농업, 임업(벌목업은 제외), 어업 및 수렵업 중 법인이 아닌 자의 사업으로서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인 사업장 역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됨. 이들 사업장에서의 업무상 재해는 「근로기준법」 상의 재해보상절차에 따라야 함.

○ 산재 처리 및 심사 청구 절차는 매우 복잡해서 피해 당사자인 외국인 노동자가 모든 서류 준비, 이유서 작성 등의 작업을 스스로 진행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음.(그림 II-2)

<그림 II-2> 산재처리 및 심사청구 절차



찾기쉬운 생활법령 정보(<http://easylaw.go.kr>) 산업재해보상보험 부문에서 재구성

- 2012년 발간된 국가인권위원회의 이주인권가이드라인은 외국인 노동자 산업재해 예방과 구제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 과제 목록으로 세 가지를 제안함.
 - 산업안전보건 관련규정 준수여부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산재보험 신청과정에서 통역서비스와 재활교육 제공, 사업장 배치 후 산업안전보건교육 추가 실시 등이 인권위가 이주인권가이드라인을 통해 제안한 외국인 노동자 산재예방 및 구제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 과제임.
 - 그러나 여전히 사전에 사업주에게 감독이 고지되는 등 엄격한 관리, 감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임. 법위반 적발 시에도 처벌은 미약하며, 산재 발생 사업장에도 작업환경개선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채 신규고용(고용허가)이 알선되기도 함. 산재예방을 위한 정보제공, 교육, 산재처리과정에서 여전히 통번역 제공이 양·질적으로 부족함.(이한숙 외 2017)

2. 선행 연구

- 박은주(2012)에 따르면 외국인 노동자 산업재해와 관련된 선행연구는 크게 “산업 안전보건실태에 대한 연구와 산업재해 발생에 대한 연구로 구분됨”.
 - 산업안전보건실태에 대한 연구들은 주로 외국인 노동자가 근무하는 사업장의 작업환경 및 위험노출수준, 산업안전보건에 대한 의식정도 등에 집중됨. 정완순·최재욱(2003), 박수만·박종태(2006), 박수만 외(2007), 이관형 외(2010, 2012) 등이 이에 해당함.(박은주 2012)
 - 이들 연구에 따르면 외국인 노동자는 내국인 노동자가 기피하는 3D 업종의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경우가 일반적임. 이들 사업장의 대부분은 소규모의 제조업체로서 대체로 작업환경이 열악하며, 소음, 분진, 유기용제 등 위험에 노출되는 비중이 높은 편임. 소규모 제조업체들의 경우 산업안전보건에 대한 인식수준이 낮으며, 안전보건교육도 미흡한 것으로 보고됨.(박은주 2012)
 - 산업재해발생에 대한 연구에서는 주로 산재보상 처리유형, 다빈도 재해유형이나 상해부위, 산재발생원인 등에 대하여 분석됨. 이승길 외(2002), 하은희 외(2002), 황성호 외(2006), 김규상 외(2008), 이관형 외(2010), 조희학(2010), 정원일 외(2011), 김건우 외(2012), 이돈철·김치경(2012) 등이 이에 해당함.(박은주 2012)
- 외국인 산재보상의 추이와 현황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연구는 박은주에 의해 수행됨. 박은주(2012)는 “산재보험 DB를 활용하여” 2007년부터 2011년에 이르는 5년간 산재 승인을 받은 외국인 노동자를 대상으로 “연도별 발생추이, 고용형태별 발생추이, 국적별 발생추이, 외국인 근로자의 재해당시 사업장 및 고용특성, 그리고 요양 및 보상특성 등을 분석”함.
- 2000년대의 외국인 노동자의 업종별 산업 재해의 전반적인 실태 분석은 이관형·조희학·유기호(2012)에 의해 수행됨. 그들은 2005년에서 2009년의 5년간 “제조업, 건설업 및 제조업과 건설업을 제외한 그 외 업종별로 국내 및 외국인 근로자의 업무상 사고와 질병 재해자수 및 재해율, 사고와 질병 사망자수 및 만인율을 규모별, 성별, 연령별, 근속기간별, 요양일별, 재해발생 계절별, 요일별, 시간별, 재해유형별로 비교 분석”함.

- 외국인 노동자 산재율 감소 방안과 관련 교육에 초점을 맞추는 관점과 법제도적 규제에 초점을 맞추는 관점이 양립함.
 - 이관형·조흥학·유기호(2012)는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안정보건정보 제공과 교육을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산하의 외국인 근로자 안전보건 전담팀이 주관하게 하거나, 기존의 외국인 근로자 지원센터나 관련 상담센터, 비영리단체들 등과의 협력을 통해 실시할 것”을 제안함.
 - 이에 반해 정진우(2016)는 법·제도적 규제의 강화를 강조함. 그는 「산업안전보건법」에 포함된 알 권리, 안전배려의무, 작업거절권, 손해배상청구권, 위험성 평가 등 노동자의 법적 권리 보장을 제안함. 그는 안정보건교육에 대한 법적 규정과 규제들이 마련되어 있지만, 정부의 지도 감독이 형식적 이어서 실효성 있는 결과가 만들어지지 못한다고 분석함.
 - 김혜선·정진주(2015)는 외국인 노동자의 산업재해 문제를 ‘이주법체계와의 연관 속에서 이해’할 것을 강조함. 이들은 외국인 노동자의 안전 문제가 고용허가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지적함. 현행 제도에서는 송출국의 외국인 노동자 선발 과정에서 한국어 교육, 취업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취업 후에도 관련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음. 특히 고용허가제를 통해 입국한 외국인 노동자의 사업장 변경에 대한 상당한 제한은 안정보건 문제와 밀접하게 연관된다는 것이 이들의 중요한 주장 가운데 하나임.
- 우리 연구는 이들 선행 연구의 성과와 기여에 크게 의존하면서 설계되었으나 몇 가지 점에서 구분됨.
 - 기존의 연구는 산재승인결과를 중심으로 산재승인통계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통계를 분석하고, 내국인과 비교한 것이 주를 이룸. 따라서 산재불승인, 산재미신청, 산재적용제외의 경우에 대해서는 거의 다루고 있지 않으나, 우리 연구는 산재미승인자를 연구 대상에 포함시킴.
 - 기존 연구는 산재피해 외국인 노동자의 작업환경이나 일반적 건강상태를 다루고 있을 뿐, 산재발생과 처리과정의 전반적 상황이나 개별 상황과의 상관관계, 쟁점 등은 다루고 있지 않음. 우리 연구는 산재 피해자의 입장에서 산재발생 및 처리, 종결 이후의 과정 등에 대해 종합적으로 접근함.
 - 산재승인 이외의 건을 포함하는 기존 연구나 조사로는 노동자의 일반적 인권실태

를 다룬 조사를 들 수 있는데, 이 또한 산재시 처리방법, 산재보험인지여부, 산재 보험 이용하지 않은 이유 등에 대한 제한적인 문제의식에 그침.(전북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외국인노동자대책협의회 2002) 우리 연구는 병원에서의 인종주의를 비롯하여, 피해자의 낮은 권리 의식 등 기존의 연구가 포착하지 못한 산재 경험의 전방위적인 의미와 영향을 포착하고자 함.

Ⅲ. 설문 조사 결과

1. 조사 대상자 특성
2. 산재 유형 및 사고 현장
3. 산재 원인 및 발생 환경
4. 산재 보험 처리 여부
5. 산재 보험 이용시 어려운 점
6. 산재 보험을 신청하지 않은 이유
7. 치료 및 요양 과정의 차별
8. 산재 보험 신청 여부에 따른 차이

1. 조사 대상자 특성

1) 성별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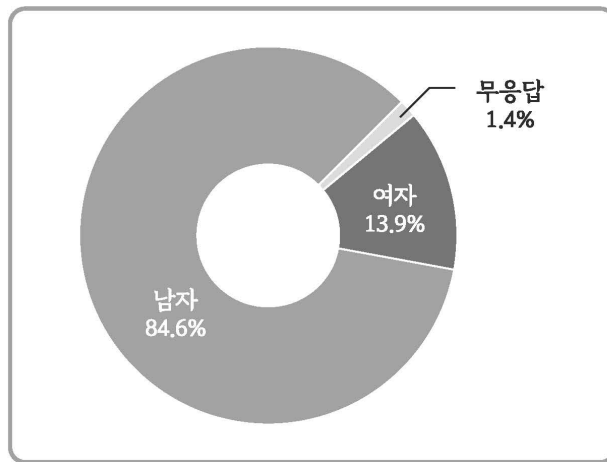
○ 이번 실태조사에 참여한 외국인 노동자 산업 재해 피해자는 총 208명으로 성별 분포는 남성 84.6%(176명), 여성 13.9%(29명)이었음. 무응답자는 3명으로 1.4%였음.(표Ⅲ-1), (그림Ⅲ-1)

<표Ⅲ-1> 조사대상자 성별 분포

(단위: 명, %)

	남자	여자	무응답	합계
빈도(%)	176(84.6)	29(13.9)	3(1.4)	208(100.0)

<그림Ⅲ-1> 조사대상자 성별 분포



- 조사 참여자의 성비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집계한 2013년에서 2016년에 이르는 기간 동안 발생한 외국인 산재 피해자의 공식적인 성비(남성 85%, 여성 15%)와 거의 일치함.

2) 연령별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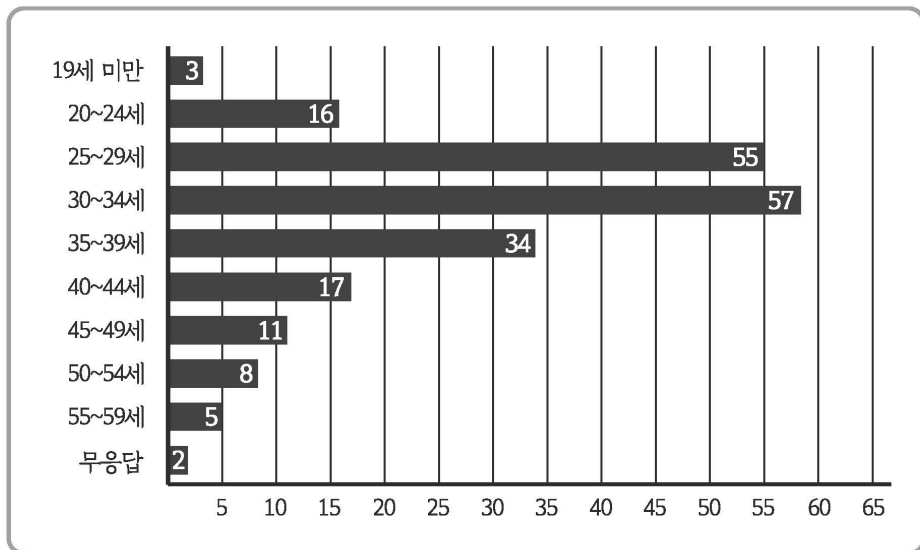
○ 대상자의 연령분포는 20대 중후반에서 30대 후반까지의 연령대에 속한 노동자들이 70%에 이를 정도로 압도적이었음.

- 30세에서 34세에 속한 집단이 27.4%인 57명으로 최대 규모임. 다음으로는 25세에서 29세 집단으로 전체의 26.4%인 55명, 35세에서 39세에 속한 집단은 16.3%인 34명 순이었음.(표Ⅲ-2), (그림Ⅲ-2)

<표Ⅲ-2> 조사대상자 연령 분포

연령	명, 빈도(%)
19세 미만	3(1.4)
20~24세	16(7.7)
25~29세	55(26.4)
30~34세	57(27.4)
35~39세	34(16.3)
40~44세	17(8.2)
45~49세	11(5.3)
50~54세	8(3.8)
55~59세	5(2.4)
무응답	2(1.0)
합계	208(100.0)

<그림Ⅲ-2> 조사대상자 연령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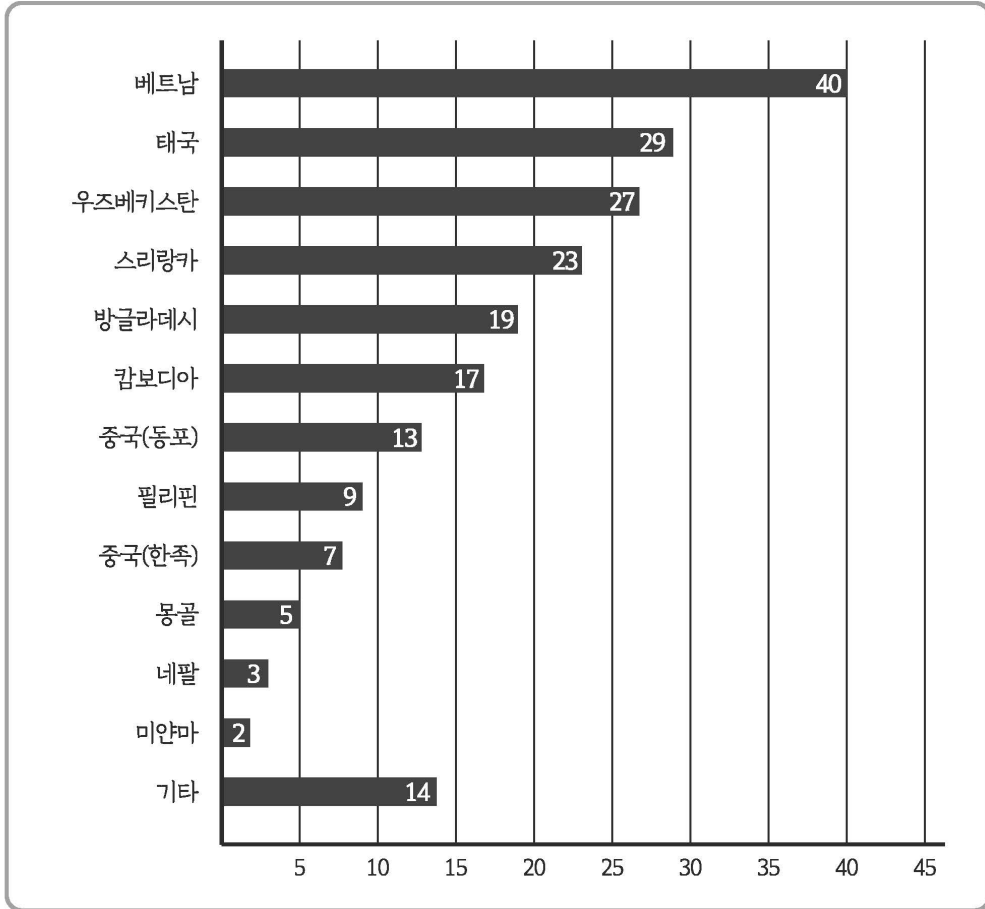
3) 국적별 분포

- 조사대상자들의 국적을 살펴보면 베트남 출신자들이 40명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함(19.2%). 다음이 태국(29명, 13.9%), 우즈베키스탄(27명, 13.0%), 스리랑카(23명, 11.1%), 방글라데시(19명, 9.1%), 캄보디아(17명, 8.2%), 중국(동포)(13명, 6.3%), 필리핀(9명, 4.3%), 중국(한족)(7명, 3.4%), 몽골(5명, 2.4%), 네팔(3명, 1.4%), 미얀마(2명, 1.0%) 등의 순이었음.
- 이번 조사대상자의 국적 분포는 중국 국적자가 소수라는 점에서 중국 국적자가 산재 피해자의 50% 내외로 파악되는 일반적으로 보고되는 외국인 산재 피해자의 국적 분포와는 차이를 보임.
- ‘기타’ 범주의 국적으로는 인도, 나이지리아, 러시아, 키르기스스탄 등이 포함됨.(표Ⅲ-3), (그림Ⅲ-3)

<표Ⅲ-3> 조사대상자 국적 분포

출신국	빈도(%)
베트남	40(19.2)
태국	29(13.9)
우즈베키스탄	27(13.0)
스리랑카	23(11.1)
방글라데시	19(9.1)
캄보디아	17(8.2)
중국(동포)	13(6.3)
필리핀	9(4.3)
중국(한족)	7(3.4)
몽골	5(2.4)
네팔	3(1.4)
미얀마	2(1.0)
기타	14(6.7)
합계	208(100.0)

<그림Ⅲ-3> 조사대상자 국적 분포



- 표집 집단이 비교적 소규모이고, 외국인 지원기관들의 협조로 조사가 이루어졌다는 것이 국적 분포에 영향을 끼쳤을 수 있음. 비교적 다양한 국적의 산재 피해자가 고르게 분포되어 있다는 것은 기존의 조사 결과와 달리 산재 피해가 특정 국가 출신자에게 집중되기 보다는, 모든 국적의 외국인 노동자에게 동등하게 발생할 수 있다는 추론을 가능하게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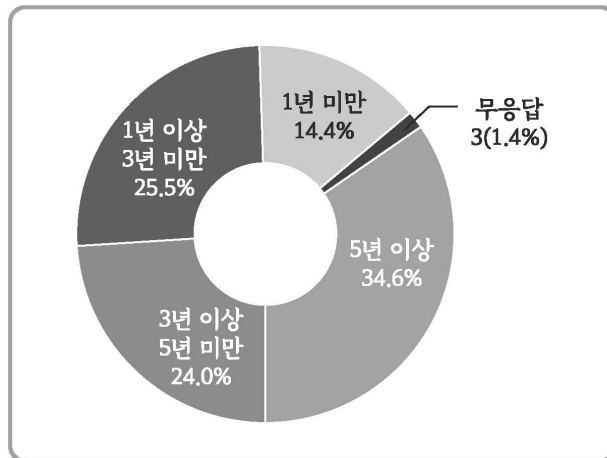
4) 조사 대상자의 거주기간

○ 한국 거주기간을 조사한 결과 5년 이상이라고 응답한 노동자가 72명(34.6%)으로 가장 많았고, 1년 이상 3년 미만 거주 중인 집단이 53명(25.5%)으로 두 번째로 많았으며, 그와 유사하게 3년 이상 5년 미만인 집단이 50명(24.0%)이었고, 1년 미만이 30명(14.4%)로 가장 적었음.(표Ⅲ-4), (그림Ⅲ-4)

<표Ⅲ-4> 2017년 6월 현재 한국 거주기간

	1년 미만	1년 이상 3년 미만	3년 이상 5년 미만	5년 이상	무응답	합계
빈도(%)	30(14.4)	53(25.5)	50(24.0)	72(34.6)	3(1.4)	208(100)

<그림Ⅲ-4> 2017년 6월 현재 한국 거주기간



- 일반적으로 체류 기간이 짧은 외국인 노동자들의 산재발생율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이번 조사는 3년 이상의 상대적으로 장기 체류자들 역시 산재피해에서 안전하지 못하다는 것을 보여줌.
- 특히 5년 이상 체류자들은 경험적으로 대부분 미등록 체류자에 해당하므로 미등록 체류자의 산재 발생율이 등록 체류자에 비해 높을 수 있다는 추론이 가능함.
- 덧붙여 이번 조사 결과는 한국 거주기간과 산재 발생 사이에는 직접적이거나 선형적인 연관관계가 없을 수도 있다는 추론도 가능하게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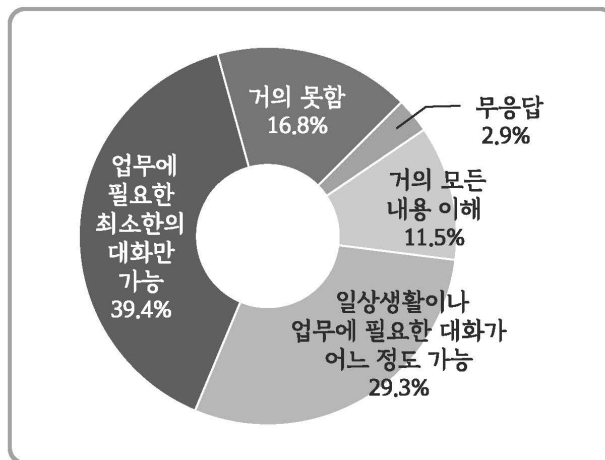
5) 조사 대상자의 한국어 대화 능력

- 이번 조사에 참여한 외국인 산재 경험자의 사업장 내에서의 한국어 소통능력은 전반적으로 취약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소통가능자와 불가능자의 규모 차이는 생각보다 크지 않았음.
- ‘업무에 필요한 최소한의 대화만 가능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전체의 39.4%로 82명이었고, ‘거의 못한다’는 응답도 35명으로 16.8%나 됨.
- 이에 비해 ‘일상생활이나 업무에 필요한 대화가 어느 정도 가능하다’는 응답자가 29.3%로 61명이었으며, 거의 모든 내용을 이해하는 노동자는 24명으로 전체의 11.5%였음.(표Ⅲ-5), (그림Ⅲ-5)

<표Ⅲ-5> 조사대상자의 사업장 내 한국어 대화 가능 정도

한국어 수준	빈도(%)
거의 못함	35(16.8)
업무에 필요한 최소한의 대화만 가능	82(39.4)
일상생활이나 업무에 필요한 대화가 어느 정도 가능	61(29.3)
거의 모든 내용 이해	24(11.5)
무응답	6(2.9)
합계	208(100.0)

<그림Ⅲ-5> 조사대상자의 사업장 내 한국어 대화 가능 정도



- 전체적으로 한국어 소통이 거의 불가능한 경우가 56.2%, 가능한 경우는 40.8%로, 무응답을 불가능한 경우에 포함시키면 소통 가능자와 불가능자는 대략 6:4 정도의 비율임.
- 이는 기존의 조사 결과와 비슷한 수준임. 조사 대상자 가운데, 상대적으로 한국어 소통 능력이 여타 외국인에 비해 높은 편인 중국 동포들의 비중이 적다는 것(6.3%)이 영향을 미쳤을 수 있음.
- 한국어 소통 가능자의 산재율이 불가능자의 산재율에 비해 크게 낮지 않다는 점에서, 한국어 의사소통 능력이 산재발생에 미치는 영향력에 대한 보다 정밀한 분석이 필요해 보임.

6) 산재 사고 당시의 체류 자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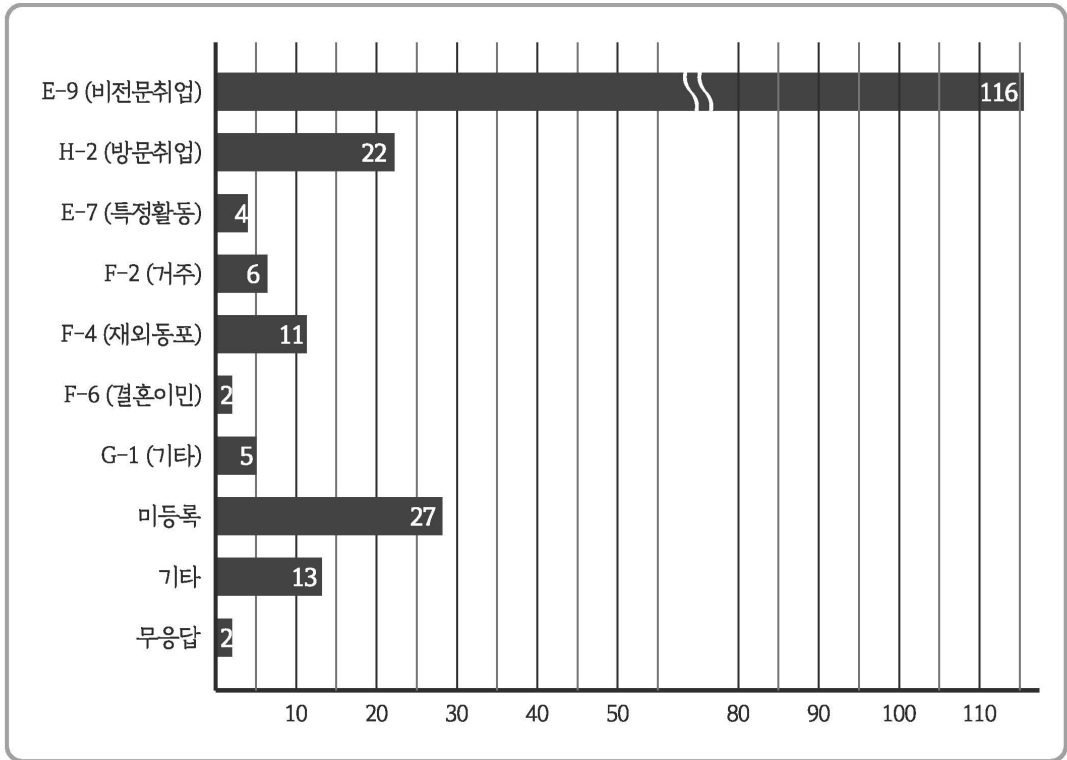
○ 산재 사고 당시 체류자격은 전체의 55.8%인 116명이 비전문취업비자인 E-9비자 소지자로 가장 다수였음. 미등록 체류자가 전체의 13.0%인 27명으로 두 번째 다수 집단이었음.

- 그 다음은 방문취업비자인 H-2 비자 소지자 22명(10.6%), 재외동포비자(F-4) 11명(5.3%), 거주비자(F-2) 6명(2.9%) 순이었음.(표Ⅲ-6), (그림Ⅲ-6)

<표Ⅲ-6> 산재사고 당시 체류자격(VISA)

비자유형	빈도(%)
E-9(비전문취업)	116(55.8)
H-2(방문취업)	22(10.6)
E-7(특정활동)	4(1.9)
F-2(거주)	6(2.9)
F-4(재외동포)	11(5.3)
F-6(결혼이민)	2(1.0)
G-1(기타)	5(2.4)
미등록	27(13.0)
기타	13(6.3)
무응답	2(1.0)
합계	208(100.0)

<그림Ⅲ-6> 산재사고 당시 체류자격(VIS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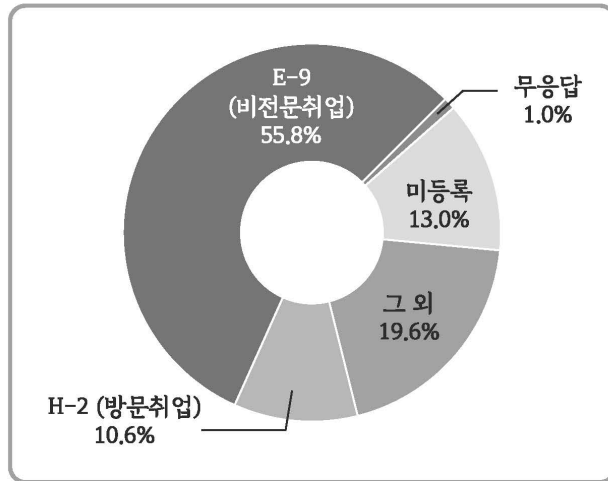
- 다른 조사에 비해 한국계 외국인(방문취업과 재외동포)의 비중이 적다는 점이 이번 조사의 특이점임. 현재 고용허가제하에서 한국에서 일하고 있는 일반 외국인 노동자와 동포 외국인 노동자의 분포는 50 대 50 정도임.
 - 표본의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이번 조사 결과를 한국계 외국인이 다수 포함된 여타의 조사 결과와 선형적으로 비교하는 것은 경계해야 함. 그러나 이번 조사가 비동포 외국인의 산재 실태에 대해서는 다른 조사에 비해 좀 더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해준다고 볼 수 있음.
- 산재 사고 당시 피해자들의 비자 유형을 좀 더 큰 범주로 재분류해보면, 고용허가제에 근거하여 입국한 E-9(비전문취업)비자, 재외동포에게 주어지는 H-2(방문취업)비자 그리고 그 외의 비자를 지니고 있는 외국인 노동자 및 미등록 체류자로 분류가능함.
- 범주별 규모는 E-9(비전문취업)비자 116명(55.8%), 기타 비자(E-7, F-2, F-4,

F-6, G-1 등)를 지닌 경우 41명(19.6%), 미등록 체류 27명(13.0%), H-2(방문취업)비자 22명(10.6%)의 순임.(표Ⅲ-7), (그림Ⅲ-7)

<표Ⅲ-7> 산재사고 당시 체류자격(VISA) 특성별 분류

비자유형	빈도(%)
E-9(비전문취업)	116(55.8)
H-2(방문취업)	22(10.6)
그 외	41(19.6)
미등록	27(13.0)
무응답	2(1.0)
합계	208(100.0)

<그림Ⅲ-7> 산재사고 당시 체류자격(VISA) 특성별 분류



- 미등록 체류자(13%)도 경험적으로 대부분은 고용허가제로 입국한 일반 외국인 노동자 ‘출신’이라는 점을 고려하는 경우 본 조사에 참여한 산재 피해 노동자의 속인주의적 분포는 일반 외국인 노동자 70%, 동포 노동자 20% 가량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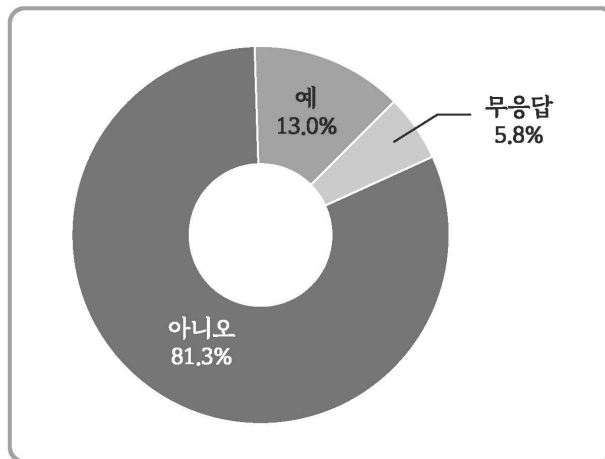
7) 치료 및 요양이 진행중인 경우

○ 조사 참여자들 가운데 여전히 치료 및 요양이 진행되고 있는 비율은 전체의 13.0%인 27명이었음.(표Ⅲ-8), (그림Ⅲ-8)

<표Ⅲ-8> 현재 치료 및 요양 진행 여부

	예	아니오	무응답	합계
빈도(%)	27(13.0)	169(81.3)	12(5.8)	208(100)

<그림Ⅲ-8> 현재 치료 및 요양 진행 여부



2. 산재 유형 및 사고 현장

1) 산재 유형

○ 외국인 노동자들이 경험한 산재 유형에 대해 질문함. 두 번 이상 경험한 경우 ‘가장 최근의’ 사고 유형을 선택하도록 함.

- 조사 결과 ‘절단, 베임, 찢림’ 등의 사고유형이 48명(23.1%)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이 ‘물체에 맞음’이라고 응답한 경우가 25명(12.0%), ‘넘어짐’이 21명(10.1%), ‘떨어짐’이 14명(6.78%), ‘끼임’이 11명(5.3%), ‘부딪힘’이 10명(4.8%), ‘무너짐’이 8명(3.8%) 등의 순이었음.
- 적은 빈도이지만 ‘이상온도 접촉’, ‘화학물질 누출 및 접촉’, ‘불균형 및 무리한 동작’, ‘깔림 및 뒤집힘’, ‘감전’, ‘화재’, ‘폭발 및 파열’ 등의 사고 유형도 파악됨.
- 업무 과정에서의 사고가 아니라 ‘폭력 행위’를 경험한 경우도 3명(1.4%)에 달함.
- ‘업무상 질병’이 13명(6.3%)으로 일반적으로 알려진 것 보다 훨씬 많이 선택됨. 업무상 질병을 선택한 응답자들의 비자유형은 E-9 7명, 미등록 체류자 3명, F-6(결혼이민) 2명, H-2 1명 등이었음.(표 III-9)

<표III-9> 산재 유형

상해 종류	빈도(%)
절단, 베임, 찢림	48(23.1)
물체에 맞음	25(12.0)
넘어짐	21(10.1)
떨어짐	14(6.7)
업무상 질병	13(6.3)
끼임	11(5.3)
부딪힘	10(4.8)
무너짐	8(3.8)
이상온도 접촉	5(2.4)
화학물질 누출, 접촉	4(1.9)
불균형 및 무리한 동작	4(1.9)
깔림, 뒤집힘	4(1.9)
폭력행위	3(1.4)
감전	1(0.5)
화재	1(0.5)
폭발, 파열	1(0.5)
기타	15(7.2)
무응답	20(9.6)
합계	208(100.0)

- 일반적으로 알려진 외국인 노동자들이 경험하는 산재 사고 유형별 규모는 끼임 > 떨어짐 > 절단 > 베임 > 찢림 > 넘어짐의 순서라는 점에서 이번 조사 결과는 그와는 구분됨.
- 베임, 끼임, 절단 등의 산재 사고는 기본적으로 기계의 안전장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거나 아예 없거나 노후된 기계 등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다수임. 화학물질 관련 사고의 경우 보호장비 미지급과 연관된 경우가 다수임.
- 이런 유형의 산재가 발생하는 가장 큰 요인은 기본적으로 ‘산재친화적인’ 작업환경에서 찾아질 수 있음. 이것은 한국에서의 거주기간이나 한국어 소통 능력과 무관하게 이러한 작업환경에서 일하는 모든 노동자들이 산재 위험에 노출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뜻함.
- 업무상 질병이 많이 선택된 것은 선택의 기준이 실제 승인 여부가 아니라 주관적 자기 판정인 것으로 사료됨. 업무상 질병의 경우 실제 승인과 주관적 자기판정 간에 상당한 괴리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함.

2) 산재 발생 현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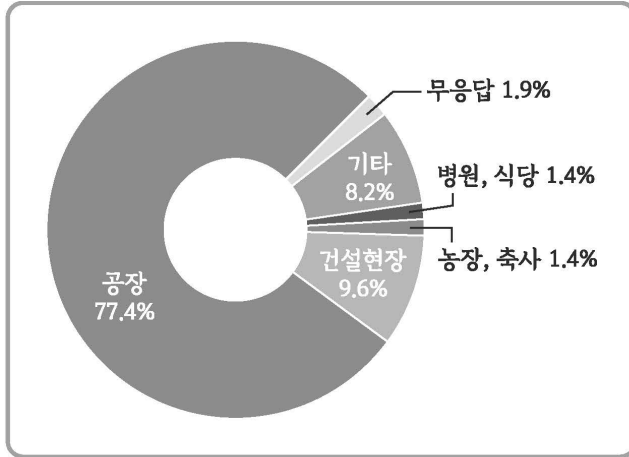
○ 산재 사고 발생 현장에 관한 문항의 응답지로는 공장이 161명(77.4%)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이 건설현장으로 20명(9.6%)이었음.

- 소수 응답자의 선택지에는 농장이나 축사, 병원이나 식당 등이 포함됨. ‘기타’ 사고 장소에는 “고물상 마당” 등이 지적됨. 이번 조사 응답자들의 경우 대부분의 산재 사고가 공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표Ⅲ-10), (그림Ⅲ-9)

<표Ⅲ-10> 산재 발생 현장

재해 장소	빈도(%)
공장	161(77.4)
건설현장	20(9.6)
농장, 축사	3(1.4)
병원, 식당	3(1.4)
기타	17(8.2)
무응답	4(1.9)
합계	208(100.0)

<그림Ⅲ-9> 산재 발생 현장



- 기존의 조사에 따르면 산재 사고의 60% 이상은 제조업 분야에서 발생하고 20% 가량은 건설업 분야에서 발생함. 이번 조사에서는 건설 현장에서 사고발생율이 9.6%로 기존 조사에 비해 낮게 나타남.
- 건설현장은 일반 외국인 노동자보다 동포 노동자가 더 많이 취업하는 상황임. 설문 대상자가 거의 대부분 일반 외국인 노동자(70%)라는 점이 반영된 결과라고 추론됨. 표집의 특성을 고려했을 때 이번 조사 결과를 근거로 대부분의 산재가 제조업 분야에서 발생한다고 일반화하기에는 무리가 따름.

3. 산재 원인 및 발생 환경

1) 산재 사고 사업장 직원 규모 및 근속 기간

○ 응답자의 75.5%는 산재를 경험했을 당시 곧 업무 중 사고로 다쳤거나 병에 걸렸을 당시 29인 미만의 소규모 작업장에서 일하고 있던 것으로 확인됨.

- 구체적으로 5인 미만 작업장에서 일한 경우가 45명(21.6%), 5인에서 9명 규모의 작업장에서 일한 경우가 53명(25.5%), 10인에서 29인 규모의 작업장에서 일하다 산재를 당한 경우가 59명(28.4%)임. 이 세 집단을 모두 합한 비율이 75.5%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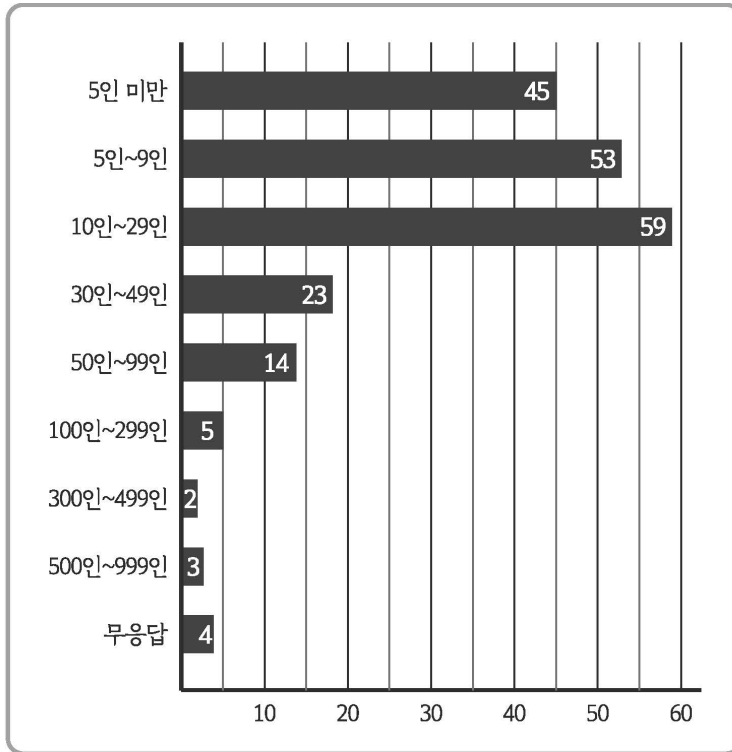
- 이에 비해 100인 이상의 상대적으로 대규모의 사업장에서 산재를 경험했다고 응답한 경우는 10명으로 4.8%였음.

- 이를 통해 산재가 대규모 작업장보다는 소규모 사업장에서 주로 발생하고 있음이 확인됨. 이는 소규모 사업장에서 산재발생율이 높다는 기존 가설과도 일치하는 결과임.(표Ⅲ-11), (그림Ⅲ-10)

<표Ⅲ-11> 산재 시 재직 사업장 직원 수

사업장 직원 수	빈도(%)
5인 미만	45(21.6)
5인~9인	53(25.5)
10인~29인	59(28.4)
30인~49인	23(11.1)
50인~99인	14(6.7)
100인~299인	5(2.4)
300인~499인	2(1.0)
500인~999인	3(1.4)
무응답	4(1.9)
합계	208(100.0)

<그림Ⅲ-10> 산재 시 재직 사업장 직원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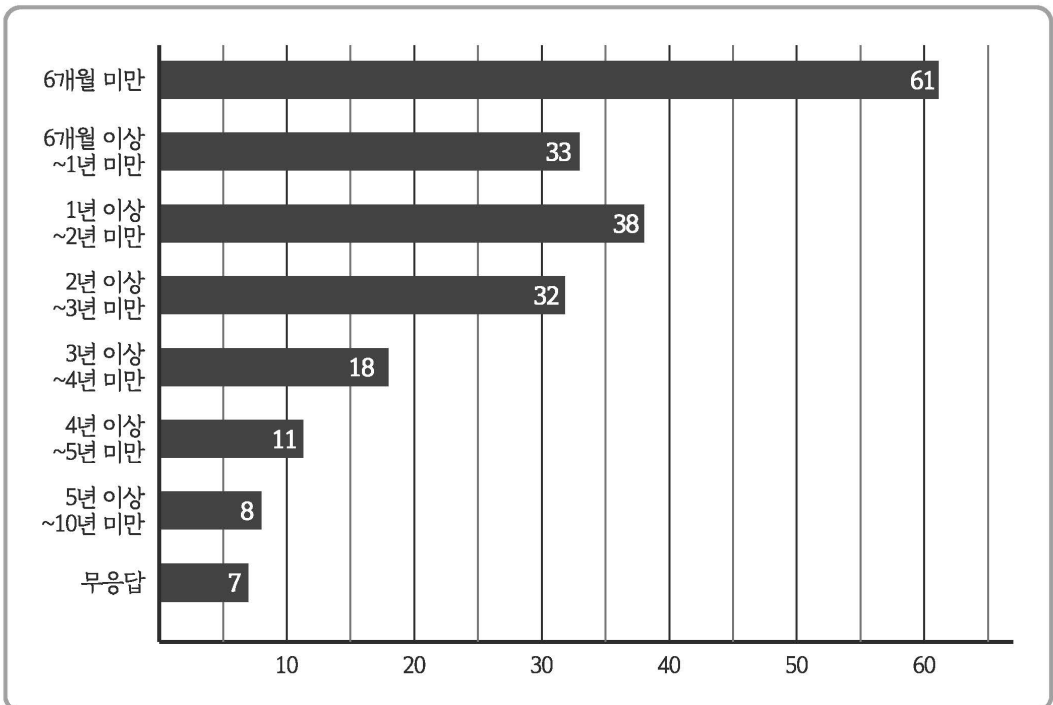
- 그러나 고용허가제로 입국하는 외국인 노동자의 대략 70% 가량이 30인 미만의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현실을 고려할 때 이번 조사 결과를 사업장 규모의 차이로만 제한해서 해석하는 것은 주의를 요함. 사업장 규모와 외국인 노동자 산재 발생률의 연관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30인 미만 사업장 내부에서의 산재 발생률에 대한 추가적인 분석이 요청됨.

○ 사고 당시 해당 사업장 근무 기간 관련 ‘6개월 미만’이 61명(29.3%)으로 가장 다수였음. 그 다음은 ‘1년 이상 2년 미만’ 38명(18.3%), ‘6개월 이상 1년 미만’ 33명(15.9%), ‘2년 이상 3년 미만’ 32명(15.4%)의 순이었음.(표Ⅲ-12), (그림Ⅲ-11)

<표Ⅲ-12> 사고 사업장 근무 기간

사고 사업장 근무기간	빈도(%)
6개월 미만	61(29.3)
6개월 이상~1년 미만	33(15.9)
1년 이상~2년 미만	38(18.3)
2년 이상~3년 미만	32(15.4)
3년 이상~4년 미만	18(8.7)
4년 이상~5년 미만	11(5.3)
5년 이상~10년 미만	8(3.8)
무응답	7(3.4)
합계	208(100.0)

<그림Ⅲ-11> 사고 사업장 근무 기간



- 사고 사업장에서 근무했던 기간이 길어질수록 응답자의 비율이 낮아지는 경향성을 나타냄. 이것은 해당 작업에 대한 업무 숙련도가 아직 낮은 수준일 때 사고가

빈번하게 나타나며, 점차 숙련도가 높아짐에 따라 사고의 발생 빈도가 낮아지는 것으로 해석됨.

- 이러한 조사 결과는 해당 사업장에서의 근무 기간이 짧을수록 곧 숙련도가 낮을수록 산재율이 높다는 기존의 가설과 일치하는 결과임.
- 다만 이러한 결과를 해석할 때 한국에서의 체류기간과 해당 사업장에서의 근무 기간을 선형적으로 연관시키는 태도는 지양해야 함. 한국에서의 체류기간이 길어도(사업장 이동 등으로) 해당 사업장에서의 근무 기간은 짧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수 있어야 함.

2) 산재 발생 원인 및 이유

(1) 산재 발생 원인 및 이유

- 산재 발생 원인 및 이유를 파악하기 위해, 업무 중 사고로 다쳤거나 병에 걸리게 된 원인 또는 이유에 해당하는 총 17가지 문항을 제시함. ‘매우 그렇다’, ‘그렇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의 총 4점 척도 상에서 그들 각각의 문항에 응답하도록 함.
 - 기술적인 척도 값이 자칫 산재 원인 및 이유에 대한 그릇된 이미지를 강요하는 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해 설문을 코딩 및 분석하는 과정에서는 문항에 대한 평균값이 높을수록 해당 문항에 대해 동의하는 정도가 높다는 의미가 되도록 역코딩을 수행함.
 - 역코딩 결과의 가독률을 높이기 위해 최초의 4점 척도를 긍정 응답(‘그렇다’)과 부정 응답(‘그렇지 않다’)의 두 가지 범주로 재구성함. ‘매우 그렇다’와 ‘그렇다’가 전자의 하나의 범주로, ‘그렇지 않다’와 ‘전혀 그렇지 않다’가 후자의 다른 하나의 범주로 묶임.
- 17가지 문항 간의 요인 분석 및 신뢰도 분석을 통하여, 산재 발생 원인 및 이유에 관한 네 가지 요인을 추출함. 네 가지 요인은 ‘안전관리 소홀 요인’, ‘열악한 근무환경 요인’, ‘한국사회 부적응 요인’, ‘직장 내 차별 및 폭행 요인’으로 구성됨.
 - 안전관리 소홀의 요인에는 안전교육이나 지침의 미비, 안전을 위한 장비나 기계

- 관리 소홀 등으로 산재가 발생했다는 문항들이 포함됨. 요인 내 문항별 응답율은 안전장구 미지급, 작업기계(기구) 결함, 안전교육 미흡, 업무내용 미숙지의 순서임.
- 열악한 작업환경 요인에는 작업환경이 열악하고, 노동자의 건강을 고려하지 않으며, 과중한 업무가 지속되는 환경으로 인하여 사고를 당하거나 병에 걸리게 되었다는 문항들이 포함됨. 문항별 응답율은 중량물건 반복 운반, 휴식시간 부족, 장시간 근로, 작업장 내 소음/분진/화학물질의 순서임.
 - 한국사회 부적응 요인에는 한국어가 익숙하지 않거나 환경의 변화로 인한 신체적, 심리적 부적응으로 인한 산재가 발생한다는 문항들이 포함됨. 문항별 응답율은 한국어 미숙, 환경변화, 외로움/우울감(향수병)의 순임.
 - 직장 내 차별과 폭행요인으로 한국인 동료나 관리자로부터 당한 폭행이나 차별, 적절한 도움을 받지 못해서 사고를 당하게 되었다는 문항들이 포함됨. 문항별 응답율은 동료의 조력 부족, 외국인 차별, 관리자의 폭행 순임.(표III-13)

<표Ⅲ-13> 산재 원인 및 이유

산재 요인	산재 원인 및 이유	그렇지 않다	그렇다	무응답	합계
안전 관리 소홀	안전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해서	120(57.7)	75(36.1)	13(6.3)	208(100)
	관리자가 업무 내용을 자세히 설명해주지 않아	128(61.5)	67(32.2)	13(6.3)	208(100)
	적절한 안전장구를 지급받지 못해서	103(49.5)	97(46.6)	8(3.8)	208(100)
	작업할 때 사용하는 기계/기구 결함 때문에	115(55.3)	81(39.0)	12(5.8)	208(100)
열악한 근무 환경	작업장 내 소음/분진/화학물질 때문에	125(60.1)	73(35.1)	10(4.8)	208(100)
	무거운 물건을 반복적으로 다루다가	118(56.7)	79(38.0)	11(5.3)	208(100)
	장시간의 초과근무 때문에	132(63.4)	66(31.7)	10(4.8)	208(100)
	몸이 아플 때도 회사에서 일을 쉬지 못하게 해서	135(64.9)	59(28.3)	14(6.7)	208(100)
	평소 의료기관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없어	134(64.5)	64(30.7)	10(4.8)	208(100)
	작업 중 휴식시간을 충분히 사용할 수 없어서	122(58.6)	76(36.5)	10(4.8)	208(100)
	사업장 이동이 허용되지 않아서	150(72.1)	45(21.7)	13(6.3)	208(100)
한국 사회 부적응	한국에 온 뒤 급격한 날씨, 음식, 생활습관 (화장실 사용 등)의 변화로	150(72.1)	48(23.1)	10(4.8)	208(100)
	한국 생활의 외로움, 우울감 때문에	159(76.5)	39(18.8)	10(4.8)	208(100)
	한국어가 익숙하지 않아서	148(71.2)	48(23.1)	12(5.8)	208(100)
직장 내 차별 및 폭행	한국인 동료나 관리자의 폭행 때문에	181(87.0)	16(7.7)	11(5.3)	208(100)
	사업장 내에서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차별을 받아	146(70.2)	53(25.5)	9(4.3)	208(100)
	동료의 조력을 충분히 받지 못해서	136(65.4)	62(29.8)	10(4.8)	208(100)

- 조사 결과 전체적으로 안전관리 미흡과 과도한 근로가 산재의 주된 요인으로 분석된 것은 기존의 연구와 일치하는 결과임.
- 네 가지 요인 모두에서 ‘그렇지 않다’는 응답의 비율이 높게 나타난 것은 응답자(산재 피해 외국인 노동자)가 실제로 경험한 산재는 기본적으로 1가지이며 따라서 그 원인 역시 많아봐야 두어 가지로 특정할 수 있는 것인데 설문에는 너무 많은 선택지가 제시된 탓인 것으로 추론됨.

(2) 산재 발생 원인 및 이유 관련 요인 분석

○ 산재 발생 원인 및 이유와 관련된 네 가지 요인 간의 평균을 비교해 본 결과 안전관리 소홀로 사고를 당하거나 병에 걸렸다고 생각하는 정도가 가장 높았고, 다음은 열악한 작업환경요인의 평균값이 높았으며, 다음이 한국사회 부적응 요인이었음. 마지막이 직장 내 차별과 폭행 요인이었음. 네 가지 요인 별 문항 내 평균값은 다음과 같이 나타남.

- 안전관리 소홀의 요인 중 가장 높은 평균값을 보인 문항은 ‘적절한 안전 장구를 지급받지 못해서’라는 응답이었고, 두 번째가 ‘작업할 때 사용하는 기계/기구 결함 때문에’라는 응답이었으며, 다음이 ‘안전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해서’라는 응답이었고, ‘관리자가 업무 내용을 자세히 설명해주지 않아서’라는 문항이 그 다음이었음.
- 열악한 근무환경 요인을 구성하는 문항들의 경우 평균값은 ‘무거운 물건을 반복적으로 다루다가’, ‘작업 중 휴식시간을 충분히 사용할 수 없어서’, ‘장시간의 초과 근무 때문에’, ‘작업장 내 소음/분진/화학물질 때문에’, ‘몸이 아플 때도 회사에서 일을 쉬지 못하게 해서’, ‘평소 의료기관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없어서’, ‘사업장 이동이 허용되지 않아서’의 순이었음.
- 한국사회 부적응 요인의 경우 ‘한국어가 익숙하지 않아서’, ‘한국의 환경변화’, ‘한국생활의 외로움이나 우울감’ 등의 순으로 평균값이 높았음.
- 직장 내 차별 및 폭행요인의 경우 전체 문항 중 가장 낮은 평균값을 보였음. ‘동료의 조력을 충분히 받지 못해서’라는 응답이 평균 2.11로 가장 높았고, 나머지 ‘사업장 내에서 외국인이라고 차별을 받아서’ 또는 ‘한국인 동료나 관리자의 폭행 때문에’라는 응답은 전체 문항 중 가장 낮은 평균값을 나타냄.(표Ⅲ-14)

<표Ⅲ-14> 산재 원인 및 이유의 요인별 문항별 평균 및 표준편차

산재 요인	산재 원인 및 이유	문항별 평균 (표준편차)	요인별 평균 (표준편차)
안전관리 소홀 ($\alpha=.88$)	적절한 안전장구를 지급받지 못해서	2.40(1.06)	2.28(0.89)
	작업할 때 사용하는 기계/기구 결함 때문에	2.29(1.05)	
	안전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해서	2.22(1.07)	
	관리자가 업무 내용을 자세히 설명해주지 않아	2.20(0.97)	
열악한 근무환경 ($\alpha=.85$)	무거운 물건을 반복적으로 다루다가	2.27(0.99)	2.15(0.74)
	작업 중 휴식시간을 충분히 사용할 수 없어서	2.26(1.08)	
	장시간의 초과근무 때문에	2.20(1.02)	
	작업장 내 소음/분진/화학물질 때문에	2.20(0.97)	
	몸이 아플 때도 회사에서 일을 쉬지 못하게 해서	2.11(0.99)	
	평소 의료기관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없어	2.10(1.02)	
	사업장 이동이 허용되지 않아서	1.97(0.97)	
한국사회 부적응 ($\alpha=.76$)	한국어가 익숙하지 않아서	2.01(0.99)	1.92(0.77)
	한국에 온 뒤 급격한 날씨, 음식, 생활습관 (화장실 사용 등)의 변화로	1.94(0.93)	
	한국 생활의 외로움, 우울감 때문에	1.81(0.89)	
직장 내 차별 및 폭행 ($\alpha=.76$)	동료의 조력을 충분히 받지 못해서	2.11(1.00)	1.89(0.74)
	사업장 내에서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차별을 받아	1.94(0.93)	
	한국인 동료나 관리자의 폭행 때문에	1.64(0.73)	

- 이러한 분석 결과는 작업장에서 일어나는 사고나 질병의 경우 안전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는 작업장에서 과도한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나타날 가능성이 매우 높고, 그에 비해 한국사회 부적응이나 직장 내 차별 및 폭행의 문제로 인한 사고 발생 빈도나 비율은 상대적으로 낮다는 것을 시사함.

3) 산재 발생 원인 및 이유 관련 분산 분석:

연령, 거주기간, 한국어 능력, 사업장 규모, 재직 기간, 체류 자격

- 산재 원인 및 이유 관련 네 가지 요인에 관해 연령집단, 한국 거주기간, 한국어 능력, 산재발생시 사업장 규모, 산재발생시 재직기간 및 체류 자격 등 산재 피해 외국인 노동자 관련 배경 변수별로 차이가 발생하는지 분산 분석을 시도해 봄.
- 네 가지 요인 모두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체류 자격에서만 확인됨. 한국어 능력 및 산재 당시 사업장 규모에 있어서는 일부 요인에서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확인됨.
 - 체류 자격과 관련, 산재 발생 원인 및 이유와 관련한 네 가지 요인, 곧 안전관리 소홀, 열악한 근무환경, 한국사회 부적응 및 직장 내 차별 등 네 요인 모두에서 일관되게 H-2(방문취업)비자 소지자들이 다른 집단에 비해 평균값이 낮은 것으로 나타남.(표Ⅲ-15)

<표Ⅲ-15> 산재발생시 체류자격(Visa)별 산재 원인 및 이유

	E-9 (비전문취업)	H-2 (방문취업)	기타비자	미등록	F
안전관리 소홀	2.42(.89)a	1.54(.68)b	2.29(.79)a	2.27(.97)a	5.83***
열악한 근무환경	2.24(.72)a	1.48(.63)b	2.11(.66)a	2.41(.79)a	8.05***
한국사회 부적응	2.02(.78)a	1.32(.60)b	1.92(.68)a	1.99(.77)a	5.55***
직장 내 차별 및 폭행	1.93(.68)a	1.42(.71)b	2.05(.76)a	1.96(.82)a	3.83*

* p<.05, *** p<.001, Duncan: a>b

- 한국어 능력과 관련 전반적으로 한국어 능력이 낮을수록 네 가지 요인에 대하여 귀인하는 정도가 높은 경향성은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열악한 근무환경’ 때문이라는 인식수준에서만 확인됨. 곧 한국어 능력이 낮을수록 산재 발생 원인을 열악한 근무환경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강함.(표Ⅲ-16)

<표Ⅲ-16> 한국어 능력별 산재 원인 및 이유

	거의 못함	업무에 필요한 최소한의 대화만 가능	일상생활이나 업무에 필요한 대화가 어느 정도 가능	거의 모든 내용 이해	F
안전관리 소홀	2.38(.93)	2.40(.84)	2.13(.89)	2.09(.90)	1.42
열악한 근무환경	2.40(.79)a	2.20(.73)ab	1.96(.64)b	1.99(.83)b	2.95*
한국사회 부적응	2.07(.93)	2.00(.74)	1.74(.70)	1.82(.70)	1.94
직장 내 차별 및 폭행	1.84(.74)	1.99(.69)	1.82(.73)	1.77(.77)	0.98

* p<.05, Duncan: a>b

- 산재 발생 당시 사업장 규모 관련 한국사회 부적응 요인에 있어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집단별 차이가 나타남. 5인 미만인 사업장에서 일한 경우 한국사회 부적응 문제 때문이라는 인식이 높았고, 다음이 50인 이상의 대규모 사업장이었으며, 10인에서 29인 정도의 사업장에서 일한 경우 한국사회 부적응으로 귀인하는 정도는 가장 낮았음.(표Ⅲ-17)

<표Ⅲ-17> 산재발생시 사업장 규모별 산재 원인 및 이유

	5인 미만	5인~9인	10인~29인	30인~49인	50인 이상	F
안전관리 소홀	2.44(1.01)	2.34(0.86)	2.06(0.80)	2.34(0.89)	2.46(0.90)	1.50
열악한 근무환경	2.28(0.74)	2.28(0.73)	1.98(0.75)	2.04(0.81)	2.35(0.60)	1.90
한국사회 부적응	2.22(0.85)a	1.97(0.72)ab	1.68(0.71)b	1.77(0.81)b	1.99(0.66)ab	3.43**
직장 내 차별 및 폭행	2.02(0.86)	1.90(0.67)	1.84(0.74)	1.74(0.60)	1.99(0.75)	0.76

** p<.01, Duncan: a>b

- 한국 거주기간 관련해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확인되지 않았으나 안전관리 소홀 요인과 열악한 근무환경 요인에 있어서 경향성의 차이는 나타남.
 - 안전관리 소홀 요인의 경우 ‘1년에서 5년’ 정도 거주한 집단의 평균값이 높는데 반해 1년 미만 또는 5년 이상인 집단은 안전관리 소홀이라고 인식하는 수준이 낮은 경향성을 보였음.
 - 열악한 근무환경 요인 관련 3년 미만인 집단의 평균값이 높았고, 그에 비해 3년 이상, 특히 5년 이상 거주한 집단의 경우 평균값이 낮은 경향성을 보임.(표Ⅲ-18)

<표Ⅲ-18> 한국 거주기간별 산재 원인 및 이유

	1년 미만	1년 이상 3년 미만	3년 이상 5년 미만	5년 이상	F
안전관리 소홀	2.15(0.93)	2.45(0.92)	2.32(0.80)	2.15(0.92)	1.26
열악한 근무환경	2.23(0.73)	2.29(0.74)	2.17(0.72)	1.97(0.72)	2.02
한국사회 부적응	1.95(0.78)	1.94(0.74)	1.96(0.80)	1.81(0.74)	0.49
직장 내 차별 및 폭행	1.86(0.84)	1.94(0.73)	1.96(0.69)	1.80(0.73)	0.61

○ 연령 및 산재 사고 발생시 재직기간에 따라 산재 원인 및 이유에 대한 인식의 차이가 발생하는지에 대해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음.

4. 산재보험 처리 여부

1) 산재 사고 목격 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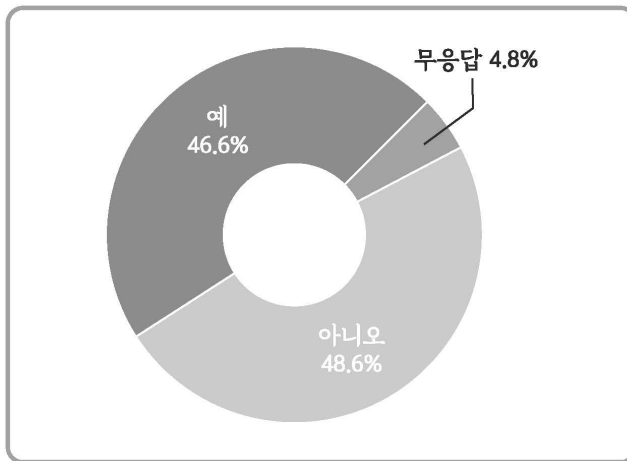
○ 이번 조사에 참여한 산재 피해 당사자 이외에 외국인 노동자의 산재 사고 및 누락 실태에 대한 좀 더 광범위한 정보를 얻기 위해 업무 중 사고로 다쳤거나 병에 걸렸으나 산재보험의 혜택을 받지 못한 동료들을 보았거나 그런 동료들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는지에 대해 질문함.

- 전체 198명의 유효 응답지 가운데 ‘예’라고 응답한 노동자는 97명 46.6%로서, ‘아니오’라고 응답한 노동자 101명 48.6%에 거의 육박함.(표Ⅲ-19), (그림Ⅲ-12)

<표Ⅲ-19> 산재보험 미처리 목격 경험 유무

	예	아니오	무응답	합계
빈도(%)	97(46.6)	101(48.6)	10(4.8)	208(100)

<그림Ⅲ-12> 산재보험 미처리 목격 경험 유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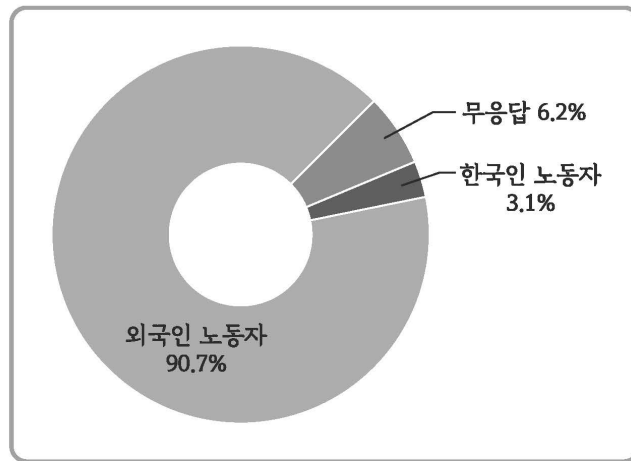
- 산재 피해 당사자 가운데 거의 절반가량이 또 다른 산재 피해를 목격했다는 것은 전반적으로 그들의 산재가 개인적 요인이라기보다는 산재 발생의 위험성이 매우 높은 사업장 구조 및 환경에 기인할 개연성이 높다는 것을 시사함.

- 업무 중 사고로 다쳤거나 병에 걸렸으나 산재보험 혜택을 받지 못한 동료를 보았다고 응답한 97명을 대상으로 해당 노동자의 국적을 질문함. 90.7%인 88명은 ‘외국인’ 이라고 응답하여 산재를 당했으나 보험의 혜택에서 누락되는 피해자 대다수가 외국인임이 확인됨.(표Ⅲ-20), (그림Ⅲ-13)

<표Ⅲ-20> 목격한 산재보험 미처리 노동자 국적

	외국인 노동자	한국인 노동자	무응답	합계
빈도(%)	88(90.7)	3(3.1)	6(6.2)	97(100)

<그림Ⅲ-13> 목격한 산재보험 미처리 노동자 국적



- 한국인 산재 목격율은 3.1%로 외국인의 1/30에 불과함. 이는 일반적으로 알려진 외국인과 한국인의 산재발생율의 차이(6배)를 훨씬 압도하는 수치임. 이런 결과가 나온 것은 외국인 산재 피해 노동자들이 고용된 사업장 대부분이 한국인 노동자들이 기피하는 곳이거나, 외국인 노동자들이 자신들끼리만의 제한적인 사회적 연결망을 가지고 있기에 한국인 산재에 대해서는 많은 정보를 가질 수 없을 것이라는 추론이 가능함.

2) 산재보험 신청 여부와 변수별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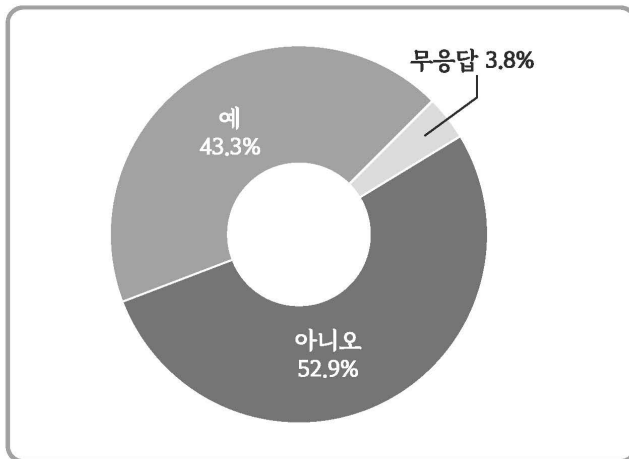
(1) 산재보험 신청 여부

- 업무 중 사고로 다쳤거나 병에 걸렸을 때 산재보험을 신청했는지 여부를 묻는 문항에서 신청했다는 응답자보다는 신청하지 않았다는 응답자가 더욱 많은 것으로 확인됨.
- 산재를 신청했다고 긍정적으로 응답한 비율은 43.3%인 90명이었는데 반해, 산재 미신청을 뜻하는 ‘아니오’라고 응답한 비율은 52.9%인 110명으로 신청하지 않았다는 응답 비율이 무려 10% 가량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표Ⅲ-21), (그림Ⅲ-14)

<표Ⅲ-21> 산재보험 신청 유무

	예	아니오	무응답	합계
빈도(%)	90(43.3)	110(52.9)	8(3.8)	208(100)

<그림Ⅲ-14> 산재보험 신청 유무



- 산재 미신청자가 50%를 상회하는 이번 조사 결과를 통해 실제 산재 피해자의 규모가 공식적인 통계로 집계된 것보다 매우 클 것이라는 경험적인 추론이 어느 정도 입증됨.
- 물론 산재 미신청이 사업장으로부터 전혀 보상을 받지 못한 경우를 뜻하는 것은 아님. 산재 미신청자 가운데는 ‘공상 처리’를 통해 적절한 보상을 받은 경우도 포

함됨. 이번 조사 결과의 중요한 시사점은 어떤 이유에서든 공식적인 산재 보상 보험 제도를 이용하지 않는(혹은 못하는) 산재 피해 외국인 노동자가 알려진 것보다는 훨씬 대규모라는 점임.

(2) 산재보험 신청 관련 배경 변수별 분석

- 산재보험 신청여부가 배경 변인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드러내는지 살펴보기 위하여 교차 분석을 실시함.
 - 연령 집단 별로는 특별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음. 다만 30대 노동자 집단이 20대나 40대 이상 집단에 비해 산재 신청을 하지 않은 경향이 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남.(표Ⅲ-22)

<표Ⅲ-22> 연령별 산재보험 신청 여부

	20대 이하	30대	40대 이상	전체
예	34(47.9)	36(41.4)	19(47.5)	89(44.9)
아니오	37(52.1)	51(58.6)	21(52.5)	109(55.1)
전체	71(100)	87(100)	40(100)	198(100)

무응답자 제외

- 거주기간에 따른 산재 신청 비율 차이를 분석함. 거주기간이 5년 이상인 집단과 1년 이상 3년 미만인 집단의 산재신청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남. 1년 미만인 집단의 산재신청율이 가장 낮았음.
 - 한국 거주기간이 오래 되면 정보가 많아지고 그 결과 산재를 신청하는 경우가 많을 것이라는 가설이 어느 정도 입증됨.(표Ⅲ-23)

<표Ⅲ-23> 한국 거주기간별 산재보험 신청여부

	1년 미만	1년 이상 3년 미만	3년 이상 5년 미만	5년 이상	전체
예	8(28.6)	27(52.9)	17(34.0)	38(55.1)	90(45.5)
아니오	20(71.4)	24(47.1)	33(66.0)	31(44.9)	108(54.5)
전체	28(100)	51(100)	50(100)	69(100)	198(100)

무응답자 제외

○ 한국어 능력 수준에 따른 산재보험 신청률 차이에 대한 분석 역시 일반적인 가설을 확인시켜 줌.

- 한국어를 거의 못하는 집단의 산재보험 신청률이 가장 낮았고, 거의 모든 내용을 이해하는 수준의 노동자의 경우 산재보험을 신청했다고 응답한 비율이 거의 61%로 못하는 집단에 비해 무려 두 배 정도 높게 나타남.(표Ⅲ-24)

<표Ⅲ-24> 한국어 능력 수준별 산재보험 신청여부

	거의 못함	업무에 필요한 최소한의 대화만 가능	일상생활이나 업무에 필요한 대화가 어느 정도 가능	거의 모든 내용 이해	전체
예	10(30.3)	38(48.1)	26(44.1)	14(60.9)	88(45.4)
아니오	23(69.7)	41(51.9)	33(55.9)	9(39.1)	106(54.6)
전체	33(100)	79(100)	59(100)	23(100)	194(100)

무응답자 제외

○ 산재 발생 시 작업하던 사업장의 규모에 따른 산재보험 신청률 차이를 분석한 결과 30인에서 49인 정도 규모의 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의 산재 신청 비율이 68.2%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사업장 규모가 5인 미만인 집단과 50인 이상인 집단의 경우 산재보험 신청률은 30%대로 낮았고, 5인에서 29인 사이의 경우는 40%대로 확인됨.
- 그러나 전반적으로 응답자 수가 적고 집단별로도 응답자 수에서 차이가 크게 나타나 사업장의 직원 규모에 따른 산재 신청률의 차이를 단정 짓기는 어려움.(표Ⅲ-25)

<표Ⅲ-25> 산재발생 사업장 규모별 산재보험 신청여부

	5인 미만	5인~9인	10인~29인	30인~49인	50인 이상	전체
예	15(34.9)	23(45.1)	26(45.6)	15(68.2)	9(39.1)	88(44.9)
아니오	28(65.1)	28(54.9)	31(54.4)	7(31.8)	14(60.9)	108(55.1)
전체	43(100)	51(100)	57(100)	22(100)	23(100)	196(100)

무응답자 제외

- 5인 미만 사업장과 50인 이상 사업장의 산재 신청율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남. 산재 처리시 사업장에 대한 불이익이 심할 것이라는 사업주의 과도한 불안감이 작용하고 있는 현실이 반영된 것으로 보임.
- 중대재해(6개월 이상 치료)는 물론이고 단순재해라도 1년에 2회 이상 발생할 경우 고용노동부로부터 사업장 감독이 이루어짐. 그리고 산재 피해 당사자가 미등록 체류자이거나 취업체류자격 외 체류자일 경우 출입국에 통보되어 벌금이 발생함.

○ 산재 발생시 노동자의 근속 기간의 차이에 따른 산재신청율의 차이를 분석함.

- 근속 기간이 6개월 미만이거나 3년 이상인 경우 산재보험 신청비율이 낮은 경향이 있었고 6개월 이상 3년 미만인 집단의 산재보험 신청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집단 내 응답자 수가 적고 집단별로 응답자 수가 상이하하여 근속 기간에 따른 산재신청율 차이를 확정하기는 어려움.(표Ⅲ-26)

<표Ⅲ-26> 산재발생시 재직기간별 산재보험 신청여부

	6개월 미만	6개월 ~1년 미만	1년 이상 ~3년 미만	3년 이상	전체
예	23(39.0)	15(50.0)	36(52.2)	14(40.0)	88(45.6)
아니오	36(61.0)	15(50.0)	33(47.8)	21(60.0)	105(54.4)
전체	59(100)	30(100)	69(100)	35(100)	193(100)

무응답자 제외

○ 비자 유형을 비전문취업, 방문취업 및 기타비자 그리고 미등록 체류자 등으로 크게 분류하여 비자 유형의 차이에 따른 산재보험 신청여부 차이를 분석함.

- 비전문취업비자인 E-9을 가지고 있었던 경우와 그 밖에 E-7, F-2, F-4, F-5, F-6, G-1 등의 비자를 가지고 있었던 경우 산재보험 신청 비율이 높았고, 반면에 방문취업비자인 H-2비자와 미등록 체류자의 경우 산재보험 신청 비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남.(표Ⅲ-27)

<표Ⅲ-27> 비자유형별 산재보험 신청여부

	E-9 (비전문취업)	H-2 (방문취업)	기타비자	미등록	전체
예	55(49.5)	6(27.3)	19(47.5)	10(37.0)	90(45.0)
아니오	56(50.5)	16(72.7)	21(52.5)	17(63.0)	110(55.0)
전체	111(100)	22(100)	40(100)	27(100)	200(100)

무응답자 제외

- 방문취업비자 소지자의 낮은 산재 신청율은 동포 노동자들 대부분이 건설현장에 취업하고 있다는 현실과 관련될 수 있음. 산재 이력시 감점을 받게 되는 PQ점수(입찰심사기준)와 관련해서 산재 신청을 꺼려하는 건설업계의 분위기가 어느 정도 반영된 결과로 추론됨.(이창원 외 2015)

5. 산재보험 이용 시 어려운 점

1) 산재보험 이용 시 도와준 사람

○ 산재 발생 시 산재보험 신청을 했다고 응답한 노동자를 대상으로 산재보험처리를 도와 준 기관이나 사람이 누구인지에 대해 질문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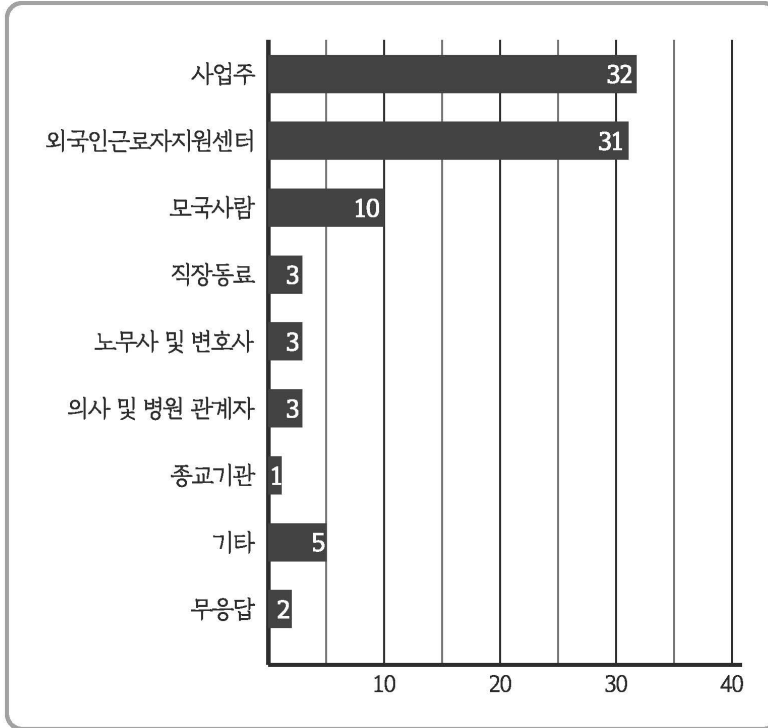
- 외국인 노동자가 산재를 당했을 때 산재보험처리를 도와준 대상은 주로 사업주와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인 것으로 확인됨.

- 사업주가 도와주었다는 응답이 32명으로 전체의 35.6%였고,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가 도와주었다는 응답이 31명으로 34.4%였으며, 모국사람이 도와주었다고 응답한 사람이 10명, 11.1%이었고, 그 외 직장동료, 노무사 및 변호사, 의사 및 병원 관계자, 종교기관 등의 순이었음.(표Ⅲ-28), (그림Ⅲ-15)

<표Ⅲ-28> 산재보험 이용시 조력자

조력자	빈도(%)
사업주	32(35.6)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31(34.4)
모국사람	10(11.1)
직장동료	3(3.3)
노무사 및 변호사	3(3.3)
의사 및 병원 관계자	3(3.3)
종교기관	1(1.1)
기타	5(5.6)
무응답	2(2.2)
합계	90(100)

<그림Ⅲ-15> 산재보험 이용시 조력자



- 산재보험은 기본적으로 산재 피해 노동자 자신이 신청해야 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산재 신청시 ‘사업주’나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의 조력이 압도적이며 ‘모국 사람’이나 ‘직장 동료’의 조력 비율이 매우 낮게 나타난 이번 조사 결과는 한국의 산재 보상 제도가 당사자 친화성과 접근성이 매우 떨어지는 제도라는 점을 보여줌.

2) 산재보험 이용 시 어려운 점

- 산재를 당한 외국인 노동자가 산재보험 처리에 있어 어떤 어려움을 겪는지 살펴보기 위하여 총 13개 문항을 제시함. 원래 설문은 4점 척도로 구성되었으나 조사 결과의 가독성을 높이기 위하여 응답지를 ‘그렇다’와 ‘그렇지 않다’ 두 개의 범주로 재구성함.
 - ‘산재보험 신청방법을 잘 몰라서 어려움을 겪었다’는 문항의 경우 65.5%가 그렇다고 응답을 하여 대부분의 산재 피해 외국인 노동자가 산재보험 신청방법 자체를 잘 모르고 있다는 점이 확인됨.

- ‘산재 치료 및 보상 과정에서 설명을 듣기는 했으나 통역이 없어서 제대로 이해할 수 없었다’라고 응답한 경우도 무려 56.6%에 달함.
- ‘산재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사고나 질병을 입증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는 응답은 54.4%에 달함.
- ‘산재 진행 절차 등에 관해 설명해주는 사람이 없어 불안했다’라고 응답한 경우는 52.2%였음.
- ‘산재 신청 및 보상 과정에서 사업주의 비협조로 어려움을 겪었다’는 응답도 42.2%에 이름.
- ‘산재승인이 빨리 되지 않아 병원비 납부 등으로 생활고’를 겪는 경우도 42.2%였음.
- 산재 승인 이후 치료 및 요양 과정에서도 산재 피해 외국인 노동자 다수가 적지 않은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산재 치료 및 보상과정에서 이의가 있었으나 관련 정보를 알 수 없어서 어려움을 겪었다’ 라는 응답이 52.2%로 높았고, ‘산재치료 및 요양기간이 짧아서 어려움을 겪었다’라는 문항에서도 44.4%의 응답자가 ‘그렇다’를 선택함.
- ‘사업주가 임금을 적게 신고하여 모든 보상을 적게 받았다’라고 응답한 경우도 43.3%에 달함. ‘별것도 아닌 일에 산재를 신청해서 법적인 불이익(과태료, 벌금)을 받았다’며 사업주로부터 비난을 당한 경우도 23.4%에 달함.
- ‘병원치료 시 자부담 비용이 많아서 어려움을 겪었다’라는 응답은 34.4%로 결코 적지 않은 비율이었음. 산재보험 처리와 관련하여 ‘대행수수료를 너무 많이 내서 부담되었다’는 응답도 23.3%였음. ‘근로복지공단 종사자가 치료가 끝나지 않았는데도 치료 종결을 요구’하는 경우도 13.3%로 나타남.(표Ⅲ-29)

<표Ⅲ-29> 산재보험 이용의 어려움

산재보험 이용의 어려움	그렇지 않다	그렇다	무응답	합계
산재보험 신청방법을 잘 몰라 어려움을 겪었다	28(31.1)	59(65.6)	3(3.3)	90(100)
사고나 질병 입증에 어려움을 겪었다	38(42.2)	49(54.4)	3(3.3)	90(100)
산재승인이 빨리 되지 않아 병원비 납부 등으로 생활고를 겪었다	49(54.4)	38(42.2)	3(3.3)	90(100)
산재신청 및 보상과정에서 사업주가 협조하지 않아 어려움을 겪었다	49(54.5)	38(42.2)	3(3.3)	90(100)
병원 치료 시 자부담 비용이 많아서 어려움을 겪었다	56(62.2)	31(34.4)	3(3.3)	90(100)
산재 치료 및 요양기간이 짧아서 어려움을 겪었다	46(51.1)	40(44.4)	4(4.4)	90(100)
산재 진행 절차 등에 관해 설명해주는 사람이 없어 불안하였다	40(44.4)	47(52.2)	3(3.3)	90(100)
사업주가 임금을 적게 신고하여 모든 보상을 적게 받았다	48(53.4)	39(43.3)	3(3.3)	90(100)
산재 치료 및 보상과정에서 이의가 있었으나 관련 정보를 알 수 없어서 어려움을 겪었다	40(44.5)	47(52.2)	3(3.3)	90(100)
산재 치료 및 보상과정에서 설명을 듣기는 했으나 통역이 없어서 제대로 이해할 수 없었다	36(40.0)	51(56.6)	3(3.3)	90(100)
사업주는 별것도 아닌 일에 산재 신청해서 본인이 법적인 불이익(과태료, 벌금)을 받았다고 비난했다	64(71.1)	21(23.4)	5(5.6)	90(100)
산재보험 처리와 관련하여 대행수수료를 너무 많이 내서 부담되었다	64(71.2)	21(23.3)	5(5.6)	90(100)
근로복지공단 종사자가 치료가 끝나지 않았는데 종결할 것을 요구했다	72(80.0)	12(13.4)	6(6.7)	90(100)

- 공식적인 ‘대행수수료’는 노무사나 변호사 등에 일을 맡겼을 경우에만 발생함. 이번 조사에서 노무사나 변호사의 조력을 받은 경우는 3명이었는데 그에 비해 ‘산재보험 이용의 어려움’ 관련 문항에서의 대행수수료 응답율은 너무 높게 나타남. 노무사나 변호사 이외에 어떤 조력자들에게 ‘수수료(혹은 사례)’를 지불하는 관행이 존재하는지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해 보임.

3) 산재보험 이용 시 어려운 점 관련 요인 분석

- 산재보험 이용시 어려움을 몇 가지 범주로 특정하기 위하여 요인분석을 실시함.
 - 분석 결과 산재보험 이용의 어려움 관련 세 가지 요인이 추출됨. 세 요인은 첫째 정보부족, 둘째 사업주의 비협조, 셋째 보험처리과정의 어려움으로 구분됨.
 - 세 가지 요인의 신뢰도는 0.73에서 0.88로 높은 수준이었음. 세 요인 중 평균값이 가장 높은 요인은 정보 부족 요인이었고, 그 다음은 사업주의 비협조 요인과 보험 처리과정의 어려움 요인 순이었음.
 - ‘정보부족’ 요인의 경우 요인 내 문항별 경험정도를 살펴보면, ‘산재보험 신청방법을 잘 몰라 어려움을 겪었다’는 응답의 평균이 4점 만점에 2.82로 가장 높았고, 다음이 ‘산재 치료 및 보상과정에서 설명을 듣기는 했으나 통역이 없어서 제대로 이해할 수 없었다’는 문항으로 평균이 4점 만점에 2.68점이었음. 그 다음이 ‘산재진행절차 등에 관해 설명해 주는 사람이 없어 불안하였다’는 응답의 평균이 2.60이었으며, ‘산재 치료 및 보상과정에서 이의가 있었으나 관련 정보를 알 수 없어서 어려움을 겪었다’는 응답의 평균이 2.57이었음.
 - ‘사업주의 비협조’ 요인의 경우 요인 내 문항별 평균값을 순서대로 살펴보면 ‘산재 신청 및 보상과정에서 사업주가 협조하지 않아서 어려움을 겪었다’는 응답의 평균값이 2.44로 가장 높았고, 두 번째가 ‘사업주가 임금을 적게 신고하여 모든 보상을 적게 받았다’는 응답의 평균값이 2.40이었으며, 마지막으로 ‘사업주는 별것도 아닌 일에 산재를 신청해서 본인이 법적인 불이익을 받았다고 비난했다’는 응답의 평균값이 2.04였음.
 - ‘보험처리과정의 어려움’ 요인의 경우, 요인 내에서 가장 높은 평균값을 보인 문항은 ‘사고나 질병 입증에 어려움을 겪었다’는 문항이었고(평균 2.58), 다음이 ‘산재 치료 및 요양기간이 짧아서 어려움을 겪었다(평균 2.47)’, ‘산재승인이 빨리 되지 않아 병원비 납부 등으로 생활고를 겪었다(평균 2.32)’, ‘병원치료시 자부담 비용이 많아서 어려움을 겪었다(평균 2.19)’, ‘산재보험 처리와 관련하여 대행 수수료를 너무 많이 내서 부담되었다(평균 2.06)’, ‘근로복지공단 종사자가 치료가 끝나지 않았는데 종결할 것을 요구했다(평균 1.90)’의 순이었음.(표Ⅲ-30)

<표Ⅲ-30> 산재보험 이용 어려움의 요인별 평균 및 표준편차

요인	문항	문항별 평균 (표준편차)	요인별 평균 (표준편차)
정보부족 ($\alpha=.88$)	산재보험 신청방법을 잘 몰라 어려움을 겪었다	2.82(1.00)	2.66(0.84)
	산재 치료 및 보상과정에서 설명을 듣기는 했으나 통역이 없어서 제대로 이해할 수 없었다	2.68(0.98)	
	산재 진행 절차 등에 관해 설명해 주는 사람이 없어 불안하였다	2.60(0.95)	
사업주의 비협조 ($\alpha=.73$)	산재 치료 및 보상과정에서 이의가 있었으나 관련 정보를 알 수 없어서 어려움을 겪었다	2.57(1.02)	2.32(0.76)
	산재신청 및 보상과정에서 사업주가 협조하지 않아 어려움을 겪었다	2.44(1.01)	
	사업주가 임금을 적게 신고하여 모든 보상을 적게 받았다	2.40(0.94)	
	사업주는 별것도 아닌 일에 산재 신청해서 본인이 법적인 불이익(과태료, 벌금)을 받았다고 비난했다	2.04(0.88)	
처리 과정의 어려움 ($\alpha=.81$)	사고나 질병 입증에 어려움을 겪었다	2.58(1.01)	2.28(0.68)
	산재 치료 및 요양기간이 짧아서 어려움을 겪었다	2.47(1.03)	
	산재승인이 빨리 되지 않아 병원비 납부 등으로 생활고를 겪었다	2.32(0.98)	
	병원 치료 시 자부담 비용이 많아서 어려움을 겪었다	2.19(0.93)	
	산재보험 처리와 관련하여 대행수수료를 너무 많이 내서 부담되었다	2.09(0.90)	
	근로복지공단 종사자가 치료가 끝나지 않았는데 종결할 것을 요구했다	1.90(0.84)	

- 산재보험 이용의 어려움과 관련한 요인 분석 결과를 수용하는 경우 산재 보험 이용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정보부족, 사업주의 비협조, 보험처리과정의 어려움’ 세 가지 요소에 대한 개선 방안 마련이 공통적으로 필요하되 우선순위는 외국인 노동자 대상의 산재보험에 대한 충분한 정보제공과 홍보, 사업주 상대의 교육, 보험처리 과정의 이용자 친화성 강화 등으로 설정할 수 있을 것임.

4) 산재보험 이용시 어려운 점에 대한 배경 변인별 분산 분석: 연령, 거주기간, 한국어 능력, 사업장 규모, 재직기간, 비자유형

- 연령, 거주기간, 한국어 능력, 사업장 규모, 산재 발생시 근속 기간, 비자 유형 등 배경 변인에 따른 산재보험 이용시 어려움의 차이를 확인하기 위해 각각의 변수와 산재보험 이용시 어려움 관련 추출된 세 가지 요인 간의 분산 분석을 실시함.
 - 사업장 규모와 비자 유형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확인됨. 연령과 거주기간에 있어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은 아니나 경향성의 차이가 나타남. 한국어 능력과 산재 발생시 근속기간 관련해서는 어떠한 차이도 발견되지 않았음.
- 산재발생 사업장의 직원 규모에 따라 산재보험 이용의 어려움 수준이 달라지는 지 분석함. 분석 결과 사업장 규모에 따라 전반적으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정보부족 요인의 경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은 아니었으나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어려움을 가장 크게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남.
 - 사업주의 비협조 요인과 보험 처리과정의 어려움 요인의 경우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에서 차이를 나타냄. 사업주의 비협조 때문에 산재보험 이용이 어려웠다는 응답은 5인 미만인 사업장에 재직했던 노동자들이 가장 크게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30인에서 49인 정도의 규모에서 재직했던 노동자들의 평균값이 가장 낮았음.
 - 이에 비해 산재보험 처리 과정의 어려움을 가장 많이 호소한 집단은 5인 미만인 집단과 50인 이상인 집단이었음.(표Ⅲ-31)

<표Ⅲ-31> 산재발생시 사업장 규모별 산재보험 이용의 어려움

	5인 미만	5인~9인	10인~29인	30인~49인	50인 이상	F
정보부족	3.13(0.64)a	2.82(0.78)ab	2.43(0.81)b	2.47(0.94)b	2.65(0.84)ab	2.33
사업주의 비협조	2.67(0.76)a	2.51(0.76)a	2.14(0.79)ab	1.93(0.60)b	2.41(0.46)ab	2.80*
처리과정의 어려움	2.57(0.58)a	2.44(0.74)ab	2.08(0.63)b	1.88(0.54)b	2.59(0.55)a	3.66**

* p<. 05, ** p<.01, Duncan: a>b

- 5인 미만에서 정보부족, 사업주의 비협조로 인한 어려움 호소, 30인~40인 규모에서 평균값이 낮음. 오히려 50인 이상에서 산재보험 처리과정의 어려움이 높게 나타남.

○ 비자 종류에 따른 산재보험 이용시 경험하는 어려움에 차이가 있는지 분석해 봄. 분석 결과 정보부족 요인의 경우 집단간 차이가 확인됨.

- 정보부족 요인의 경우 미등록 집단이 정보부족으로 어려움을 겪었다는 응답의 평균이 가장 높았고 다음이 E-9(비전문취업)집단이었음. 네 집단 중 정보부족에 대한 어려움을 가장 낮게 지각한 집단은 H-2(방문취업)비자를 지닌 집단이었음.(표Ⅲ-32)

<표Ⅲ-32> 산재발생시 비자(Visa)유형별 산재보험 이용의 어려움

	E-9 (비전문취업)	H-2 (방문취업)	기타비자	미등록	F
정보부족	2.81(0.70)a	2.08(1.21)b	2.37(0.86)ab	2.88(0.98)a	2.77*
사업주의 비협조	2.38(0.70)	1.61(1.00)	2.33(0.85)	2.50(0.77)	2.13
처리과정의 어려움	2.34(0.55)	1.67(0.94)	2.40(0.79)	2.27(0.86)	1.99

* p<. 05, Duncan: a>b

- 미등록 체류자의 경우 경험적으로 산재신청 시 공무원의 ‘통보의무’에 따라 출입국관리소에 신분외출이 고지되고 그에 따라 강제 퇴거 등의 불이익이 따를 것에 대한 부담과 불안감으로 산재 신청을 기피하는 것으로 추론됨.

○ 연령대별로 산재보험 이용의 어려움이 요인별로 어떻게 다른지 비교 분석해 본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음.

- 그러나 평균값의 경향성으로 보았을 때 30대의 경우 정보부족 때문에 산재보험을 이용하는 것이 어려웠다고 인식하는 경향이 높았고, 다음이 20대였음.
- 사업주의 비협조 때문에 산재보험 이용이 어려웠다는 응답에 대해서는 20대 이하의 집단의 평균값이 가장 높았고, 연령이 증가할수록 평균값이 낮아져서 연령이 어린 경우 사업주의 비협조 요인을 많이 경험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추론됨.
- 산재보험 처리과정의 어려움도 역시 20대 이하의 어린 연령층에서 좀 더 많이 경험하는 경향성이 확인됨.(표Ⅲ-33)

<표Ⅲ-33> 연령대별 산재보험 이용의 어려움

	20대 이하	30대	40대 이상	F
정보부족	2.69(0.75)	2.81(0.87)	2.33(0.91)	2.25
사업주의 비협조	2.51(0.77)	2.23(0.73)	2.11(0.76)	2.18
처리과정의 어려움	2.43(0.64)	2.22(0.59)	2.13(0.87)	1.37

- 한국 거주기간에 따라 산재보험 이용에 어려움 수준이 다른지 분석함. 분석 결과 세 요인 모두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음.
- 그러나 정보부족의 어려움을 호소한 집단의 경우 1년 미만의 집단이 가장 많은 어려움을 호소하였고, 사업주의 비협조 역시 1년 미만 거주자가 많이 호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었음.(표Ⅲ-34)

<표Ⅲ-34> 한국 거주기간별 산재보험 이용의 어려움

	1년 미만	1년 이상 3년 미만	3년 이상 5년 미만	5년 이상	F
정보부족	3.00(0.60)	2.70(0.86)	3.02(0.57)	2.46(0.88)	2.41
사업주의 비협조	2.70(0.74)	2.35(0.75)	2.38(0.64)	2.20(0.79)	1.18
처리과정의 어려움	2.32(0.41)	2.28(0.65)	2.42(0.62)	2.25(0.78)	0.22

- 한국어 능력에 따른 산재보험 이용시 경험한 어려움 수준의 차이가 존재하는 지 분석함. 분석결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확인되지 않았음.(표Ⅲ-35)

<표Ⅲ-35> 한국어 능력별 산재보험 이용의 어려움

	거의 못함	업무에 필요한 최소한의 대화만 가능	일상생활이나 업무에 필요한 대화가 어느 정도 가능	거의 모든 내용 이해	F
정보부족	3.00(1.05)	2.68(0.82)	2.48(0.75)	2.58(0.86)	0.98
사업주의 비협조	2.22(0.88)	2.37(0.72)	2.23(0.71)	2.23(0.77)	0.26
처리과정의 어려움	2.15(0.52)	2.36(0.66)	2.19(0.68)	2.14(0.74)	0.63

- 산재 발생시 근속 기간에 따라 산재보험 이용시 경험하는 어려움에 차이가 있는지 살펴본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는 확인되지 않았음.(표Ⅲ-36)

<표Ⅲ-36> 산재 발생시 재직기간별 산재보험 이용의 어려움

	6개월 미만	6개월 ~1년 미만	1년 이상 ~3년 미만	3년 이상	F
정보부족	2.87(0.90)	2.70(0.64)	2.60(0.86)	2.56(0.85)	0.64
사업주의 비협조	2.27(0.87)	2.73(0.49)	2.29(0.83)	2.09(0.44)	2.17
처리과정의 어려움	2.33(0.79)	2.61(0.29)	2.22(0.72)	2.08(0.56)	1.80

6. 산재보험을 신청하지 않은 이유

1) 사업주가 산재 처리에 협조하지 않은 경우

- 업무 중 사고로 다쳤거나 병이 났을 때 사업주(관리자)가 산재보험으로 처리하지 않았다고 응답한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사업주가 산재 처리에 협조하지 않거나 거부한 이유에 대해 질문함.
 - 중복 응답을 계산한 결과 가장 많이 선택된 응답은 ‘아무런 설명 없이 그냥 하지 말라고 했다’로 18.6%였음. ‘부상이나 질병 정도가 약해서 공상으로 처리하자고 했다’라는 응답도 18.2%로 아무런 설명 없이 산재 처리를 하지 않은 경우와 거의 비슷한 비율을 보임.
 - 그 다음 선택지는 ‘사업주가 충분한 치료와 보상을 해준다고 했다’(12.3%), ‘불법 체류자/불법고용자라서 산재가 안 된다고 했다’(9.3%), ‘회사에서 아직 산재로 처리한 적이 없다고 했다’(6.8%), ‘외국인이어서 안 된다고 했다’(5.5%), ‘노동법상 사업장에 문제가 생긴다고 했다’(5.1%), ‘산재로 인정받기 어려우니 하지 말라고 했다’(4.7%), ‘산재적용 사업장이 아니라고 했다’(4.2%), ‘개인적인 사고라 산재가 안 된다고 했다’(4.2%), ‘산재보험을 신청하지 않으면 사업장 이동을 시켜준다고 했다’(2.5%), ‘산재보험을 신청하면 해고한다고 했다’(2.1%)의 순이었음.(표Ⅲ-37)

<표Ⅲ-37> 사업주의 산재보험미처리 이유(중복응답)

내용	빈도(%)
아무런 설명 없이 그냥 하지 말라고 했다	44(18.6)
부상이나 질병 정도가 약해서 공상으로 처리하자고 했다	43(18.2)
사업주가 충분한 치료와 보상을 해준다고 했다	29(12.3)
불법체류자/불법고용자라서 산재가 안 된다고 했다	22(9.3)
회사에서 아직 산재로 처리한 적이 없다고 했다	16(6.8)
외국인이라서 안 된다고 했다	13(5.5)
노동법상 사업장에 문제(감사, 벌금, 외국인 쿼터 제한)가 생긴다고 했다	12(5.1)
산재로 인정받기 어려우니 하지 말라고 했다	11(4.7)
산재적용사업장이 아니라고 했다	10(4.2)
개인적인 사고(실수, 동료폭행)라 산재가 안 된다고 했다	10(4.2)
산재보험을 신청하지 않으면 사업장 이동을 시켜준다고 했다	6(2.5)
산재보험을 신청하면 해고한다고 했다	5(2.1)
기타	15(6.4)
합계	236(100.0)

- 아무 이유 없이 산재 처리를 불허했다는 것은 경험적으로 ‘외국인을 무시하는 처사’일 개연성이 매우 높다는 점을 고려하면 사업주가 산재 처리에 비협조적이거나 산재 처리를 거부한 가장 압도적인 사유는 이유 없음(18.6%)과 외국인이라는 이유(5.5%)를 합하여 외국인 무시(24.1%)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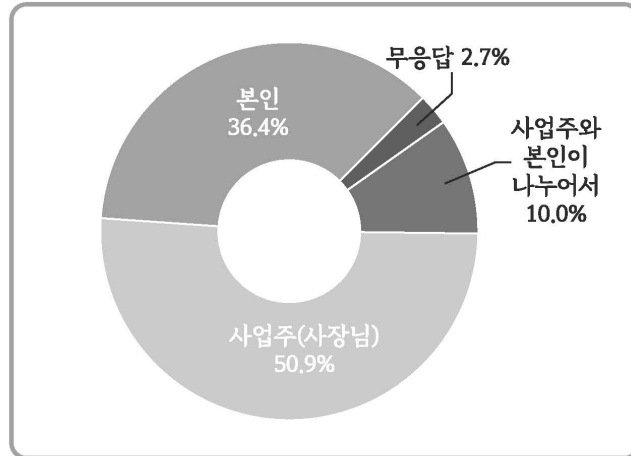
- 외국인에 대한 무시와 더불어 사업주가 산재 처리에 비협조적이었던 또 다른 주요한 이유로는 ‘공상처리’와 ‘체류상의 불안전성’을 들 수 있음. 공상처리와 사업주의 개인적인 보상을 더하면 30.5%에 달함. 불법체류 및 불법고용, 산재보험 미신청을 전제로 하는 사업장 이동 제안, 산재보험 신청시 해고 위협 등 외국인 노동자의 신분상 약점을 이용하여 산재 보험 신청에 비협조적인 비율은 13.9%로 정도로 나타남.

○ 사고나 질병 발생 시 치료비를 부담한 사람은 사업주(사장님)인 경우가 50.9%로 가장 많았으나 본인이 부담한 경우도 36.4%나 되었으며, 사업주와 본인이 나누어서 낸 경우는 10.0%였음.(표Ⅲ-38), (그림Ⅲ-16)

<표Ⅲ-38> 산재치료비를 부담한 사람

	본인	사업주 (사장님)	사업주와 본인이 나누어서	무응답	합계
빈도(%)	40(36.4)	56(50.9)	11(10.0)	3(2.7)	110(100)

<그림Ⅲ-16> 산재치료비를 부담한 사람



2) 산재보험 처리를 하지 않은 경우 치료 과정의 어려움

- 산재보험 처리를 하지 않은 경우 경험하게 되는 치료 과정에서 어려움을 파악해보기 위해 9개 문항을 제시함. 이들 문항에 대한 응답은 원래 4점 척도였으나 조사 결과의 가독성과 이해도를 제고시키기 위하여 ‘그렇지 않다’와 ‘그렇다’라는 두 가지 범주로 응답지를 재구성함.
 - ‘사업주가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병원이 아닌 동네 작은 병원이나 자신이 아는 병원으로 갔다’는 경우 ‘그렇다’라는 응답이 44.5%로 응답자의 거의 절반이 이런 상황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남.
 - ‘치료중에 월급을 주지 않거나 조금만 준 경우(40.0%)와 ‘치료중임에도 사업장에서 일하라’고 강요받은 경우(39.1%)도 꽤 높은 비율을 보임. ‘사업주가 치료시 충분한 노력(병원비 지원이나 동행)을 해주지 않았다’고 응답한 경우도 34.5%에 달함.

○ 일부 사업주는 충분한 조력을 제공하지 않는 것을 넘어서서 산재 피해 외국인 노동자를 협박하고 비난하는 행태를 보인 것으로 나타남.

- ‘병원 입원 및 진료시에 의사에게 거짓말(개인적인 이유로 인한 상해)을 하라고 했다’는 경우 27.3%의 응답자가 ‘그렇다’를 선택함. ‘재해자 때문에 자신이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했다며 사업주로부터 면박을’ 받은 경우도 23.7%였으며, 심지어 ‘충분히 치료받지 않았는데 사업주로부터 퇴원 및 치료중단을 종용’ 당한 경우(20.0%), ‘사업장에 안 좋은 영향을 끼친다며 기숙사로부터 퇴출을 강요받은 경우’(10.9%)도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남.

○ 산재보험제도를 이용하지 못한 외국인 노동자 가운데 약 1/3가량은 ‘적절한 치료(의료기관, 기간)를 받지 못하여 장애가 생기거나 장애가 심해졌다고 생각’(30.0%)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표Ⅲ-39)

<표Ⅲ-39> 산재보험 미처리시 치료과정의 어려움

산재보험 이용의 어려움	그렇지 않다	그렇다	무응답	합계
사업주는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병원으로 데리고 가지 않았다.(동네 작은 병원, 아는 병원으로 갔다)	58(52.7)	49(44.5)	3(2.7)	110(100)
병원 입원 및 진료시에 의사에게 거짓말(개인적인 이유로 인한 상해)을 하라고 했다	77(70.0)	30(27.3)	3(2.7)	110(100)
사업주는 충분히 치료받지 않았는데 퇴원 및 치료중단을 종용했다	86(78.1)	22(20.0)	2(1.8)	110(100)
사업주는 치료 시 충분한 조력(병원비 동행)을 해주지 않았다	69(62.8)	38(34.5)	3(2.7)	110(100)
사업주는 치료중임에도 사업장에서 일하라고 했다	62(56.4)	43(39.1)	5(4.5)	110(100)
사업주는 치료중에 월급을 주지 않거나 조금만 주었다	63(57.2)	44(40.0)	3(2.7)	110(100)
사업주는 재해자 때문에 자신이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했다며 면박을 주었다	81(73.6)	26(23.7)	3(2.7)	110(100)
사업주는 재해자가 사업장에 안 좋은 영향을 끼친다며 기숙사에서 나가라고 했다	95(86.3)	12(10.9)	3(2.7)	110(100)
적절한 치료(의료기관, 기간)를 받지 못하여 장애가 생기거나 장애가 심해졌다고 생각한다	74(67.3)	33(30.0)	3(2.7)	110(100)

- 위 빈도에 나타난 응답 경향을 좀 더 쉽게 이해하기 위하여 평균값을 산출한 후 문항간 비교를 시도함.
 - 가장 높은 평균값을 보인 문항은 ‘사업주는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병원으로 데리고 가지 않았다’는 응답이었음.
 - 그 다음 평균값은 ‘사업주는 치료중에 월급을 주지 않거나 조금만 주었다’, ‘사업주는 치료중임에도 사업장에서 일하라고 했다’, ‘사업주는 치료 시 충분한 노력을 해주지 않았다’,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여 장애가 생기거나 장애가 심해졌다고 생각한다’, ‘병원 입원 및 진료시에 의사에게 거짓말을 하라고 했다’의 순이었음.
 - 이상은 모두 4점 만점에 평균값이 2점 이상인 문항들로 이런 상황이 비교적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는 추론이 가능함.
 - 이에 반해 ‘사업주는 재해자 때문에 자신이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했다며 면박을 주었다’, ‘사업주는 충분히 치료받지 않았는데 퇴원 및 치료중단을 종용했다’, ‘사업주는 재해자가 사업장에 안 좋은 영향을 끼친다며 기숙사에서 나가라고 했다’ 등의 문항은 평균값이 2점 이하로 나타나 상대적으로 빈번하게 나타나는 현상은 아닌 것으로 보임.(표Ⅲ-40)

<표Ⅲ-40> 산재보험 미처리시 치료과정상 어려움의 평균 및 표준편차

문항	평균(표준편차)
사업주는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병원으로 데리고 가지 않았다 (동네 작은 병원, 아는 병원으로 갔다)	2.38(1.08)
사업주는 치료중에 월급을 주지 않거나 조금만 주었다	2.30(1.04)
사업주는 치료중임에도 사업장에서 일하라고 했다	2.28(1.08)
사업주는 치료 시 충분한 노력(병원비 동행)을 해주지 않았다	2.22(1.02)
적절한 치료(의료기관, 기간)를 받지 못하여 장애가 생기거나 장애가 심해졌다고 생각한다	2.13(1.01)
병원 입원 및 진료시에 의사에게 거짓말(개인적인 이유로 인한 상해)을 하라고 했다	2.09(0.95)
사업주는 재해자 때문에 자신이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했다며 면박을 주었다	1.99(0.91)
사업주는 충분히 치료받지 않았는데 퇴원 및 치료중단을 종용했다	1.93(0.87)
사업주는 재해자가 사업장에 안 좋은 영향을 끼친다며 기숙사에서 나가라고 했다	1.72(0.74)
전체	2.14(0.74)

3) 산재보험 미처리시 어려움 관련 배경 변인별 분산 분석: 연령, 거주기간, 한국어 능력, 사업장 규모, 재직기간, 체류자격

- 산재보험제도를 이용하지 못한 외국인 노동자가 경험하는 치료과정의 어려움이 배경변인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드러내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분산 분석을 시행함.
- 체류 자격을 제외하고 연령, 한국에서의 거주기간, 한국어 능력, 산재 당시 사업장 규모 및 근속 기간의 차이에 따른 산재보험 미처리 노동자의 어려움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에서는 나타나지 않았음.
- 산재보험제도를 이용하지 않은 외국인 노동자의 체류자격에 따른 치료과정에서 느낀 어려움 정도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다른 집단에 비해 H-2(방문취업)비자를 지닌 집단이 다른 집단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에서 치료과정의 어려움을 덜 느끼는 것으로 확인됨.(표Ⅲ-41)

<표Ⅲ-41> 산재발생시 비자(Visa)유형에 따른 치료과정상 어려움 정도

	E-9 (비전문취업)	H-2 (방문취업)	기타비자	미등록	F
평균(표준편차)	2.25(0.73)a	1.62(0.66)b	2.29(0.61)a	2.15(0.74)a	3.20*

* p<.05, Duncan: a>b

- 동포 노동자가 일반 외국인 노동자에 비해 산재 치료과정에서 어려움을 덜 느끼는 것은 언어소통 및 정보수준이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일 것으로 추론됨.

4) 산재 보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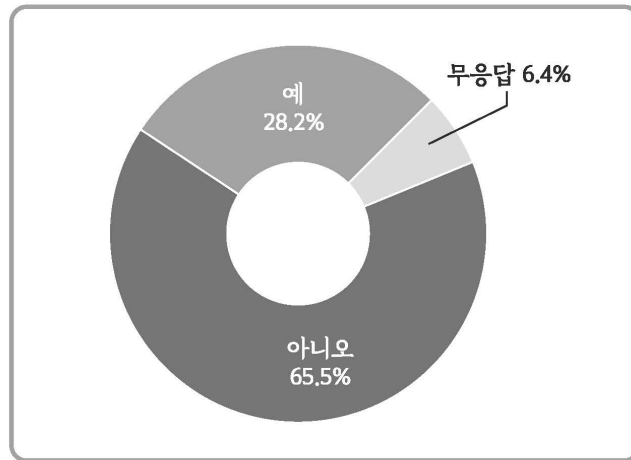
- 사업주로부터 제대로 된 보상을 받는 경우는 극히 드문 것으로 나타남. 급여 및 장해에 대하여 사업주로부터 제대로 된 보상을 받았는지에 대해 전체 응답자의 28.2%인 31명만이 그렇다고 응답함.
 - 응답자의 65.5%인 72명은 사업주로부터 제대로 된 보상을 받지 못한 것으로 확

인됨. 산재 미처리 외국인 노동자의 경우 산재 경험 후 제대로 된 보상을 받는 비율이 전체적으로 매우 낮다는 것을 확인함.(표Ⅲ-42), (그림Ⅲ-17)

<표Ⅲ-42> 사업주로부터 제대로/충분한 보상을 받았는지 여부

	예	아니오	무응답	합계
빈도(%)	31(28.2)	72(65.5)	7(6.4)	110(100)

<그림Ⅲ-17> 사업주로부터 제대로/충분한 보상을 받았는지 여부



- 이것은 사업주로부터 산재 신청 협조를 거부 당하는 경우 단순히 보험제도 이용이 봉쇄되는 것을 넘어서서 정당한 보상 자체를 받지 못하는 ‘이중의 피해’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을 뜻함.

- 산재 미처리 외국인 노동자가 급여 및 장애에 대해 제대로 또는 충분한 보상을 받았는지의 여부를 좀 더 구체적으로 파악해보기 위하여 연령, 한국 거주기간, 한국어 수준, 산재 당시 사업장 규모 및 재직 기간 등 산재 피해 노동자의 배경 변수별로 추가 분석을 시도함.
- 연령별 분석 결과 20대 이하 집단의 경우 적절한 보상을 받은 비율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남.(표Ⅲ-43)

<표Ⅲ-43> 연령별 산재시 적절한 보상 여부

	20대 이하	30대	40대 이상	전체
예	7(18.9)	19(38.0)	7(35.0)	33(30.8)
아니오	30(81.1)	31(62.0)	13(65.0)	74(69.2)
전체	37(100)	50(100)	20(100)	107(100)

무응답자 제외

- 20대 이하 집단의 보상 비율이 가장 낮은 것은 연령이 높은 경우 연령이 많은 노동자에 비해 사업주들이 무시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는 것, 그리고 낮은 연령이 짧은 한국 거주기간을 지시하는 경우 산재 발생시 대처 방안에 대한 정보를 더 적게 가지고 있는 것과 관련될 것으로 추론됨.

○ 그러나 한국 거주기간에 따른 산재 미신청 노동자의 적절한 보상 여부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의미 있는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음.(표Ⅲ-44)

<표Ⅲ-44> 한국 거주기간별 산재 시 적절한 보상 여부

	1년 미만	1년 이상 3년 미만	3년 이상 5년 미만	5년 이상	전체
예	7(31.8)	8(34.8)	6(19.4)	10(34.5)	31(29.5)
아니오	15(68.2)	15(65.2)	25(80.6)	19(65.5)	74(70.5)
전체	22(100)	23(100)	31(100)	29(100)	105(100)

※ 무응답자 제외

- 이것은 연령의 차이와 거주기간의 차이를 선형적으로 연관시키기 어렵다는 것을 뜻하므로 이에 대해서는 향후 좀 더 면밀한 분석이 필요해 보임.

○ 한국어 수준에 따른 산재 미신청 노동자의 적절한 보상 수량의 차이를 보면 한국어를 잘 못한다고 응답한 경우 적절한 보상을 받은 비율이 오히려 높은 것으로 나타남.(표Ⅲ-45)

<표Ⅲ-45> 한국어 수준별 산재시 적절한 보상 여부

	거의 못함	업무에 필요한 최소한의 대화만 가능	일상생활이나 업무에 필요한 대화가 어느 정도 가능	거의 모든 내용 이해	전체
예	39(39.1)	16(38.1)	6(19.4)	2(25.0)	33(31.7)
아니오	14(60.9)	26(61.9)	25(80.6)	6(75.0)	71(68.3)
전체	23(100)	42(100)	31(100)	8(100)	104(100)

무응답자 제외

- 이것은 이번 조사에 참여한 산재 경험 외국인 노동자의 경우로 모집단을 제한하는 경우 한국어를 잘한다고 반드시 적절한 보상을 받는 것은 아닌 것을 뜻함.
 - 그러나 이러한 결과를 한국어 능력의 중요성을 폄하하는 지표로 일방적으로 해석되는 것 역시 경계할 수 있어야 함. 한국어 소통 수준이 낮은 경우 적절한 보상에 대한 이해 자체가 부족할 수 있다는 점, 따라서 보상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질 수 있으며, 사용자와의 합의 능력이 취약한 탓에 지원센터 등에 의존하는 경우가 좀 더 빈번하게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 고려될 수 있어야 함.
 - 한국어 능력이 취약한 노동자의 보상 수령 정도가 높은 것이 지원센터 등 외국인 노동자 전문 지원단체들의 개입과 관련된다는 점은 경험적으로 확인가능한 사실임.
- 응답자 수가 적어서 단정적인 해석을 내리기는 어려운 상황이지만 산재 발생시 사업장 규모에 따른 적절한 보상 여부 역시 집단 간 큰 차이를 발견하기는 어려웠음.(표Ⅲ-46)

<표Ⅲ-46> 산재 발생시 사업장 규모별 적절한 보상 여부

	5인 미만	5인~9인	10인~29인	30인~49인	50인 이상	전체
예	8(30.8)	9(31.0)	8(26.7)	1(14.3)	6(42.9)	32(30.2)
아니오	18(69.2)	20(69.0)	22(73.3)	6(85.7)	8(57.1)	74(69.8)
전체	26(100)	29(100)	30(100)	7(100)	14(100)	106(100)

무응답자 제외

- 이번 조사 결과에서도 앞서 소개된 바와 같이 사업장 규모가 작을수록 산재 발생률과 산재 누락율이 모두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경험적으로 사업장 규모가 작을수록 적절한 보상 문제가 자주 발생한다는 점에서 사업장 규모별로 보상 여부의 차이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사업장 규모를 재범주화하는 등 조사 설계를 변경한 후 재조사가 필요해 보임.

○ 응답자 수가 적어서 정확한 결론을 내리기는 어려운 상황이지만 산재 발생시 외국인 노동자의 재직 기간에 따른 적절한 보상 여부 역시 집단 간 큰 차이를 발견하기는 어려웠음.(표Ⅲ-47)

<표Ⅲ-47> 산재 발생시 재직기간별 적절한 보상 여부

	6개월 미만	6개월 ~1년 미만	1년 이상 ~3년 미만	3년 이상	전체
예	8(22.2)	6(40.0)	7(22.6)	9(40.9)	30(28.8)
아니오	28(77.8)	9(60.0)	24(77.4)	13(59.1)	74(71.2)
전체	36(100)	15(100)	31(100)	22(100)	104(100)

무응답자 제외

- 경험적으로 산재 당시 근속 기간이 짧은 외국인 노동자일수록 적절한 보상을 둘러싼 문제가 보다 빈번하게 발생함.

5) 산재보험 미신청 이유

○ 치료비나 급여, 장애보상 등 제대로 된 보상을 받지 못했다고 응답한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왜 산재보험을 신청하지 않았는지 이유를 물어봄.

- 가장 높은 비율의 응답은 ‘신청할 수 있는지 몰라서’로 36.1%였음. 다른 선택지의 비율이 10%대 미만인 것을 고려하면, 산재 사고 발생 이후에라도 산재보험을 신청 절차를 취할 수 있다는 사실 자체를 모른다는 것이 보상을 못 받았음에도 산재보험을 이용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로 확인됨.
- 그 다음으로 높은 반응을 보인 선택지는 ‘신청 서류, 절차 등을 잘 몰라서’(13.9%), ‘현재도 그 사업주와 계속 일하고 있으므로’(12.5%), ‘불법체류/불법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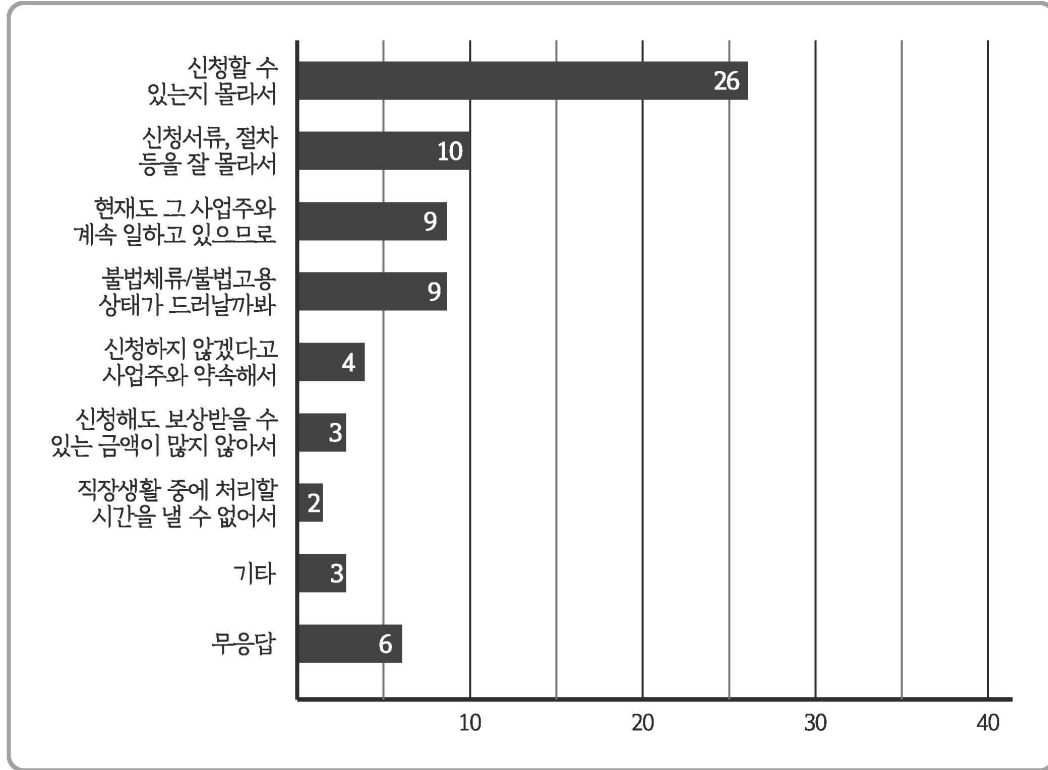
용 상태가 드러날까봐'(12.5%) 등이었음.

- 그 외 '신청하지 않겠다고 사업주와 약속을 한 경우'(5.6%), '신청해도 보상받을 수 있는 금액이 많지 않아서'(4.2%), '직장생활 중에 처리할 시간을 낼 수 없어서'(2.8%) 등은 비교적 낮은 비율로 선택됨.(표Ⅲ-48), (그림Ⅲ-18)

<표Ⅲ-48> 산재보험 미신청 이유

내용	빈도(%)
신청할 수 있는지 몰라서	26(36.1)
신청서류, 절차 등을 잘 몰라서	10(13.9)
현재도 그 사업주와 계속 일하고 있으므로	9(12.5)
불법체류/불법고용 상태가 드러날까봐	9(12.5)
신청하지 않겠다고 사업주와 약속해서	4(5.6)
신청해도 보상받을 수 있는 금액이 많지 않아서	3(4.2)
직장생활 중에 처리할 시간을 낼 수 없어서	2(2.8)
기타	3(4.2)
무응답	6(8.3)
합계	72(100.0)

<그림Ⅲ-18> 산재보험 미신청 이유



- 산재보험 이용에 관한 정보 부족과 더불어 산재 보험을 신청함으로 인한 고용 및 체류 자격 곧 신분상의 안전성에 대한 두려움이 보상을 받지 못했음에도 산재 피해 외국인 노동자가 산재보험 이용을 기피하게 만드는 주요한 요인이라는 점이 확인됨.

7. 치료 및 요양 과정의 차별

1) 치료 및 요양 과정에서의 차별 경험

- 산재 발생 이후 치료 및 요양 과정에서 외국인 산재 피해자가 경험하는 차별 형태를 파악해보기 위해 7가지 문항을 제시함. 배포된 설문지에서 각 문항은 4점 척도로 구성되었으나 조사 결과의 가독성과 이해도를 높이기 위하여 응답지를 ‘그렇지 않다’와 ‘그렇다’의 두 가지 범주로 재구성함.
 - 가장 많은 응답자가 경험한 어려움은 ‘한국어 소통이 어려워 불이익을 받은’ 경우로 47.1%에 달함. 한국어 소통의 어려움에 이어 다수의 응답자들이 선택한 또 한 가지 어려움은 ‘음식 등으로 인한 불편’으로 42.3%였음.
 - 20% 안팎의 응답자가 경험한 것으로 나타난 차별 형태로는 ‘의료진의 진료방식으로 인한 불편을 겪은 적이 있다’(21.2%), ‘출신국으로 인한 차별을 받은 적이 있다’(20.2%), ‘주변 사람으로부터 피병이라는 비난을 받은 적이 있다’(19.3%) 등이었음.
 - 상대적으로 가장 드문 유형의 차별 형태 두 가지는 ‘의료진으로부터 외국인이라서 차별을 받은 적이 있다’(13.5%)와, ‘병원이나 요양시설의 한국인 환자로부터 차별을 받은 적이 있다’(9.1%)였음.(표Ⅲ-49)

<표Ⅲ-49> 치료 및 요양 과정시 경험한 차별 형태

내용	그렇지 않다	그렇다	무응답	합계
주변 사람으로부터 피병이라는 비난을 받은 적이 있다	152(73.1)	40(19.3)	16(7.7)	208(100)
의료진으로부터 외국인이라서 차별을 받은 적이 있다	165(79.3)	28(13.5)	15(7.2)	208(100)
병원이나 요양시설의 한국인 환자로부터 차별을 받은 적이 있다	173(83.1)	19(9.1)	16(7.7)	208(100)
한국어 소통이 어려워 불이익을 받은 적이 있다	96(46.2)	98(47.1)	14(6.7)	208(100)
출신국으로 인한 차별을 받은 적이 있다	151(72.6)	14(20.2)	15(7.2)	208(100)
음식 등으로 인한 불편을 겪은 적이 있다	104(50.0)	88(42.3)	16(7.7)	208(100)
의료진의 진료방식으로 인한 불편을 겪은 적이 있다	150(72.1)	44(21.2)	14(6.7)	208(100)

- 산재피해 외국인 노동자가 치료 및 요양 과정에서 경험한 차별 형태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되는 셈임. 우선 ‘문화적 차이에 대한 비고려’로부터 발생하는 유형으로, ‘언어와 음식, 의료진의 진료 방식’의 ‘차이’에서 경험한 차별이 이에 해당함. 다른 가지는 보다 ‘인종주의’에 가깝다는 점에서 좀 더 심각한 차별 유형으로 ‘출신국 및 외국인’에 대한 차별에 해당함.

○ 산재 발생 이후 치료 및 요양과정에서 외국인이기 때문에 겪어야만 했던 차별 경험을 좀 더 분석적으로 파악해보고자 문항들의 평균값을 산출하여 비교해 봄.

- ‘한국어 소통이 어려워 불이익을 받은 적이 있다’는 응답의 평균값이 가장 높았고, 두 번째가 ‘음식 등으로 인한 불편을 겪은 적이 있다’는 응답이었으며, 세 번째가 ‘의료진의 진료방식으로 인한 불편을 겪은 적이 있다’, 네 번째가 ‘주변사람으로부터 피병이라는 비난을 받은 적이 있다’였고, 그 외 ‘출신국으로 인한 차별을 받은 적이 있다’, ‘의료진으로부터 외국인이라서 차별을 받은 적이 있다’, ‘병원이나 요양시설의 한국인 환자로부터 차별을 받은 적이 있다’등의 순이었음.(표Ⅲ-50)

<표Ⅲ-50> 치료 및 요양 과정상 차별경험의 평균값

내용	평균(표준편차)
한국어 소통이 어려워 불이익을 받은 적이 있다	2.48(1.03)
음식 등으로 인한 불편을 겪은 적이 있다	2.30(1.02)
의료진의 진료방식으로 인한 불편을 겪은 적이 있다	1.95(0.94)
주변 사람으로부터 피병이라는 비난을 받은 적이 있다	1.86(0.89)
출신국으로 인한 차별을 받은 적이 있다	1.85(0.89)
의료진으로부터 외국인이라서 차별을 받은 적이 있다	1.79(0.88)
병원이나 요양시설의 한국인 환자로부터 차별을 받은 적이 있다	1.69(0.76)

- 높은 평균값의 1순위로부터 3순위까지가 모두 ‘문화적 차이’에 대한 둔감함으로부터 파생되는 차별 행동에 해당한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좀 더 분명한 문제의식이 공론화되고 그 개선방안의 모색이 요청됨.

2) 차별 지각에 대한 분산 분석:

연령, 거주기간, 한국어 능력, 사업장 규모, 재직기간, 체류자격

- 응답자의 배경 변수별로 치료 및 요양 과정에서 경험한 차별 지각 수준의 집단적 차이가 나타나는지를 파악해보기 위해 분산 분석을 시행함.
- 연령, 한국어 능력, 체류 자격과 관련해서는 차별 지각 수준 사이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발견됨.
 - 연령에 따라 다른지 비교한 결과 20대 이하 집단이 가장 높은 수준으로 차별을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연령이 높아질수록 차별지각 수준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남.(표Ⅲ-51)

<표Ⅲ-51> 연령별 차별지각

	20대 이하	30대	40대 이상	F
평균(표준편차)	2.14(0.69)a	1.97(0.62)ab	1.74(0.65)b	4.53*

* p<. 05, Duncan: a>b

- 한국어 능력 수준에 따라 차별 지각 수준이 다른지 살펴본 결과 한국어를 잘 못하는 경우 차별에 대해 더 높게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남.(표Ⅲ-52)

<표Ⅲ-52> 한국어 능력별 차별지각

	거의 못함	업무에 필요한 최소한의 대화만 가능	일상생활이나 업무에 필요한 대화가 어느 정도 가능	거의 모든 내용 이해	F
평균(표준편차)	2.09(0.64)a	2.09(0.71)a	1.86(0.61)ab	1.73(0.53)b	2.66*

* p<. 05, Duncan: a>b

- 산재발생시 외국인 노동자의 체류자격에 따른 차별 지각의 수준은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H-2(방문취업)비자 소지자들이 다른 집단에 비해 차별을 지각하는 수준이 낮은 것으로 나타남.(표Ⅲ-53)

<표Ⅲ-53> 산재 발생시 체류자격별 차별지각

	E-9 (비전문취업)	H-2 (방문취업)	기타비자	미등록	F
평균(표준편차)	2.05(.64)a	1.51(.62)b	1.97(.57)a	2.16(.77)a	4.65**

** p<. 01, Duncan: a>b

- 한국 거주기간과 관련해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확인되지 않았으나 경향적인 차이는 관측됨.
 - 한국 거주기간이 3년 미만인 집단이 3년 이상 집단에 비해 차별 지각 수준(평균값)이 더 높은 경향성이 나타남.(표Ⅲ-54)

<표Ⅲ-54> 한국 거주기간별 차별지각

	1년 미만	1년 이상 3년 미만	3년 이상 5년 미만	5년 이상	F
평균(표준편차)	2.09(0.63)	2.16(0.67)	1.91(0.69)	1.87(0.64)	2.20

- 사업장 규모와 산재 당시 피해 노동자의 근속 기간에 따른 차별 지각 수준에 있어서의 유의미한 차이는 확인되지 않았음.
 - 사업장 규모에 따라서는 차별 지각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음.(표Ⅲ-55)

<표Ⅲ-55> 산재 발생시 사업장 규모별 차별지각

	5인 미만	5인~9인	10인~29인	30인~49인	50인 이상	F
평균(표준편차)	2.01(0.64)	2.06(0.73)	1.89(0.61)	2.01(0.68)	2.12(0.65)	0.62

- 산재 피해 외국인 노동자의 사업장 재직기간에 따른 차별 지각 수준 차이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에서는 확인되지 않았음.(표Ⅲ-56)

<표Ⅲ-56> 산재 발생시 재직기간별 차별지각

	6개월 미만	6개월 ~1년 미만	1년 이상 ~3년 미만	3년 이상	F
평균(표준편차)	2.06(0.68)	1.93(0.63)	2.05(0.69)	1.81(0.50)	1.45

3) 치료 기간 및 치료 기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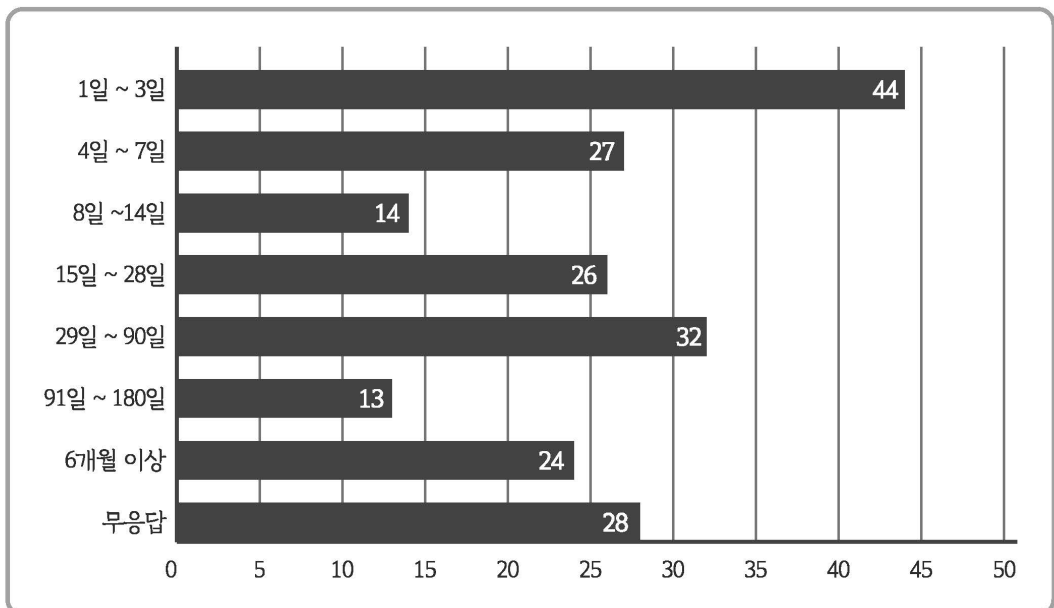
○ 산재를 당했을 때 외국인 노동자가 산재 치료 및 치료 후 요양에 소요하는 기간을 파악해보기 위해 치료 및 요양 기간에 대해 질문함.

- 1일에서 3일이었다는 응답이 21.2%로 가장 많았고, 다음이 20일~90일 그러니까 약 1달에서 3달이라는 응답이 15.4%로 두 번째로 많았으며, 4일에서 7일이라는 응답이 13.0%, 6개월 이상이라는 응답이 11.5%였음.(표Ⅲ-57), (그림Ⅲ-19)

<표Ⅲ-57> 산재 시 치료 및 요양 기간

요양기간	1일~3일	4일~7일	8일~14일	15일~28일	합계
빈도(%)	44(21.2)	27(13.0)	14(6.7)	26(12.5)	208(100)
요양기간	29일~90일	91일~180일	6개월 이상	무응답	
빈도(%)	32(15.4)	13(6.3)	24(11.5)	28(13.5)	

<그림Ⅲ-19> 산재 시 치료 및 요양 기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3일 이하의 진단은 산재보험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점에서 치료 및 요양 기간 1일에서 3일이 가장 많이 선택된 이번 조사 결과는 여러 가지 의미의 해석이 가능함.

- 우선 업무 중 사고로 다쳤거나 병에 걸렸을 때 실제 증상과 무관하게 하루나 이틀 정도의 휴식만을 허용 받고 계속 근로를 강요받는 상황이 가능함. 실제로 법적으로 산재에 해당하지 않는 경미한 재해를 주관적으로 산재로 평가했을 수도 있음.
- 석 달 이상의 비교적 장기간 요양을 한 경우도 전체의 17.8%로 결코 적지 않은 비율이었다는 점도 주목할 수 있어야 함.

○ 업무 중 사고로 다쳤거나 병에 걸렸을 때 치료 및 요양기간이 비자 유형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는지 분석함.

- 분석 결과 E-9(비전문취업)비자를 소지한 경우 1일에서 3일 동안 요양을 했다는 응답이 가장 25.2%로 많았고, 29일에서 90일, 즉 1달에서 3달 정도라고 응답한 비율이 19.4%, 15일에서 28일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13.6% 등의 순이었음.
- 이에 비해 H-2(방문취업)비자를 소지한 경우는 29일에서 90일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33.3%로 가장 많았고, 3일에서 7일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다음으로 높았음.
- 그러나 요양기간과 비자유형에 모두 응답한 사례가 18명밖에 되지 않아서 비율이 크게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것으로 해석하기는 어려움.
- 미등록체류자의 경우도 1일에서 3일 정도 요양을 하였다는 응답이 34.8%로 높긴 하였으나 역시 전체 응답자가 23명밖에 되지 않아서 미등록자의 경우 요양기간이 더 짧은 경향성은 보이거나 현재의 자료로 이러한 차이를 단정 짓기에는 무리가 따름.(표Ⅲ-58)

<표Ⅲ-58> 비자 유형별 요양기간의 차이

요양기간 \ 비자	E-9 (비전문취업)	H-2 (방문취업)	기타비자	미등록	전체
1일~3일	26(25.2)	-	10(29.4)	8(34.8)	44(24.7)
4일~7일	14(13.6)	4(22.2)	6(17.6)	3(13.0)	27(15.2)
8일~14일	7(6.8)	1(5.6)	2(5.9)	2(8.7)	12(6.7)
15일~28일	17(16.5)	3(16.7)	4(11.8)	2(8.7)	26(14.6)
29일~90일	20(19.4)	6(33.3)	3(8.8)	3(13.0)	32(18.0)
91일~180일	8(7.8)	1(5.6)	3(8.8)	1(4.3)	13(7.3)
6개월 이상	11(10.7)	3(16.7)	6(17.6)	4(17.4)	24(13.5)
전체	103(100)	18(100.0)	34(100)	23(100)	178(100)

무응답자 제외

- 산재보험 신청여부에 따라 치료기간에 차이가 있는지를 검토해보기 위해 집단별 빈도 비교를 실시함.
 - 전체적으로 산재를 신청한 외국인 노동자의 치료 기간이 비신청자에 비해 긴 것으로 나타남. 14일 미만에서는 비신청자의 빈도가 컸으나 15일 이상에서는 신청자의 빈도가 더욱 컸음. 특히 6개월 이상의 장기 치료자의 경우 산재 신청자의 규모가 비신청자의 규모의 거의 3배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됨.(표Ⅲ-59)

<표Ⅲ-59> 산재보험 신청여부별 치료기간의 차이

치료기간 \ 산재신청여부	산재신청자	비신청자	전체
1일~3일	16(20.5)	27(28.1)	43(24.7)
4일~7일	5(6.4)	21(21.9)	26(14.9)
8일~14일	4(5.1)	8(8.3)	12(6.9)
15일~28일	12(15.4)	14(14.6)	26(14.9)
29일~90일	17(21.8)	14(14.6)	31(17.8)
91일~180일	8(10.3)	5(5.2)	13(7.5)
6개월 이상	16(20.5)	7(7.3)	23(13.2)
전체	78(100)	96(100)	174(100)

무응답자 제외

- 그러나 위 조사 결과를 엄격하게 수용하는 것에는 주의가 요청됨. 앞서 지적했다시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3일 이하의 진단은 산재보험 적용 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위의 표에 의하면 치료 및 요양 기간을 1일에서 3일로 선택한 외국인 노동자 가운데 16명은 산재를 신청한 것으로 응답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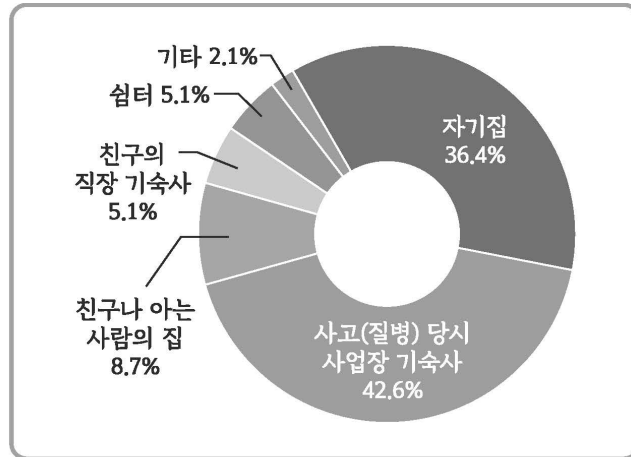
4) 산재 발생 이후 거주와 고용

- 기존의 외국인 산재 관련 조사는 산재 발생과 처리 과정 및 보상으로 이어지는 기술적인 과정에 초점을 맞추는 경우가 대부분임. 우리 조사는 외국인 노동자의 산재 경험이 그들의 삶 전체에 끼치는 보다 전체적인 영향력을 파악해보고자 설문 구성시 공식적인 산재 종결 이후의 생활에 대한 문항을 포함시킴. 주 내용은 거주와 고용에 관한 것임.
- 통원치료시 거주한 생활 공간으로는 사고당시의 사업장 기숙사가 가장 많아 42.6% 83명에 달했음.
 - 기숙사 다음으로 자기집(71명, 36.4%)이었으며, 그 외 친구나 아는 사람의 집(17명, 8.7%), 친구의 직장 기숙사(10명, 5.1%), 쉼터(10명, 5.1%) 등의 순이었음.(표Ⅲ-60), (그림Ⅲ-20)

<표Ⅲ-60> 통원치료 시 생활장소

	자기집	사고(질병) 당시 사업장 기숙사	친구나 아는 사람의 집	친구의 직장 기숙사	쉼터	기타	전체
빈도(%)	71(36.4)	83(42.6)	17(8.7)	10(5.1)	10(5.1)	4(2.1)	195(100)

<그림Ⅲ-20> 통원치료 시 생활장소



- 산재란 일종의 트라우마적인 사고임으로 심신의 안정이 가장 중요한 사후 조치일 텐데 불안함과 두려움의 공간인 사고 현장(사업장)에서 산재 치료를 받아야 하는 노동자가 가장 다수였다는 것은 향후 산재보상제도 개선과 관련 매우 심각하게 그 개선 방안을 모색해야 하는 문제로 판단됨.

○ 비자 유형별로 통원치료시 거주 공간에는 차이가 발견되었음.

- E-9(고용허가)비자 소지자의 경우 통원 치료시 사고당시의 사업장이나 기숙사에서 생활했다는 경우가 전체의 60.8%로 가장 많았음.
- 미등록체류자의 경우도 산재 이후 사고당시의 사업장이나 기숙사에서 통원 치료를 받았다는 응답이 63.6%로 가장 많았음.
- 이에 비해 H-2(방문취업)비자 소지자의 경우는 자기 집에서 통원 치료를 받았다는 응답이 72.2%로 가장 많았음.
- 기타 비자 소지자 역시 자기 집에서 통원 치료를 받은 경우가 72.2%로 가장 많았음.(표Ⅲ-61)

<표Ⅲ-61> 비자 유형별 통원치료시 생활장소(중복응답)

	E-9 (비전문취업)	H-2 (방문취업)	기타비자	미등록	합계
자기집	26(25.5)	13(72.2)	26(72.2)	5(22.7)	70
사고(질병)당시 사업장기숙사	62(60.8)	4(22.2)	1(2.8)	14(63.6)	81
친구나 아는 사람의 집	8(7.8)	1(5.6)	5(13.9)	2(9.1)	16
친구의 직장 기숙사	8(7.8)	-	1(2.8)	-	9
쉼터	5(4.9)	-	3(8.3)	1(4.5)	9
기타	2(2.0)	-	2(5.6)	-	4
전체	102(100)	18(100)	36(100)	22(100)	178

무응답자 제외

- 고용허가제로 입국한 대부분의 외국인 노동자의 주생활 공간이 ‘공장’으로 제한된다는 점에서 그들 대부분이 산재 이후에도 공장에 머물렀다는 것은 경험적으로 이해가 가는 현상임. E-9 비자 소지자들의 경우 주목해야 할 것은 오히려 자기집에서 통원치료를 받았다는 비율이 25.5%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는 점임. 이것은 제도적 제약이나 사회적 통념과 달리 고용허가제하의 이주노동자의 상당 부분이 공장 밖 한국의 주류 사회에 자신의 거주 장소를 가지고 있음을 뜻함.
 - 반면 사업장과의 공식적인 연관성이 해체된 미등록 체류자의 경우 역시 산재 이후 공장에서 머문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난 것에 대해서는 조금 다른 해석이 필요함. 샘플이 작아서 일반화하기는 어렵지만 아마도 미등록체류자들의 주거권 자체가 매우 취약한 현실이 이번 조사 결과에 반영되었을 수 있음.
- 산재 이후 고용의 지속성 여부를 파악하기 위하여 치료 및 요양이 끝난 후에도 일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 질문함. 전체의 64.4%인 134명이 여전히 일을 하고 있다고 응답함.
- 일을 하고 있다고 응답한 노동자를 대상으로 치료 및 요양이 끝난 후 일하고 있는 사업장에 대해 질문함. 70.9%인 95명이 사고가 났던 사업장에서 다시 일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표Ⅲ-62)

<표Ⅲ-62> 치료 및 요양 종결 후 노동 여부

	예	아니오	무응답	합계
치료 및 요양 종결 후에도 일을 하는 지 여부	134(64.4)	26(12.5)	48(23.1)	208(100)
치료 및 요양 종결 후에 일한 곳이 사고 났던 곳인지 여부	95(70.9)	28(20.9)	11(8.2)	134(100)

무응답자 제외

- 산재 피해 노동자 가운데 64.4%만이 계속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은 산재의 후유증이 신체적인 것에 그치지 않고 경제적인 것 그리고 삶 전체의 지속가능성으로까지 확장된다는 것을 뜻함.
 - 치료 및 요양 종결 후 계속 일을 하고 있는 노동자의 대부분이 ‘사고가 났던 곳’으로 복귀한다는 점도 심각하게 개선방안 마련이 고려되어야 할 문제임. 경험적으로 산재 피해 노동자 대부분은 사고가 일어난 사업장과 업무에 관한 두려움과 불안함을 갖게 됨.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조적이며 강제적인 이유로 사고사업장에 복귀하게 되는 경우가 빈번함.
- 치료 및 요양을 종결한 후 복귀한 사업장이 어느 곳인지를 산재 신청자와 비신청자 별로 구분하여 살펴봄
- 산재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해당 사업장에서 계속 일하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비신청자의 경우 사고 사업장에서 계속 일하고 있는 비율이 78.0%로 59.7%인 신청자에 비해 20% 정도나 높은 수준임.(표Ⅲ-63)

<표Ⅲ-63> 산재신청 여부에 따른 사고 작업장 복귀 여부

사고 작업장 근로 여부 \ 산재신청여부	산재신청자	비신청자	전체
예	40(59.7)	64(78.0)	104(69.8)
아니오	27(40.3)	18(22.0)	45(30.2)
전체	67(100)	82(100)	149(100)

무응답자 제외

- 이것은 산재 누락자가 공상처리나 사업주의 비제도적 조력을 통하여 치료비 등의 보상을 충분히 받는 경우라 할지라도 기술적인 보상 이외의 불이익에 있어서 산재신청자에 비해 더 큰 압력을 받고 있는 상황에 처해있음을 시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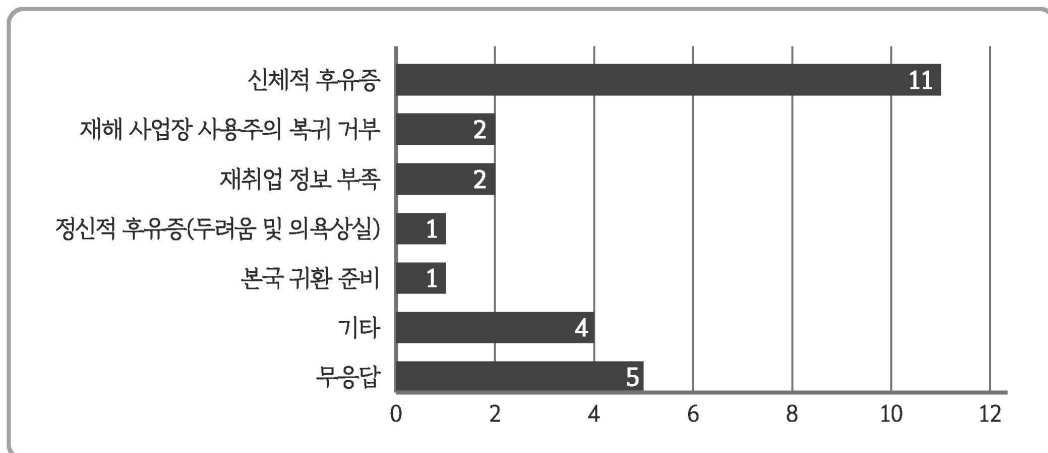
○ 치료 및 요양 종결 후 일을 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26명을 대상으로 일을 시작하지 않은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인지 질문함.

- 신체적 후유증 때문이라는 응답이 압도적으로 무려 42.3%에 달하는 11명이 선택함.
- 그 밖에 '재해 사업장 사용주의 복귀 거부'(7.7%), '재취업 정보 부족'(7.7%) 등의 이유가 제시됨.(표Ⅲ-64), (그림Ⅲ-21)

<표Ⅲ-64> 산재치료 후 일을 시작하지 않은 가장 큰 이유

내용	빈도(%)
신체적 후유증	11(42.3)
재해 사업장 사용주의 복귀 거부	2(7.7)
재취업 정보 부족	2(7.7)
정신적 후유증(두려움 및 의욕상실)	1(3.8)
본국 귀환 준비	1(3.8)
기타	4(15.4)
무응답	5(19.2)
전체	26(100)

<그림Ⅲ-21> 산재치료 후 일을 시작하지 않은 가장 큰 이유



5) 산재 종결 후 경험한 어려움과 어려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 산재 피해 외국인 노동자가 산재보상이 종결된 이후 경험한 어려움을 파악하기 위하여 다섯 가지 문항을 제시함.
 - 가장 많은 응답자가 선택한 어려움은 ‘공단에서 후유 증상 치료나 재요양 승인을 받는 것’으로 53.9%에 달함. ‘사업주가 치료 종결 후 재해 원인에 대한 아무런 조치 없이 사업장 복귀 및 동일 업무를 강요’해서 어려웠다고 답한 경우도 전체 응답자의 절반에 달함.
 - 그 밖에 산재 피해 노동자가 선택한 산재 종결 이후 경험한 어려움으로는 산재 치료가 완벽하지 않은 상태에서 치료나 요양의 종결로 인한 어려움(‘산재 종결 후 후유증상 치료나 재요양이 필요하였다’) 45.7%, 너무 적은 장해보상금으로 인한 어려움 42.3%, 장해보상 신청방법을 몰라 겪은 어려움 36.0% 등의 순이었음.(표Ⅲ-65)

<표Ⅲ-65> 산재 종결 후 경험한 어려움

내용	그렇지 않다	그렇다	무응답	합계
산재 종결 후 후유증상 치료 및 재요양이 필요하였다	86(41.4)	95(45.7)	27(13.0)	208(100)
공단에서 후유 증상 치료나 재요양 승인을 받는 것이 어려웠다	66(31.7)	112(53.9)	30(14.4)	208(100)
장해보상 신청방법을 몰라 어려움을 겪었다	104(50.1)	75(36.0)	29(13.9)	208(100)
장해보상금이 너무 적은 것 같다	89(42.8)	88(42.3)	31(14.9)	208(100)
사업주가 치료 종결 후 재해 원인에 대한 아무런 조치 없이 사업장에 복귀하여 동일업무를 하라고 했다	80(38.4)	104(50.0)	24(11.5)	208(100)

- 산재 피해 노동자가 선택한 산재 종결 이후 경험한 어려움을 응답률별로 범주화 하면 재요양 승인 자체의 어려움, 사고사업장으로의 무조건적인 복귀 강요, 불완전한 치료나 요양의 종결, 너무 적은 보상금 등으로 구분됨.
- 산재 종결 후 경험한 다양한 어려움을 보다 쉽게 파악하기 위하여 응답결과를 평균값으로 환산하여 비교함. 빈도분포와 거의 동일한 결과를 확인함.
 - ‘공단에서 후유증상 치료나 재요양 승인을 받는 것이 어려웠다’는 응답의 평균값이 가장 높았고, ‘사업주가 치료 종결 후 재해 원인에 대한 아무런 조치 없이 사업

장에 복귀하여 동일업무를 하라고 했다’는 응답이 두 번째로 높았으며, 다음이 ‘장해보상금이 너무 적은 것 같다’, ‘산재 종결 후 후유증상 치료 및 재요양이 필요하였다’, ‘장해보상 신청방법을 몰라 어려움을 겪었다’ 등의 순이었음.(표Ⅲ-66)

<표Ⅲ-66> 산재 후 어려움 정도의 평균값

내용	평균(표준편차)
공단에서 후유 증상 치료나 재요양 승인을 받는 것이 어려웠다	2.72(0.98)
사업주가 치료 종결 후 재해 원인에 대한 아무런 조치 없이 사업장에 복귀하여 동일업무를 하라고 했다	2.61(0.99)
장해보상금이 너무 적은 것 같다	2.54(1.04)
산재 종결 후 후유증상 치료 및 재요양이 필요하였다	2.48(0.95)
장해보상 신청방법을 몰라 어려움을 겪었다	2.39(1.03)
전체	2.55(0.80)

- 산재 신청여부에 따른 산재 종결 후 경험한 어려움의 차이를 살펴보고자 산재보험 신청자와 비신청자의 차이를 비교분석함
 - ‘산재 종결 후 후유증상 치료 및 재요양이 필요하였다’라는 응답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확인됨. 산재미신청자가 그렇게 생각하는 비율이 산재신청자에 비해 높았음.
 - 그 외의 내용에서는 두 집단 간에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음.(표Ⅲ-67)

<표Ⅲ-67> 산재신청여부에 따른 산재 후 어려움 정도의 차이

내용	신청자	비신청자	t
산재 종결 후 후유증상 치료 및 재요양이 필요하였다	2.25(1.00)	2.64(0.87)	-2.71**
공단이나 후유 증상 치료나 재요양 승인을 받는 것이 어려웠다	2.68(0.95)	2.75(1.01)	-0.50
장해보상 신청방법을 몰라 어려움을 겪었다	2.34(1.02)	2.40(1.04)	-0.43
장해보상금이 너무 적은 것 같다	2.48(1.05)	2.57(1.05)	-0.61
사업주가 치료 종결 후 재해 원인에 대한 아무런 조치 없이 사업장에 복귀하여 동일업무를 하라고 했다	2.65(1.02)	2.57(0.96)	0.52

- 산재 종결 후 후유 증상 치료 및 재요양의 필요성에 대한 산재비신청자들의 호소는 산재비신청자들이 산재 치료 과정 및 결과에 대해 불안감과 불만족감을 가지고 있음을 시사함.
- 산재 종결 후 경험한 어려움 정도에서 배경변인별 집단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분산분석을 시행함. 체류 자격에 따른 어려움의 차이를 제외하고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음.
- 산재발생시 체류자격에 따라 산재 후 경험한 어려움 정도에 있어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확인됨. H-2(방문비자)소지자들이 어려움을 느끼는 수준이 다른 집단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남.(표Ⅲ-68)

<표Ⅲ-68> 산재 발생시 체류자격별 산재 후 어려움 정도

	E-9 (비전문취업)	H-2 (방문취업)	기타비자	미등록	F
평균(표준편차)	2.46(0.80)b	3.03(0.73)a	2.51(0.64)b	2.53(0.85)b	2.97*

*p<.05, Duncan: a>b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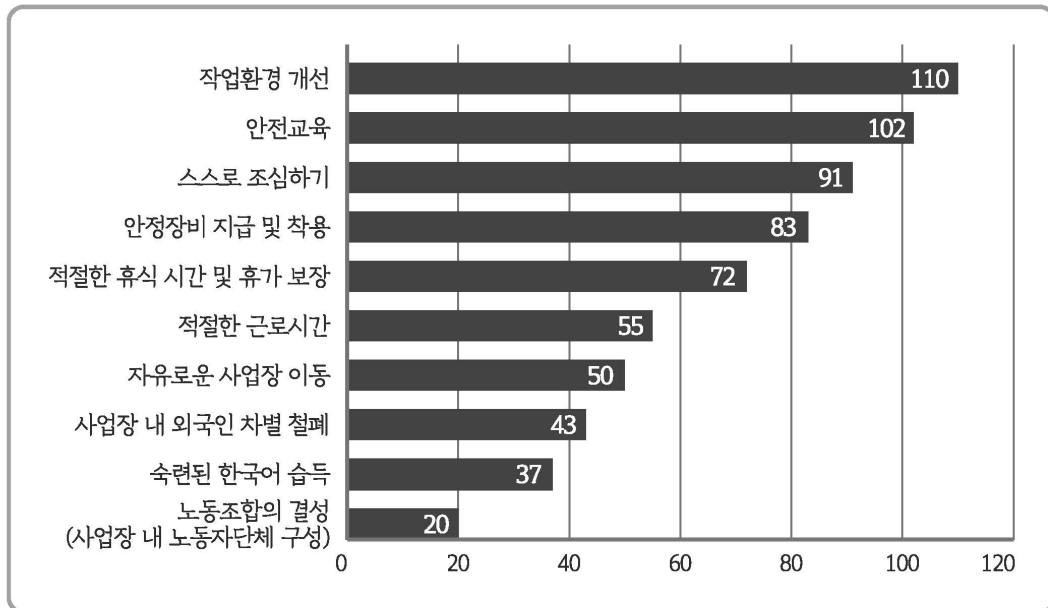
6) 산재 예방을 위한 조치와 산재의 영향

- 산재 피해를 당한 바 있는 외국인 노동자가 생각하는 산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가 무엇인지를 파악해보기 위하여 10가지 선택지를 제안하고 중복응답을 허용함. 대체로 작업환경과 안전교육 관련 항목의 선택율이 높게 나타남.
- 가장 많이 언급된 조치는 ‘작업환경 개선’으로 전체 응답지의 16.6%였음. ‘작업장 환경 개선’ 외에 10%대 선택을 받은 예방 조치는 ‘안전교육’ (15.4%), ‘스스로 조심하기’(13.7%), ‘안전장비 지급 및 착용’(12.5%), ‘적절한 휴식 시간 및 휴가보장’ (10.9%) 등이 포함됨.
- 그 다음 응답률은 ‘자유로운 사업장 이동’ 7.5%, ‘사업장 내 외국인 차별 철폐’ 6.5%, ‘숙련된 한국어 습득’ 5.6%, ‘노동조합의 결성’ 3.0% 등의 순이었음.(표Ⅲ-69), (그림Ⅲ-22)

<표Ⅲ-69> 외국인노동자 산재예방에 필요한 조치(중복응답)

내용	빈도(%)
작업환경 개선	110(16.6)
안전교육	102(15.4)
스스로 조심하기	91(13.7)
안정장비 지급 및 착용	83(12.5)
적절한 휴식 시간 및 휴가 보장	72(10.9)
적절한 근로시간	55(8.3)
자유로운 사업장 이동	50(7.5)
사업장 내 외국인 차별 철폐	43(6.5)
숙련된 한국어 습득	37(5.6)
노동조합의 결성(사업장 내 노동자단체 구성)	20(3.0)
전체	663(100)

<그림Ⅲ-22> 외국인노동자 산재예방에 필요한 조치(중복응답)



- 중복 응답을 허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산재 피해 당사자가 제안하는 산재 예방책이 한국인 전문가들이 제안하는 내용과 상이하다는 점에 주목할 수 있어야 함.

- 한국의 보수적인 전문가 집단이 제안하는 한국어 습득은 5.5%에 불과했고, 진보적인 전문가 집단이 제안하는 자유로운 사업장 이동, 사업장 내 외국인 차별 철폐, 노동조합의 결성(노동자 권력기관의 조직화) 등도 10%에 못 미치는 비교적 낮은 선택지로 평가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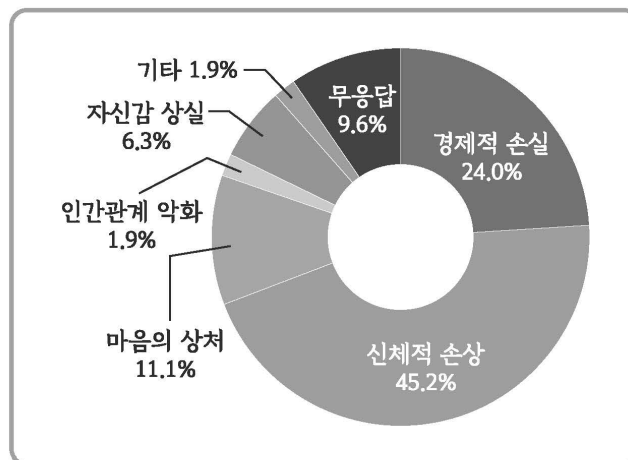
○ 산재를 당했을 때 곧 업무 중 사고로 다쳤거나 병에 걸렸을 때 해당 노동자가 감내해야 하는 손실에 대해 질문함.

- 신체적 손상이 압도적인 비율로 1위(90명, 45.2%)를 차지함. 그 다음으로는 경제적 손실(50명, 24.0%), 마음의 상처(23명 11.1%), 자신감 상실(13명, 6.3%), 인간관계 악화(4명, 1.9%) 등의 순이었음.(표Ⅲ-70), (그림Ⅲ-23)

<표Ⅲ-70> 산재로 인한 가장 큰 손실

	경제적 손실	신체적 손상	마음의 상처	인간관계 악화	자신감 상실	기타	무응답	합계
빈도(%)	50(24.0)	94(45.2)	23(11.1)	4(1.9)	13(6.3)	4(1.9)	20(9.6)	208(100)

<그림Ⅲ-23> 산재로 인한 가장 큰 손실



- 여기서 주목해야 하는 것은 신체적 손상과 경제적 손실 이외의 선택지임. 이 두 가지는 익히 알려져 있는 산재로 인한 전형적인 손실의 내용이며, 이러한 통념에 근거하는 경우는 산재 처리는 이 두 가지 손실의 보전(신체적 치료 및 경제적 손실의 보상)에 제한되게 됨.

- 그러나 이번 조사를 통해 산재는 피해 당사자에게 단지 신체와 경제적 손실을 넘어 ‘마음’과 ‘자신감’, ‘인간관계’ 등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총체적이며 생애사적인 사건이라는 점이 확인됨. 이런 점에서 산재 피해로부터의 회복은 단지 기술적인 치료와 보상을 넘어서서 심리적인 레질리언스와 사회관계의 복원으로까지 확장될 수 있어야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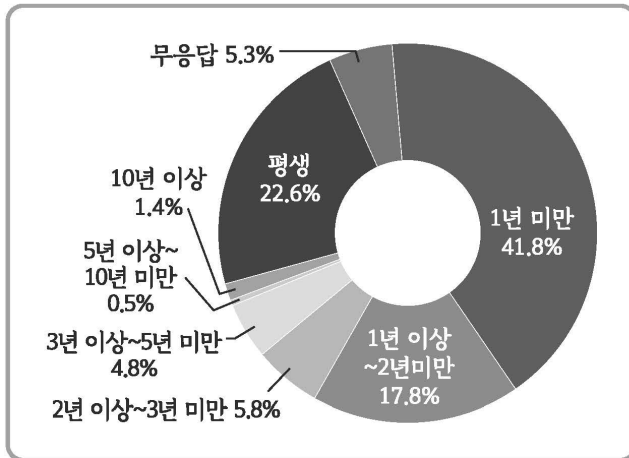
○ 산재 사고나 질병의 종합적인 영향력을 파악해보기 위하여 업무 중 사고로 다쳤거나 병에 걸린 경험의 영향력의 지속 기간에 대해 질문함.

- 1년 미만이라고 응답한 노동자가 전체의 41.8%인 87명이었고, 평생이라고 응답한 노동자가 47명(22.6%)으로 두 번째로 많았음. 그 다음이 1년 이상 2년 미만(37명, 17.8%), 2년 이상 5년 미만(10명, 4.8%) 등의 순이었음.(표Ⅲ-71), (그림Ⅲ-24)

<표Ⅲ-71> 산재로 인한 영향 지속 예상 기간

	1년 미만	1년 이상~ 2년 미만	2년 이상~ 3년 미만	3년 이상~ 5년 미만	5년 이상~ 10년 미만	10년 이상	평생	무응답	합계
빈도(%)	87(41.8)	37(17.8)	12(5.8)	10(4.8)	1(0.5)	3(1.4)	47(22.6)	11(5.3)	208(100)

<그림Ⅲ-24> 산재로 인한 영향 지속 예상 기간



- 전반적으로는 업무상 재해로 인한 영향이 2년 미만인 경우가 약 60% 정도로 다수이지만 10년 이상 또는 평생이라고 응답한 비율도 약 24%로 결코 적지 않다는 점에 주목할 수 있어야 함.

8. 산재 보험 신청 여부에 따른 차이

1) 산재보험 신청 요인에 관한 회귀분석

- 산재보험 신청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하여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함.
- 한국 거주기간과 사업장 규모는 산재보험 신청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확인 됨. 성별, 연령집단, 한국어 수준, 사업장 근무기간, 체류 기간은 산재 신청 여부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발견되지 않았음.
 - 한국 거주기간의 경우 5년 이상 된 집단의 산재신청율이 거주기간이 짧은 다른 집단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남. 5년 이상 된 집단의 산재 신청율에 비해 3년에서 5년 거주한 산재 집단의 산재보험 신청율은 0.27배 낮은 것으로 나타남. 1년 미만 거주한 집단의 경우는 5년 이상 된 집단에 비해 산재를 신청할 확률이 0.25배 낮은 것으로 나타남.
 - 사업장 규모의 경우 50인 이상인 사업장에 비하여 30명에서 49명 규모의 사업장에서 산재보험을 신청할 확률이 4.41배 높은 것으로 나타남. 그 이외의 집단 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음.(표Ⅲ-72)

<표Ⅲ-72> 산재보험신청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로지스틱회귀분석

독립변인		B	Exp(B)
성별		0.28	1.33
연령집단		0.12	1.13
한국어 수준		0.20	1.22
사업장 근무기간		-0.20	0.82
거주기간	1년 미만	-1.39*	0.25
	1년~3년	-0.43	0.65
	3년~5년	-1.31**	0.27
체류자격	체류자격(E-9)	0.57	1.77
	체류자격(H-2)	-0.93	0.39
	체류자격(기타)	-0.08	0.92
사업장규모	사업장규모(5명 미만)	-0.44	0.65
	사업장규모(5명~9명)	-0.06	1.06
	사업장규모(10명~29명)	-0.13	1.14
	사업장규모(30명~49명)	-1.48*	4.41
상수항		-0.33	0.72

*p <.05, ** p <.01

- 상대적으로 한국 거주기간이 긴 집단의 산재신청율이 높은 것은 그들이 공상이나 개별적인 산재 처리보다는 공식적인 산재보상보험 제도를 이용하는 것의 장점에 대해 보다 풍부한 정보를 가지고 있을 개연성과 관련 있을 것으로 추론됨.
- 사업장 규모와 관련 분석 결과는 30명 이하의 소규모이거나 50명 이상의 대규모 사업장에 비해 30명에서 49명 정도의 중간 규모 사업장인 경우 산재보험신청이 가장 용이하다는 것을 시사함. 이에 대해서는 경험적인 추가 조사가 요청됨.

2) 산재 치료비 부담 유형별 특성 비교 분석

- 산재보험 신청자와 산재미신청 공상처리자(사업주가 치료비를 전액 또는 일부 부담한 경우)와 본인이 부담을 한 노동자 등 세 집단으로 구분하여 집단별 특성을 비교 분석함.
- 체류 유형별 치료비 부담 방식을 비교해보면 몇 가지 차이가 나타남.
 - 비전문취업(E-9)비자를 지닌 경우 산재보험 신청자가 가장 많았고 본인 부담자의 비율이 가장 낮았음.
 - 방문취업(H-2)비자의 경우는 공상처리자가 가장 많았고 다음이 산재보험 신청자였으며 본인부담자가 가장 낮았음.
 - 미등록 체류자의 경우는 산재보험 신청자와 본인부담자가 37%로 동일한 수준이었고 공상처리자가 25.9%로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남.(표Ⅲ-73)

<표Ⅲ-73> 비자(VISA)유형별 산재치료비 처리현황

	산재보험신청자	공상처리자	본인부담자	전체
E-9(비전문취업)	55(50.5)	31(28.4)	23(21.1)	109(100)
H-2(방문취업)	6(27.3)	14(63.6)	2(9.1)	22(100)
E-7(특정활동)	2(50.0)	2(50.0)	-	4(100)
F-2(거주)	-	5(83.3)	1(16.7)	6(100)
F-4(재외동포)	4(40.0)	5(50.0)	1(10.0)	10(100)
F-6(결혼이민)	2(100)	-	-	2(100)
G-1(기타)	4(100)	-	-	4(100)
미등록	10(37.0)	7(25.9)	10(37.0)	27(100)
기타	7(53.8)	3(23.1)	3(23.1)	13(100)
전체	90(45.7)	67(34.0)	40(20.3)	197(100)

무응답자 제외

- 특정활동(E-7)비자의 경우 4명 밖에 되지 않아서 비율을 언급하는 것은 의미는 없으나 산재보험 신청자와 공상처리자가 각각 2명씩이었음.

- 거주(F-2)비자의 경우 공상처리자가 대부분이었고 본인부담자가 1명이었음. 결혼이민자(F-6)나 기타(G-1)비자의 경우는 각각 2명과 4명이었는데 두 경우 모두 산재보험을 신청한 것으로 나타남.

○ 산재 치료비 부담 유형(산재보험신청, 공상처리, 본인부담)의 성별 차이를 분석함.

- 남성의 경우는 산재보험신청자와 공상처리자가 각각 46.7%와 37.6%로 많았고 본인 부담자는 15.8%로 상대적으로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남.
- 이에 반해 여성의 경우는 본인부담자가 48.3%로 가장 많았음. 산재보험신청자는 34.5%였으며 공상처리자는 17.2%로 상대적으로 가장 낮은 비율이었음.(표Ⅲ-74)

<표Ⅲ-74> 성별 산재치료비 부담현황

	산재보험신청자	공상처리자	본인부담자	전체
남자	77(46.7)	62(37.6)	26(15.8)	165(100)
여자	10(34.5)	5(17.2)	14(48.3)	29(100)
전체	87(44.8)	67(34.5)	40(20.6)	194(100)

무응답자 제외

- 여성노동자의 모집단이 29명에 불과해 일반화하기에는 무리가 따르나 산재신청율의 경우 여성노동자가 남성노동자에 비해 10% 이하 낮고, 공상처리의 경우는 20% 이하 낮는데 반해 본인부담율은 무려 30% 이상 높다는 것은 산재피해자의 권리 구제 과정에서 성적 차별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의구심을 갖기에 충분한 결과임.
- 분석 결과는 여성노동자는 남성노동자에 비해 산재보험 접근성이 취약하고 사업주로부터 보상을 받을 개연성은 더욱 낮으며, 산재임에도 불구하고 사후 처리를 스스로 감내해야 하는 확률은 남성노동자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다는 것을 뜻함.

○ 연령별 치료비 부담 유형(산재보험신청, 공상처리, 본인부담)을 비교분석함.

- 20대 이하의 젊은 연령층의 경우 산재보험을 신청한 사람이 가장 많았고 본인부담자가 두 번째로 많았으며 공상처리자가 가장 적었음.
- 30대의 경우는 산재보험 신청자와 공상처리자가 거의 같은 수준으로 많았으며 본인부담자는 그 두 가지 유형에 비해 1/2이하로 적게 나타남.

- 40대 이상의 경우는 이러한 경향성이 더 강하게 나타나 산재보험 신청자가 가장 많고 그와 유사한 수준으로 공상처리자가 많았으며 본인부담자의 비율은 그 두 가지 유형의 1/6에서 1/7 수준으로 낮게 나타남.(표Ⅲ-75)

<표Ⅲ-75> 연령별 산재치료비 부담현황

연령집단	산재보험신청자	공상처리자	본인부담자	전체
20대 이하	34(47.9)	14(19.7)	23(32.4)	71(100)
30대	36(42.4)	35(41.2)	14(16.5)	85(100)
40대 이상	19(47.5)	18(45.0)	3(7.5)	40(100)
전체	89(45.4)	67(34.2)	40(20.4)	196(100)

무응답자 제외

- 조사 결과 30대와 40대의 경우는 산재보험이나 공상처리로 해결을 하는 비율이 20대에 비해 높고, 낮은 연령대일수록 본인이 부담하는 비율이 높아지는 경향성이 있음이 확인됨.
- 한국 거주기간별로 치료비 부담 유형(산재보험신청, 공상처리, 본인부담)에 유의미한 차이가 존재하는지 분석함.
- 산재보험 신청자 중에는 5년 이상 거주한 사람이 가장 많고, 1년 이상 3년 미만인 노동자가 두 번째로 많았으며 1년 미만인데 산재보험을 신청한 사람은 10%도 되지 않았음.
 - 공상처리자의 경우 5년 이상 된 노동자들이 가장 많았고 1년 이상 3년 미만인 집단과 3년 이상 5년 미만인 집단이 각각 유사한 수준이었으며, 1년 미만인 집단이 가장 낮았음.
 - 본인이 치료비를 부담한 경우는 3년 이상 5년 미만인 집단이 가장 많았고 다음이 1년 미만 또는 1년 이상 3년 미만인 집단이 유사한 수준이었으며 5년 이상 한국에 거주하였으나 본인이 부담한 경우는 가장 비율이 낮았음.(표Ⅲ-76)

<표Ⅲ-76> 산재치료비 부담유형별 거주기간

거주기간	산재보험신청자	공상처리자	본인부담자	전체
1년 미만	8(28.6)	10(35.7)	10(35.7)	28(100)
1년 이상 3년 미만	27(52.9)	16(31.4)	8(15.7)	51(100)
3년 이상 5년 미만	17(34.0)	17(34.0)	16(32.0)	50(100)
5년 이상	38(56.7)	23(34.3)	6(9.0)	67(100)
전체	90(45.9)	66(33.7)	40(20.4)	196(100)

무응답자 제외

- 분석 결과 대체로 거주기간이 오래된 노동자일수록 산재보험을 신청하거나 공상처리를 하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이에 반해 거주기간 1년 미만 집단은 본인부담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5년 이상 비교적 한국 사회에 장기간 거주한 집단의 본인 부담율이 가장 낮았음.

○ 한국어 능력 차이별로 치료비 부담 유형(산재보험신청, 공상처리, 본인부담)을 비교 분석함. 한국어 능력에 따른 치료비 부담에 있어서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확인되지 않았음.(표Ⅲ-77)

<표Ⅲ-77> 산재치료비 부담유형별 한국어 능력

한국어 능력	산재보험신청자	공상처리자	본인부담자	전체
거의 못함	10(30.3)	11(33.3)	12(36.4)	33(100)
업무에 필요한 최소한의 대화만 가능	38(49.3)	25(32.5)	14(18.2)	77(100)
일상생활이나 업무에 필요한 대화가 어느 정도 가능	26(44.1)	20(33.9)	13(22.0)	59(100)
거의 모든 내용 이해	14(60.9)	9(39.1)	-	23(100)
전체	88(45.8)	65(33.9)	39(20.3)	192(100.0)

무응답자 제외

- 이것은 한국어를 잘한다고 해서 산재시 보험신청을 할 가능성이 높거나 본인부담의 비율이 낮은 것은 아니라는 것을 시사함. 경험적으로 업무에 필요한 최소한의 대화가 가능한 정도의 의사소통 능력이면 산재보험을 신청할 수 있으므로 한국어

능력과 산재보험신청 여부 사이에 강한 상관관계는 없을 수도 있음.

- 그러나 한국어로 거의 모든 내용을 이해하는 집단의 경우 무려 60.9%가 산재를 신청한 반면 한국어를 거의 못하는 집단의 경우 본인부담의 비율이 산재신청이나 공상처리 비율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한국어 소통 능력이 치료비 부담에 전혀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고 단정짓기는 어려움.

○ 산재시 사업장의 규모에 따른 치료비 부담 유형(산재보험신청, 공상처리, 본인부담)의 차이를 비교 분석함.

- 5인 미만 사업장과 50인 이상 사업장의 산재보험 신청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남. 이 두 사업장의 본인부담율은 다른 규모의 사업장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산재보험 신청율이 가장 높은 사업장은 30인-49인 규모의 사업장으로 샘플의 규모가 적어 일반화하기에는 무리가 따르나 산재보험 신청율이 68.2%로 다른 규모 사업장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은 수준을 나타냄.(표Ⅲ-78)

<표Ⅲ-78> 산재치료비 부담유형별 근무당시 사업장 규모

사업장 규모	산재보험신청자	공상처리자	본인부담자	전체
5인 미만	15(36.6)	16(39.0)	10(24.4)	41(100)
5인~9인	23(45.1)	18(35.3)	10(19.6)	51(100)
10인~29인	26(46.4)	19(33.9)	11(19.6)	56(99.9)
30인~49인	15(68.2)	4(18.2)	3(13.6)	22(100)
50인 이상	9(39.1)	9(39.1)	5(21.7)	23(99.9)
전체	88(45.6)	66(34.2)	39(20.2)	193(100)

무응답자 제외

- 이러한 분석 결과는 사업장 규모와 산재신청율 사이의 정의 상관관계가 있지 않다는 것을 보여줌. 소규모 사업장과 상대적으로 가장 대규모 사업장의 산재 신청율이 중간 규모 사업장에 비해 낮게 나타난 이유와 관련해서는 추가적인 분석이 필요해 보임.

○ 산재시 사업장 근속 기간에 따른 치료비 부담 유형(산재보험신청, 공상처리, 본인부담)

답)을 비교분석함.

- ‘6개월 미만’이었다고 응답한 경우에 산재보험 신청자가 가장 많았고 다음이 공상처리자, 본인부담자 순이었음.
- ‘6개월에서 1년 미만’이었던 집단과 ‘1년 이상 3년 미만’이었던 집단의 경우 산재보험 신청자의 비율이 50%가 넘는 것으로 나타나 근무기간이 ‘6개월 이상 3년 미만’인 시기에 산재보험을 신청하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3년 이상 근무했었다’라고 응답한 집단의 경우는 공상처리자의 비율이 약간 높았으나 산재보험신청자와 거의 유사하였고 본인부담자의 비율은 가장 낮았음.(표Ⅲ-79)

<표Ⅲ-79> 사고당시 근무기간별 산재치료비 부담 현황

사고당시 근무기간	산재보험신청자	공상처리자	본인부담자	전체
6개월 미만	23(39.0)	22(37.3)	14(23.7)	59(100)
6개월~1년 미만	15(50.0)	9(30.0)	6(20.0)	30(100)
1년 이상~3년 미만	36(52.9)	18(26.5)	14(20.6)	68(100)
3년 이상	14(40.0)	16(45.7)	5(14.3)	35(100)
전체	88(45.8)	65(33.9)	39(20.3)	192(100)

무응답자 제외

- 분석 결과는 근속 기간과 산재보험 신청을 사이에 정의 상관관계가 있지 않다는 것을 보여줌. 반면 근속기간은 본인부담율을 낮추는 데에는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추론됨.

○ 산재 경험자의 치료비 부담유형에 따른 치료 및 요양기간의 차이를 비교 분석함.

- 본인 부담자의 경우 다른 경우보다 요양기간이 매우 짧은 것으로 나타남. 그에 비해 산재보험 신청자와 공상처리자는 요양 기간이 15일에서 3개월에 이르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특히 산재보험 신청자의 경우는 6개월 이상 요양을 한 비율이 20.5%로 본인부담자의 거의 3배, 공상처리자의 2배에 달함.(표Ⅲ-80)

<표Ⅲ-80> 산재치료비 부담유형별 요양기간

요양기간	산재보험신청자	공상처리자	본인부담자	전체
1일~3일	16(20.5)	11(18.0)	14(42.4)	41(23.8)
4일~7일	5(6.4)	12(19.7)	9(27.3)	26(15.1)
8일~14일	4(5.1)	7(11.5)	1(3.0)	12(7.0)
15일~28일	12(15.4)	10(16.4)	4(12.1)	26(15.1)
29일~90일	17(21.8)	13(21.3)	1(3.0)	31(18.0)
91일~180일	8(10.3)	4(6.6)	1(3.0)	13(7.6)
6개월 이상	16(20.5)	4(6.6)	3(9.1)	23(13.4)
전체	78(100)	61(100)	33(100)	172(100)

무응답자 제외

- 이러한 분석 결과는 보험료나 치료비를 제공받을 수 있는 경우 비교적 충분한 치료와 요양을 할 수 있는 반면 본인이 부담을 해야 하는 경우는 짧은 기간에 치료를 종결해야만 한다는 것을 시사함.
 - 더불어 비교적 장기간 치료와 요양을 요하는 산재를 당했을 때 산재보험을 신청하거나 공상처리를 하는 경향성이 높을 수 있다는 해석도 가능함.
- 산재시 치료비 부담유형별로 치료 및 요양 종결 후 계속 노동 여부의 차이를 분석함.
- 세 범주 모두 전반적으로 산재 치료와 요양이 종결된 후에도 계속해서 일을 하고 있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산재보험 신청자에 비해 공상처리자나 본인부담자의 경우 일하는 비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남. 이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분석이 필요해 보임.(표Ⅲ-81)

<표Ⅲ-81> 산재치료비 부담유형별 치료/요양 종결 후 노동 여부

	산재보험신청자	공상처리자	본인부담자	전체
예	54(76.1)	49(89.1)	26(89.7)	129(83.2)
아니오	17(23.9)	6(10.9)	3(10.3)	26(16.8)
전체	71(100.0)	55(100.0)	29(100.0)	155(100.0)

무응답자 제외

- 치료 및 요양 종결 후 계속 노동을 하고 있다고 응답한 산재 경험 외국인 노동자를 대상으로 산재사고 당시 사업장과 현재 사업장의 동일성 여부를 확인함.
 - 응답자의 70%는 사고가 났던 사업장으로 복귀하는 것으로 나타남. 산재보험 신청자의 경우 공상처리자나 본인부담자보다 산재 경험 사업장으로 복귀하는 비율이 다소 낮은 것으로 나타남.
 - 공상처리자와 본인부담자를 비교해 보면 본인이 부담한 집단이 공상처리 집단에 비해 산재 경험 사업장으로 복귀하는 비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남.(표Ⅲ-82)

〈표Ⅲ-82〉 산재치료 후 산재작업장 복귀 여부

	산재보험신청자	공상처리자	본인부담자	전체
예	40(59.7)	38(74.5)	25(83.3)	103(69.6)
아니오	27(40.3)	13(25.5)	5(16.7)	45(30.4)
전체	67(100)	51(100)	30(100)	148(100)

※ 무응답자 제외

- 위의 세 가지 분석(치료 및 요양기간, 산재 이후 계속 노동 여부 및 사고 사업장 복귀 여부) 결과는 본인부담 집단이 산재 처리 과정에서 경험하는 어려움이 타집단에 비해 매우 심각하다는 것을 시사함.
 - 본인 부담자의 경우 타집단에 비해 치료 및 요양 기간은 매우 짧으며, 계속 노동과 사고 사업장 복귀 비율은 매우 높게 나타나는데, 이러한 현상이 자유의지의 산물이라기보다는 강제되었을 개연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임.
- 치료 및 요양이 종결된 후 일을 중단한 산재 피해 노동자를 대상으로 일을 중단한 이유를 파악함.
- 신체적 후유증 때문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전체적으로 가장 높았는데, 각 유형별로 응답률에서는 다소 차이가 있었으나 그러한 차이를 유의미하게 만들만큼 응답자의 규모 자체가 크지 않아서 경향성을 부여하기에는 무리가 따름.(표Ⅲ-83)

<표Ⅲ-83> 산재치료비 부담유형별 일을 시작하지 않은 가장 큰 이유

	산재보험신청자	공상처리자	본인부담자	전체
신체적 후유증	8(27.6)	9(64.3)	2(33.3)	19(38.8)
정신적 후유증(두려움 및 의욕상실)	7(24.1)	-	-	7(14.3)
재해 사업장 사용주의 복귀 거부	3(10.3)	4(28.6)	1(16.7)	8(16.3)
재취업 정보 부족	3(10.3)	-	-	3(6.1)
본국 귀환 준비	1(3.4)	-	-	1(2.0)
기타	7(24.1)	1(7.1)	3(50.0)	11(22.4)
전체	29(100)	14(100)	6(100)	49(100)

무응답자 제외

- 산재시 주관적으로 판단하는 가장 큰 손실에 대해 치료비 부담유형에 따라 살펴봄.
 - 산재보험 신청자와 공상처리자의 경우 ‘신체적 손상’을 가장 큰 손실로 선택함. 이에 반해 본인이 부담한 경우는 ‘경제적 손실’을 가장 큰 손실이라고 응답한 노동자가 가장 많았고, ‘신체적 손상’은 그 다음이었음.(표Ⅲ-84)

<표Ⅲ-84> 산재치료비 부담유형별 산재의 가장 큰 손실에 대한 인식

	산재보험신청자	공상처리자	본인부담자	전체
경제적 손실	14(17.9)	17(26.6)	17(44.7)	48(26.7)
신체적 손상	42(53.8)	32(50.0)	16(42.1)	90(50.0)
마음의 상처	9(11.5)	11(17.2)	2(5.3)	22(12.2)
인간관계 악화	2(2.6)	2(3.1)	-	4(2.2)
자신감 상실	9(11.5)	2(3.1)	1(2.6)	12(6.7)
기타	2(2.6)	-	2(5.3)	4(2.2)
전체	78(100.0)	64(100.0)	38(100.0)	180(100.0)

무응답자 제외

- 산재시 치료비 부담 유형에 따라 산재의 지속기간에 대한 인식수준이 다른지 비교 분석함.
 - 치료비 부담 유형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산재 지속기간에 대한 인식 수준은 거의 유사한 것으로 나타남.(표Ⅲ-85)

<표Ⅲ-85> 산재치료비 부담유형별 산재 영향 지속 예상기간

	산재보험신청자	공상처리자	본인부담자	전체
1년 미만	30(35.7)	33(50.8)	18(45.0)	81(42.9)
1년 이상~2년 미만	16(19.0)	13(20.0)	7(17.5)	36(19.0)
2년 이상~3년 미만	5(6.0)	2(3.1)	5(12.5)	12(6.3)
3년 이상~5년 미만	1(1.2)	5(7.7)	4(10.0)	10(5.3)
5년 이상~10년 미만	1(1.2)	-	-	1(0.5)
10년 이상	3(3.6)	-	-	3(1.6)
평생	28(33.3)	12(18.5)	6(15.0)	46(24.3)
전체	84(100)	65(100)	40(100)	189(100)

무응답자 제외

○ 산재시 치료비 부담유형별로 사고당시 주거지가 다른지 비교 분석함.

- 분석 결과 유형별 양상은 거의 유사했는데 세 유형 모두 산재 사고 당시 사업장 기숙사에서 거주했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자기집이었음.(표Ⅲ-86)

<표Ⅲ-86> 산재치료비 부담유형별 산재치료시 주거지(중복응답)

	산재보험신청자	공상처리자	본인부담자	전체
자기집	29(36.7)	25(41.0)	14(43.8)	68
사고(질병) 당시 사업장 기숙사	32(40.5)	32(52.5)	15(46.9)	79
친구나 아는 사람의 집	10(12.7)	4(6.6)	2(6.2)	16
친구의 직장 기숙사	6(7.6)	1(1.6)	1(3.1)	8
쉼터	4(5.1)	2(3.3)	2(6.2)	8
기타	2(2.5)	-	1(3.1)	3
전체	79	61	32	172

무응답자 제외

- 산재시 치료비 부담유형에 따라 산재 예방을 위한 조치에 대한 인식이 다른지 중복 응답을 통해 비교 분석해 봄.
 - 유형별로 전반적인 양상은 크게 다르지 않았는데 작업환경 개선이 가장 중요하다고 응답한 노동자들이 가장 많았음.
 - 본인부담자의 경우 작업환경 개선의 문제가 중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다른 집단에 비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산재보험신청자의 경우 안전교육의 중요성을 선택한 비율이 다른 집단에 비해 약간 높은 것으로 나타남.(표Ⅲ-87)

<표Ⅲ-87> 산재치료비 부담유형별 산재 예방 조치에 대한 인식(중복응답)

	산재보험신청자	공상처리자	본인부담자	전체
작업환경 개선	43(50.6)	35(52.2)	27(67.5)	105
자유로운 사업장 이동	23(27.1)	14(20.9)	13(32.5)	50
적절한 휴식시간 및 휴가 보장	28(32.9)	23(34.3)	17(42.5)	68
사업장 내 외국인 차별 철폐	18(21.2)	13(19.4)	11(27.5)	42
안전교육	51(60.0)	30(44.8)	18(45.0)	99
안전장비 지급 및 착용	39(45.9)	23(34.3)	16(40.0)	78
숙련된 한국어 습득	15(17.6)	13(19.4)	7(17.5)	35
스스로 조심하기	38(44.7)	32(47.8)	17(42.5)	87
적절한 근로시간	18(21.2)	18(26.9)	16(40.0)	52
노동조합의 결성	10(11.8)	7(10.4)	3(7.5)	20
전체	85(100)	67(100)	40(100)	192

무응답자 제외

- 산재시 치료비 부담 유형에 따라 산재 원인을 다르게 추정하는지 비교 분석함.
 - 산재보험 신청 노동자의 경우 안전관리소홀을 원인으로 인식한 수준에서 다른 두 집단에 비해 높은 평균값을 보였음.
 - 열악한 근무환경을 산재의 원인으로 인식하는 경우는 산재보험 신청자와 본인부담자가 공상처리자에 비해 높은 평균값을 보임.(표Ⅲ-88)

<표Ⅲ-88> 산재치료비 부담유형별 산재 원인에 대한 인식차이

	산재보험신청자	공상처리자	본인부담자	F
안전관리 소홀	2.50(0.93)a	2.11(0.93)b	2.19(0.70)ab	3.71*
열악한 근무환경	2.26(0.77)a	1.93(0.71)b	2.36(0.64)a	5.52**
한국사회 부적응	2.07(0.81)	1.76(0.74)	1.91(0.72)	2.99
직장내차별 및 폭행	1.96(0.75)	1.80(0.68)	2.02(0.76)	1.28

* p<.01, ** p<.01, Duncan: a>b

○ 산재시 치료비 부담 유형에 따라 산재 종결 후 경험한 어려움에 차이가 있는지 비교 분석함.

- ‘산재 종결 후 후유증상 치료 및 재요양이 필요하였다’는 문항에서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관측됨. 본인부담자의 평균값이 가장 높았고 공상처리자, 산재 보험 신청자의 순이었음.
- 그 외 문항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의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음.(표Ⅲ-89)

<표Ⅲ-89> 산재치료비 부담유형별 산재 후 어려움

	산재보험신청자	공상처리자	본인부담자	F
산재 종결 후 후유증상 치료 및 재요양이 필요하였다	2.25(1.00)b	2.56(0.88)ab	2.82(0.81)a	4.88**
공단에서 후유 증상 치료나 재요양 승인을 받는 것이 어려웠다	2.68(0.95)	2.81(1.04)	2.67(0.99)	0.35
장해보상 신청방법을 몰라 어려움을 겪었다	2.34(1.02)	2.37(1.08)	2.39(0.97)	0.04
장해보상금이 너무 적은 것 같다	2.48(1.05)	2.49(1.05)	2.70(1.06)	0.54
사업주가 치료 종결 후 재해 원인에 대한 아무런 조치 없이 사업장에 복귀하여 동일업무를 하라고 했다	2.65(1.02)	2.57(1.02)	2.58(0.90)	0.13

* p<.01, ** p<.01, Duncan: a>b

IV. 면접 조사 결과

1. 면접 조사 개요
2. 산재 사업장과 노동 환경
3. 산재 유형과 산재 신청 경로
4. 산재 처리 과정의 또 다른 어려움들

1. 면접 조사 개요

- 총 10명의 산재 피해 외국인 노동자를 대상으로 면접 조사가 이루어짐.
 - 면접 조사는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의 네트워크 기관의 적극적인 협조로 이루어짐.
 - 조사는 네트워크 기관을 통한 면접자 소개 및 섭외, 면접 장소 및 시간 확정, 통역인 섭외, 면접 조사자들 사이의 면접 조사 지침 공유 등의 방식으로 진행됨.
 - 면접에는 이번 조사의 공동 연구자 조사원으로 직접 참여함. 10개의 사례 모두에 통역원이 함께 함. 각 사례당 면접 시간은 대략 한 시간 정도씩 소요됨.
 - 면접 조사를 통해 사업장 개요, 노동 환경, 산재 경위, 산재 이후 경위, 치료 및 요양 이후의 상황 등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들을 얻어냄.

- 면접 조사 대상자는 설문 조사 결과를 보완해 줄 수 있는 정보를 주실 수 있을 만한 분들로 특정함.
 - 업무상질병자, 고용허가제 노동자 중 산재 처리과정에서 직장이동문제가 이슈가 된 경우, 파견업체 노동자, 산재 입증문제로 어려움을 겪은 노동자(사업장에서의 비협조 등으로 입증이 어려웠던 경우 등), 고용허가제(E-9)나 방문취업제(H-2) 이외의 비자를 가진 외국인 노동자(결혼이민자, 미등록 체류자), 제조업체 이외의 사업장 노동자 등이 면접 대상자로 포함됨.(표VI-1)

<표IV-1> 케이스별 면접 대상자

유형	면접 대상자
업무상 질병	사례 2, 사례 9
산재 처리과정에서 직장 이동 이슈	사례 4, 사례 5
파견업체 노동자	사례 6
산재 입증의 어려움	사례 2, 사례6, 사례7
노동 비자 이외의 비자 소지자	사례1, 사례2, 사례3, 사례8
제조업 이외의 사업장	사례 6, 사례 10

- 조사에 참여한 외국인 노동자 산재 피해자 10명의 국적은 모두 달랐음. 러시아, 중국, 방글라데시, 몽골, 키르기스스탄, 우즈베키스탄, 네팔, 나이지리아, 베트남, 캄보디아 출신의 외국인 노동자 산재 피해자가 이번 면접 조사에 참여함.
- 성별은 남녀 각각 50%였으며 E-9과 H-2와 미등록을 포함한 노동 비자 소지자가 7명이었고 기타 비자 소지자가 3명이었음.

○ 면접 조사에 참여한 외국인 노동자 산재피해자 10명 가운데 산재 신청자는 8명이었음.

- 사업주가 산재 신청에 초기부터 조력한 경우는 단 한 건에 그침. 그 경우도 사업주는 치료비를 급여에서 불법적으로 공제하려 시도함.(표VI-2)

<표IV-2> 면접 조사 외국인 산재 피해자 개요

번호	성별	나이	국적	비자	내용	산재 신청 여부
사례1	여	36	러시아	F4	손가락 화상	지원단체가 신청
사례2	여	51	중국	F5	손가락 통증과 마비	지원 개인이 신청
사례3	남	29	방글라데시	F2	다리골절	공상처리
사례4	남	30	몽골	E9	손가락 절단	지원단체 요청으로 신청
사례5	남	22	키르기스스탄	E9	손가락 끼임	지원단체가 신청
사례6	남	35	우즈베키스탄	H2	다리 화학물질 노출	산재미적용 사업장
사례7	여	27	네팔	E9	새끼손가락부분절단	지원단체가 신청
사례8	남	45	나이지리아	미등록	손가락 끼임	병원이 신청
사례9	여	32	베트남	E9	방아쇠수지	지원단체가 신청
사례10	여	22	캄보디아	E9	손가락 끼임	사업주 신청 (병원비 급여공제강제)

2. 산재 사업장과 노동 환경

1) 산재 사업장

- 면접에 참여한 외국인 노동자 산재 피해자들이 산재 당시 일했던 사업장에 대해 알아봄. 분야는 제조업체 8곳, 농업 1곳, 건설현장 1곳이었음.
 - 제조업은 자동차용 엔진제조, 자동차 부품 제조, 환풍기 제작, 종이봉투 제작, 비닐봉투 제작, 섬유 제조, 닭가공업체 등이 포함됨.
 - 농업 분야는 벼짓농장이었음. 건설현장은 공사비 2천만 원 이하의 소규모 현장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 미적용 사업장이었음.
 - 직원 규모가 2백 명 이상인 자동차 부품 제조 회사 한 곳을 제외하면 직원 규모 20명 이하의 소규모 업체가 6곳, 40여명 정도의 업체가 3곳이었음.

2) 산재 사업장의 노동 환경

- 산재 피해를 경험한 면접자의 사업장 환경은 노동조건, 기계작동에 대한 교육과 정보 전달, 안전장구 지급 등에 있어서 공통적으로 매우 열악한 것으로 확인됨.
- 대부분의 사업장이 11시간 내지 12시간 노동이 기본이었음. 휴무일은 한 달에 하루 이틀 정도에 그침.
 - “1달에 2일 쉬는데, 휴일이 일정하지 않아요. 제가 쉬고 싶을 때 반장(스리랑카 미등록)에게 얘기해서 쉬는데, 일이 많을 때는 쉬지 말라고 하거나 반일만 쉬라고 해요. 한 달에 하루도 못 쉬 적도 있어요.” (사례10)
- 그런 상태에서 단순 반복 작업과 규정 이외의 초과 작업이 이루어지나, 기계 작동에 대한 제대로 된 교육이나 정보 전달 없이 평소 다뤄본 적 없는 작업 기계에 갑자기 배치됨.
 - “단단한 소재 끝 갈라진 것 하나씩 땀질하는 작업을 했어요. 원래는 하나씩 나누어서 해야 하는 건데 그걸 한꺼번에 세 개씩 하라고 해서 그렇게

해야만 했어요.” (사례2)

“공식적으로 리프트에 대한 안전교육은 없고. 선임자가 작동법 정도 알려주고 나머지는 질문해야 알려줘요.” (사례10)

“사고 당일 원래 하던 일이 아니라 1번 작업을 마친 원단을 2번 기계 쪽으로 넘기는 작업을 처음 하게 됐어요. 1번 작업을 끝내고 내려오는 원단을 잡으려고 손을 위로 올렸는데 롤링을 푸는 기계와 엔진을 잇는 모터에 손이 빨려 들어갔어요(왼손 2-5번째 손가락).” (사례8)

“평소 하던 기계가 아니고, 다른 기계(조금 두꺼운 봉투를 만드는 기계)를 작동하라는 관리자 지시로 다른 기계를 작동하게 됐어요. 기계에 비닐 자르는 칼날이 있는데 그걸 닦다가 칼에 오른쪽 새끼손가락 첫마디 부분(손바닥과 손가락 사이)이 잘렸어요.” (사례7)

- 정보 부족은 작업장 내에서의 문제를 넘어섬. 취업하는 과정에서 면접에 참여한 외국인 노동자들은 자신이 일하게 될 분야나 대략적인 업종에 대한 정보조차 제공받지 못하는 경우도 빈번함.

“제가 일했던 회사는 자동차 부품 뎀질 회사인데, 회사이름은 몰라요.” (사례2)

“취업 전 화학약품을 다룬다는 얘기를 들은 적도 없고, 이후에도 화학물질에 대한 교육이나 설명은 들은 적 없어요. 그냥 정규직이고 4대보험이 된다는 얘기만 들었어요.” (사례1)

“용역업체는 업무내용이나 일당을 미리 알려주지 않아요. 사업장에 도착해서야 무슨 일을 하는지 알고 일당도 일 끝나고 주는 대로 받아요.” (사례6)

- 작업장에서 안전 교육은 차치하고, 기본적인 안전 장비 지급도 매우 제한적임.

“회사에서 안전장비 같은 것은 제공하지 않았어요. 작업에 필요한 모든 것 신발 등은, 고용자들이 스스로 구입해서 사용해야 했어요. 이번에 다치고 나서 신발(안전화)은 회사에서 구입해주시기 시작했어요.” (사례3)

“기계 고장으로 비슷한 사고가 나는 걸 본 적 있지만 안전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전달 받은 적이 없어요. 스스로 조심해야만 해요.” (사례4)

“공식적으로 리프트에 대한 안전교육은 없고 선임자가 작동법 정도 알려 주는 정도예요. 나머지는 질문해야 알려줘요.” (사례10)

- 기본적으로 면접자들의 작업 환경은 열악한 노동조건, 기계작동에 대한 교육과 정보 전달 미흡, 임의적인 작업 변경, 안전 장구 미지급 등의 문제가 중첩되어 있는 곳이라는 점에서 ‘산재 유발’ 혹은 ‘항상적인 산재 위험 노출’ 환경이라 할 만 한 곳들임. 면접자들 이외에도 동일한 사업장에서 비슷한 유형의 산재 사고들이 발생함.

“같이 일하는 방글라데시 친구도 다친 적 있어요…. 한국인 직원의 경우도, 심한 사건은 없었으나, 찢어지거나 하는 경미한 사고 정도는 자주 일어나 죠.” (사례3)

“화학약품은 물과 같은 액체인데 비누처럼 미끌미끌한 느낌을 주는데 역한 냄새가 아주 많이 나요. 냄새 때문에 다들 몇 달 일 못하고 그만둔다고 들었어요.” (사례1)

“양송이 작업을 하려면 리프트를 타고 2층 이상의 높이로 올라가야 해요. 오래된 리프트는 난간이 없어서 떨어질까봐 항상 무서웠어요. 리프트가 고장 나 캄보디아 노동자가 2층 높이에서 떨어진 적이 있는데, 사장이 바로 병원에 데리고 간 다음에 그냥 며칠 쉬라고 했어요.” (사례10)

“운전좌석 및 자동차 부품을 만드는 ‘프레스’(압축) 기계에서 작업해요. 기계 버튼을 눌러서 압축된 내용물을 손으로 옮기는 업무인데.. 기계가 자주 망가져요. 원래는 눌러야 작동하는데, 옆에 지나가는 진동만으로도 오작동 하기도 해요. 기계 고장으로 인한 똑같은 사고를 2명이나 목격했어요. 그 이외 들은 것도 더 있어요. 미얀마 출신 노동자는 손가락 4개가 절단됐어요.” (사례4)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 대부분 손가락이 아팠어요. 어떤 사람은 입사 후 몇 시간만에 아프다고 퇴사한 사람도 있어요.” (사례9)

- 면접에 참여한 산재 피해 외국인 노동자들의 산재 사고 당시 동일 사업장 근속 기간은 상대적으로 짧은 것으로 나타남. 5달 미만으로 비교적 짧은 경우가 5건에 달함. 그러나 1년 6개월에서 5년 사이 곧 상대적으로 근속 기간이 긴 경우도 5건에 달함. 이것은 근속 기간이 산재 발생률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수는 있지만 산재 발생의 절대적인 요인으로 단정 지을 수 없음을 뜻함.

- 10명의 면접자 전원이 매우 낮은 한국어 구사 능력 소지자였음. 거의 못하거나 간단한 문장만 이해할 수 있는 수준임. 이 점에서 면접에 응한 산재 피해 외국인 노동자들의 경우 한국어 능력은 산재 발생과 연관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됨.

3. 산재 유형과 산재 신청 경로

1) 산재 유형

○ 면접자 10명 가운데 8명은 사고, 2명은 업무상 질병에 해당함.

- 가장 많았던 사고 유형은 기계에 손가락이 빨려 들어가는 사고였음. 기계에 손가락 끼임(사례5), 기계에 손가락 빨려 들어감(사례8) 등이 이에 해당함. 이러한 유형의 사고는 대개 기계고장이나 오작동에 기인함.

“사고 당일 원래 하던 일이 아니라 1번 작업을 마친 원단을 2번 기계 쪽으로 넘기는 작업을 처음 하게 됐어요. 1번 작업을 끝내고 내려오는 원단을 잡으려고 손을 위로 올렸는데 롤링을 푸는 기계와 엔진을 잇는 모터에 손이 빨려 들어갔어요(왼손 2-5번째 손가락). 새 기계여서 설치 때 커버가 씌여 있는 것을 봤는데 설치 후 없애버렸어요. 제 사고 이후 다시 커버를 씌웠다고 들었어요” (사례8)

- 두 번째 사고 유형은 골절과 화학물질 노출임. 전자에는 다리 골절(사례3), 기계고장으로 인한 손가락 절단(사례4) 두 경우가, 후자에는 화학약품 노출로 인한 손가락 화상(사례1), 다리 화학물질 노출(사례6) 두 경우가 해당됨.

“원래 버튼을 한 번 누르면 압축 기계가 한 번 내려와서 내용물을 압축해야 하는데, 사고 당시 버튼을 한 번 눌렀을 때 연속으로 두 번 내려와서 손가락이 절단됐어요. 보통 기계를 교체하지 않는데, 내가 다친 이후로 (20개가 넘는 기계가운데) 새로운 기계 3개를 교체했어요.” (사례4)

“(일하다가) 장갑이 찢겨져 (오른)손이 화학약품에 젖은 것을 뒤늦게 발견했어요. 당일에는 특별한 징후가 없었고 다음날 아침부터 간지러웠지만 심하지 않아 출근했어요. 며칠 후 손가락이 굵어지지 않아.... 병원에서 처방해준 약을 먹었지만 상태가 더 안 좋아져 큰 병원에 가서 다시 진료했어요. 2주 이상 치료 요하는 약품에 의한 2도 화상이라는 진단이 나왔어요.” (사례1)

- 업무상 질병 두 케이스는 손가락 통증과 마비(사례2), 방아쇠수지(사례9) 두 경우임. 공통점은 무리한 반복 작업으로 인한 손가락 부위 마비와 통증임.

“3개월 정도 일하다 다쳤어요. 손가락 통증과 마비가 왔어요. 일 한지 보름 정도 때부터 증상은 나왔는데 참고 일했어요. 한 달 넘어 못 참겠다고 했는데, 계속 참으라해서, 더 참을 수 밖에 없었구요. 수저도 못쓰고, 칫솔질도 못 할 정도로 너무 아팠어요.” (사례2)

“냉동창고에서 닭 뼈 제거 및 칼집 내는 일만 계속했어요(*기본으로 하루 총 2,000개 닭다리 등 해체작업을 하는데 1개당 4번의 칼질이 필요하니 하루 8,000번의 칼질을 해야 함. 1달 기본 20만 번 및 연장근로시간을 감안하면 30만 번 이상 칼질을 할 때도 있는 셈임). 여름에도 추운데 겨울이 되면 너무 추워서 뜨거운 물을 옆에 두고 간간히 손을 담가며 일해야 하는 곳이에요. 일 시작하자마자 바로 손가락에 통증을 느꼈어요. 사장님에게 말했는데 계속 열심히 일하라고만 했어요. 5년 되면 계약 연장해 줄게, 따뜻한 물에 소금 풀고 손 담그면 나아진다고 했어요. 구리에 있는 병원에 갔는데 너무 차가운 환경에서 일해서 그렇다며 약을 처방해줬는데 별로 효과가 없고…. (결국) 수술했어요.” (사례9)

2) 산재 신청 경로

○ 면접을 통해 조사한 10개 케이스 가운데 사업주가 산재 발생 초기에 산재 신청에 조력한 경우는 단 한 건에 불과함. 6건은 사업주의 거부나 다양한 방식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지원단체나 개인의 도움으로 산재신청을 한 경우임. 나머지 한 건은 공상처리, 나머지 한 건은 산재미적용 사업장이었음.

- 사업주가 산재 발생 초기에 산재 신청에 조력한 경우는 한 건에 불과함. 그러나 그마저도 사업주가 산재 치료비 자부담 부분을 피해자 급여에서 공제하려 시도하고 그를 거부하자 퇴사 압력을 행사함. (사례10)

“사업주가 이튿날 병원에 찾아와서 치료비 다 댈 테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한국어로 된 서류에 사인하라고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병원비(산재 자부담)를 체불임금에서 공제한다는 내용이었어요…. 처음에는 내용을 모르니 사인하지 않겠다고 여러 번 거절했으나 사업주 딸이 계속 요구해서 결국 사인했어요. 체불임금 200여만 원을 병원비(산재 비급여)와 상계한다는 내용이었어요.” (사례10)

- 사업주가 산재 신청을 기피하거나 거부했으나 지원단체나 개인이 신청한 경우가 가장 빈번했음. 사측의 산재 처리 거부 및 해고 위협에 지원단체가 신청한 경우(사례1, 사례5, 사례7, 사례9)가 가장 많았고 그 밖에 용역회사, 병원, 근로복지공단 등 산재 관련 모든 기관에서 산재 처리를 거부했으나 개인적 지원으로 산재를 신청한 경우(사례2), 사측의 산재 미처리 및 귀국종용에 병원이 산재를 신청한 경우(사례8)가 있었음.

“살면서 이때까지 이런 알려지가 생긴 적이 없어요. 그런데 개인적인 문제라고 해서 너무 화가 났어요. 과장은 노동부에 신고하지 않으면 치료비도 주고 해고하지는 않겠지만, 신고하면 월급도 안주겠다고 했어요. 월급날이 다음 달 말일이어서 아직 8월 월급을 못 받았거든요... 사업장에서 치료비와 임금 일부를 지급할 테니 산재요양신청서 제출한 것을 철회하라고 연락이 왔어요.”(사례1)

“계속 통증이 있었지만 사업주가 일하라고 해서 반창고로 감고 계속 일했어요. ‘괜찮아 앞으로 괜찮을 거야. 그리고 이제부터 내가 해 줄 것은 없으니까 무슨 일 생기면 네가 알아서 해’라고 했어요. 사업주에게 계속 아프고 수술이 필요하다고 하니깐 ‘가! 가서 너 알아서 하고 다시 이 회사 오지 마. 다른 회사 가’라고만 말하여 그냥 계속 일했어요.”(사례7)

“노동부도 가봤고, 무료/유료 변호사 상담 다 해봤는데, 모두 산재 안 된다고 이야기했어요. 사고로 인해 다친 게 아니어서 산재 안 된다고요. 한국은 어디 가든지 안 되니까, 생각을 하지 말아라고, 가는데 마다 이야기해서 너무 속상했어요.. 근로복지공단 갔는데 과장님께 산재 안 되냐고 물었더니, 아무 설명 없이 그냥 안 돼요 라고만 했어요.”(사례2)

- 사업주가 산재 신청을 하진 않았지만 공상처리한 경우, 사업주는 병원비와 치료기간의 급여를 지급함. 그러나 산재 대신 공상처리를 하는지에 대해서는 아무런 설명이 없는 이른바 ‘묻지마’ 공상처리였음.

“처음부터 사장님이 공상처리할 거니까, 산재처리 하지 말라고 했고(사장이 산재 신청을 하지 않은 이유는) 설명은 안 해줬어요. 걱정하지 말아라, 모든 것을 내가 부담한다라고만 했어요.”(사례3)

3) 후유증과 사업장 이동

- 10명의 면접자 가운데 후유증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두 경우(사례1, 사례5)를 제외한 나머지 여덟 명은 모두들 후유증으로 고통 받고 있거나, 산재치료가 현재 진행형인 것으로 나타남. 후유증이 있는 경우가 여섯, 여전히 통원 치료중인 경우가 두 케이스였음.

“아직도 아파요, 이거는 계속 아프대요. 치료해도 아프기는 아픈데, 조금 나아지다가 아프다가 반복해요. 그리고 나중에 손가락이 안 펴질 수도 있대요. 그 때는 수술해야 해요. 이거는 다시 정상으로 돌아갈 수 없는 병이에요.” (사례2)

“치료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고 해서 팔목 뼈를 검지에 이식하는 수술 등을 2차례 받았어요... 현재 물리치료 중이고 검지에 쇠를 심어서 1년 후 제거 수술을 받을 예정이에요. 현재 검지손가락은 거의 안 구부려져요. 날씨가 추워지니까 가만히 있어도 검지에 통증이 있어요.” (사례 10)

- 산재치료 종결 이후 사업장 복귀 관련, 현재의 사업장 상태가 확인된 경우는 여덟개 케이스임.

- 사업장 이동에 성공한 경우는 한 건에 불과함(사례5). 나머지는 퇴사한 경우(사례 9), 사측의 퇴사 요구를 거부한 경우(사례10), 사측의 사업장 복귀를 거부한 경우(사례8), 다른 업종으로 전직한 경우(사례2), 두려움으로 옮기고 싶지만 사고 사업장으로 복귀한 경우(사례3), 사업장 이동을 고민하고 있으나 치료가 진행중이어서 결정을 내릴 수 없는 경우(성실재입국 대상 노동자)(사례4) 등임.

“지원센터 도움으로 고용주와 사측 노무사를 자꾸 괴롭혀서 굉장히 어렵게 사업장 변경 신청서에 고용주 서명을 받을 수 있었어요. 같은 기계에서 계속 일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어요. 상처도 남아 있었는데, 출근을 하면서 다루는 액체 때문에 상처가 따가웠거든요. 처음에는 ‘사업장 변경 안 해줄거다, 가고 싶으면 집에나 가’라고 했어요. 쉬는 동안에도 사모님이 일주일에 1번씩 와서, ‘일을 안 하면 집에 가거나 나가라’고 했어요.” (사례5)

“사고재발에 대한 두려움도 있긴 한데요(그래서 사업장을 이동하고 싶은

마음도 있긴 한데), 그렇다고 지금 그만두거나 회사에서 잘리면, 다른 데서는 이 정도 급여를 받기 어려울 거예요. 이 정도 받기까지 4,5년 고생했거든요. 그래서(여기서 계속 일하는 게 두렵더라도) 다른 데 가는 것은 걱정이예요.” (사례3)

“곧 체류기간이 만료돼서 사업장 변경이나(성실근로자로서) 재입국에 대해서는 생각한 적이 없어요. 손을 다쳤기 때문에 다시 재입국이 가능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만약에 재입국한다면 사업장 변경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기계가 망가져 있기 때문에 산재가 다시 발생할까봐 두려워서(현재의 사업장을) 바꾸고 싶어요.” (사례4)

4. 산재 처리 과정에서의 또 다른 어려움들

1) 산재 병원의 무성의와 인종주의

- 이번 면접 조사에 참여한 외국인 노동자 산재 피해자들의 경우 독특하게도 최초 방문 병원의 오진 내지 불완전한 치료로 다른 병원에 다시 방문하거나 재수술을 받은 경우가 다수 있음.(사례3, 사례10)

“(산재 사고 발생 직후) 119지정병원인 **병원으로 이동했어요. 그런데 병원에서는 엑스레이도 찍지 않고, 움직일 수 있는지 여부만 확인했어요. 그러구나서는 꿰매고, 약 주고 내일모레 물리 치료하러 오라하고는 가라고 했어요. 그런데 밤에 통증이 아주 심해져서 집근처 병원에 입원하게 됐어요. 그 병원에서 엑스레이랑 MRI 검사를 했는데, 뼈가 부러진 것으로 진단이 나왔어요. 15일 이상 입원 치료를 해야만 했어요.” (사례3)

“안산 소재 병원으로 옮겨서 진료를 다시 받았어요. 초진 병원에서 치료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고 해서 팔목 뼈를 검지에 이식하는 수술 등을 2차례 더 해야 했어요.” (사례10)

- 때로는 병원 측에 의해 산재 거부와 인종주의적 모욕이 발생하기도 함.(사례2)

“병원에서는 ‘치료 안 해도 된다’고 말했어요. ‘이 손은 일해서 이렇게 된 것 아니고, 노화 때문에 이렇게 된다’라고도 했어요. 원무과 직원이 비웃으면서 ‘이거 산재도 안 되는 것 가지고 자꾸 찾아오지 말아라’라고도 했어요.” (사례2)

2) 산재 피해자의 신분 및 고용에 대한 불안

- 산재 피해를 당한 외국인 노동자들이 사측의 산재보험 처리 거부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는 요인 중 하나는 ‘외국인 노동자’로서의 취약한 고용 및 체류에 대한 불안감 때문일 수 있다는 것이 이번 면접조사를 통해서도 확인됨.

“고용에 대한 불안 그러니까 산재처리하면 회사에서 쫓릴 수도 있다, 산재

처리 이후 계속 일 못하는 것으로부터 생길 수 있는 불이익에 대한 걱정으로, 사장이 산재 안하는 것에 대해 저항하기 어려워져요.” (사례3)

“사장님에게 말했는데 계속 열심히 일하라고만 했어요. ‘5년 되면 계약 연장해줄게, 따뜻한 물에 소금 풀고 손 담그면 나아진다’고 했어요. 말을 잘 안 들으면 베트남으로 돌려보낼 수 있고 불법체류자로 만들 수 있다고 했어요.” (사례9)

- 일부 사업주들은 외국인 노동자들의 이러한 불안감을 악용하여 위협을 넘어 산재 피해자를 오히려 징계하는 등 적반하장격인 실제적인 불이익을 주기도 함.

“사장이 입원 중 와서 200만원 줄 테니 본국으로 돌아가라고 해서 싫다고 했어요.” (사례8)

“(산재 이후) 일하는 속도가 느리다고 1달 정직결정을 받았어요. 정직결정이 나오기 전 회사에서 공고문(징계위원회 개최 공고문)을 붙였어요. 한국어를 못해서 무슨 서류인지 모르고 사업장에 들어가니까 그냥 나가라고 했어요.” (사례9)

3) 취약한 공공 부문

- 산재 제도는 물론이요, 한국 상황 전반에 대해 정보가 부족한 산재 피해 외국인 노동자를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할 공공 부문에서 오히려 산재 피해 외국인의 상황을 악용하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확인됨.

“입원 중에 노무사들이 와서 ‘변호사를 써야 한다. 당신 고용주가 전화도 받지 않고 있다. 당신은 버림받았다. (우리가 산재신청을 도와 줄 테니) 보상금에서 수입료 30%를 받겠다’고 했어요. 그렇게 그들이 2~3일 동안 병원에 계속 찾아 왔어요.” (사례4)

“사측 노무사가 ‘외국인이 뭘 알겠냐’는 반응을 보이면서 관련 서류를 알아서 작성해 오면 서명은 해주겠다고 하더라구요.” (사례5)

4) 외국인 노동자의 취약한 권리 의식

- 산재 피해를 당한 당사자는 물론이요, 동료 외국인 노동자의 권리 의식도 매우 낮아, 정당한 보상 제도를 이용하는 것을 어렵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이 확인됨.

“(산재 피해를 당했지만 외국인인) 제가 뭘 어떻게 할 수 있었겠어요?” (사례8)

“통증은 지속되고 상황은 막막했어요. 더 이상 어떻게 해야 하는지, 누구 찾아가야 하는지 막막하기만 했어요. 한국와서 말도 안 되는데 이 일 해결되지 않더라도 좋은 얼굴로 좋은 말 해줬으면 죽고 싶은 마음까진 들지 않았을 텐데, 꼭 외국사람에게 이렇게 해야 하나, 그 당시에 4개월 일 못해, 돈도 없어, 갑자기 산재처리 안 된다 하면 못 살아요.” (사례2)

“동료들이 사장에게 말하지 않고 밖에 가면 잔업수당을 안 줄 수 있으니까 일 끝나고 병원 가자고 했어요.” (사례7)

“(산재입증을 위해) 동료에게 (해당) 화학약품을 일부 가져다달라고 했으나 다들 들켜서 해고당하면 어떻게 하나면서 거절했어요” (사례1)

경기도 외국인 산업재해자 실태조사

V. 요약과 시사점, 정책제언

1. 요약과 시사점
2. 정책 제언

1. 요약과 시사점

- 이 조사의 목적은 외국인 노동자 산업재해 피해자에 대한 양적, 질적 조사를 통해 외국인 산업재해 전반의 실체를 파악하고, 그러한 조사 결과를 기반으로 실질적인 개선 방안과 예방책을 제안하는 것임.
- 이 조사는 산재 피해자를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산재 승인을 받은 자’로 한정하지 않고 불승인자를 포함하는 광의의 산재 피해 경험자 208명에 대한 설문 조사와 10명에 대한 면접 조사를 수행함.
- 이번 조사를 통해 우리 연구진은 외국인 산재에 관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확인함.
 - 외국인 노동자 산재는 전방위적이고 무차별적임. 곧 한국에서의 체류기간, 한국어 소통 능력, 체류 유형 등과 산재 경험 유무와의 명확한 상관관계는 확인되지 않았음. 한국에서 일하는 모든 외국인 노동자는 그들의 개인적인 특성의 차이와 관계없이(혹은 그 차이를 압도할 정도로 공통적으로) 항상적으로 산재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음을 뜻함.
 - 외국인 노동자 산재는 개인적인 요인보다는 구조적이며 환경적인 요인에 기인함. 산재는 기계 결함이나 노후화, 안전 관리 소홀 등 구조적인 요인과 무리한 반복작업 및 초과 노동 등 열악한 노동 조건과 연관됨.
 - 산재는 신체적 손상과 경제적 손실에 제한되는 일시적인 사건이 아니라 피해자의 마음과 사회 관계, 나아가 삶의 지속가능성 자체를 파괴하는 생애사적인 사건임.
 - 산재 피해자는 공식적인 통계보다 훨씬 대규모로 존재함. 이번 조사에 참여한 산재 경험자 가운데 공식적인 산재보상보험제도를 이용한 비율은 40% 남짓에 불과함. 특히 업무상 질병의 경우, 공식적인 통계와 피해자들의 주관적인 판단 사이에 커다란 괴리가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됨.
 - 산재가 모든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무차별적으로 노출되어 있는 구조적인 위험이지만 외국인 노동자 내부에서도 산재 피해와 처리 과정에서 보다 취약한 집단이 존재함. 특히 여성 이주노동자들이 이에 해당함.
 - 산재 피해 외국인 노동자들이 피해 구제 과정에서 직면하는 어려움에는 문화적

차별과 인종주의, 신분 및 고용에 대한 불안, 취약한 공공 부문의 역할, 피해 당사자들과 동료 노동자들의 낮은 권리 의식 등이 포함됨.

1) 설문 조사 결과 요약과 시사점

- 이번 조사 대상자들은 몇 가지 점에서 기존 조사의 대상들과는 구분됨.
 - 중국 국적자가 소수이며, 다른 조사에 비해 한국계 외국인(방문취업과 재외동포)의 비중도 낮으며, 그와 연관되어 건설업 노동자의 비중도 낮은 편임.
 - 표본의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이번 조사 결과를 한국계 외국인이 다수 포함된 여타의 조사 결과와 선형적으로 비교하는 것은 경계해야 함.
 - 반면에 이번 조사는 기존의 조사 결과와 달리 산재 피해가 특정 국가 출신자에게 집중되기 보다는 모든 국적의 외국인 노동자에게 동등하게 발생할 수 있음을 확인시켜주었다는 점과 비동포 외국인의 산재 실태에 대해 입체적이며 구체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강점을 지님.
- 조사 대상자들인 산재를 경험한 외국인 노동자들의 개인정보를 통해 외국인 산재에 대해 알려진 '통념' 몇 가지에 대한 보완 혹은 수정의 필요성이 제기됨.
 - 일반적으로 체류 기간이 짧은 외국인 노동자들의 산재발생율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이번 조사는 3년 이상의 상대적으로 장기 체류자들 역시 산재피해에서 안전하지 못하다는 것을 보여줌.
 - 한국어 소통 능력 역시 산재발생율에 알려진 것만큼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됨. 한국어 소통 가능자의 산재율이 불가능자의 산재율에 비해 크게 낮지 않았음.
 - 이것은 일반적인 가설과 달리 한국에서의 거주 기간, 한국어 의사소통 능력과 무관하게 모든 외국인 노동자들이 비슷한 정도로 산재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음을 시사함.
 - 이번 조사에 참여한 산재 피해 당사자들 가운데 거의 절반가량이 또 다른 산재 피해를 목격했다는 것도 산재가 개인적인 요인이라기보다는 산재 발생의 위험성이 매우 높은 사업장 구조 및 환경에 기인할 개연성이 높다는 우리의 추론을 지지함.

- 산재 유형 관련해서 특이점은 산재 사고의 경우 기존의 조사와 우선순위에서는 차이가 나지만 동일한 범주인 베임, 끼임, 절단 등 기계 결함 혹은 노후화와 관련된 사고가 다수였다는 점과 ‘업무상 질병’이 공식적인 통계보다 훨씬 많았다는 점임.
 - 이것은 산재의 원인이 상당 부분 ‘산재친화적인’ 작업 환경과 연관되어 있음을 뜻함. 이러한 환경에서 일하는 모든 노동자들은 개인적인 특성의 차이와 무관하게 산재의 위협에 동일한 정도로 노출될 수밖에 없음.
 - 업무상 질병을 선택한 노동자들의 비자 유형의 다양성도 우리의 이러한 추론을 뒷받침함.

- 산재 원인과 관련한 요인 분석 결과 “안전관리 소홀 요인”, “열악한 근무환경 요인”, “한국사회 부적응 요인”, “직장 내 차별 및 폭행 요인” 네 가지가 추출됨.
 - 이것은 작업장에서 일어나는 사고나 질병의 경우 안전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는 작업장에서 과도한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나타날 가능성이 매우 높고, 그에 비해 한국사회 부적응이나 직장 내 차별 및 폭행의 문제로 인한 사고 발생 빈도나 비율은 상대적으로 낮다는 것을 시사함.
 - 그러나 이러한 분석 결과가 산재 원인에 대해 설문지가 너무 많은 선택지를 제시함으로써 응답자들의 답변을 분산시켜 초래된 ‘평균값의 하향화’와 관련되어 있을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함. 산재피해자가 실제로 경험하는 산재의 원인은 한두 가지로 특정됨으로써, 선택지를 줄였을 경우 충분히 다른 결과가 얻어질 수 있음을 고려할 수 있어야 함.

- 이번 조사는 공식적인 산재보상보험제도를 이용하지 않는(혹은 못하는) 산재 피해 외국인 노동자가 알려진 것보다는 훨씬 대규모라는 점을 확인시켜줌. 조사에 참여한 산재 피해자들의 약 53%는 산재 미신청자로 약 43%의 산재신청자를 10% 정도 초과하는 규모임.
 - 5인 미만 사업장과 50인 이상 사업장의 산재 신청율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남.

- 산재보험 처리시의 어려움에 대한 요인 분석 결과 정보부족, 사업주의 비협조, 보험 처리과정의 어려움 등 세 요인이 추출됨.
 - 산재보상보험은 기본적으로 산재 피해 노동자 자신이 신청해야 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산재 신청시 ‘사업주’나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의 조력이 압도적이며 ‘모국

사람'이나 '직장 동료'의 조력 비율이 매우 낮게 나타난 이번 조사 결과는 한국의 산재보상보험제도가 당사자 친화성과 접근성이 매우 떨어지는 제도라는 점을 보여줌.

- 산재 피해 외국인 노동자가 산재보험을 신청하지 않은 이유는 크게 세 가지 범주로 구분가능함. 외국인무시(외국인 무시+이유 없음), 공상처리, 체류상의 불안정성 등임.
 - 산재 미신청자의 경우 사업주로부터 제대로 된 보상을 받는 경우는 30% 미만으로 매우 드문 것으로 나타남. 이것은 사업주로부터 산재 신청 협조 거부를 당하는 경우, 단순히 보험제도 이용이 봉쇄되는 것을 넘어서서, 정당한 보상 자체를 받지 못하는 '이중의 피해'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을 뜻함.

- 산재피해 외국인 노동자들이 치료 및 요양 과정에서 경험한 차별 형태들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됨. 우선 '문화적 차이에 대한 비교력'로부터 발생하는 유형으로 '언어와 음식, 의료진의 진료 방식'의 '차이'에서 발생하는 차별이 이에 해당함. 다른 한 가지는 명백한 인종주의라고 할 수 있는 '출신국 및 외국인'에 대한 차별임.
 - 치료 및 요양 기간은 전체적으로 산재를 신청한 외국인 노동자들이 비신청자들에 비해 긴 것으로 나타남. 특히 6개월 이상의 장기 치료자의 경우, 산재 신청자의 규모가 비신청자의 규모의 거의 3배에 달함.
 - 다수 피해자들의 치료 및 요양시 주거 공간이 사업장의 기숙사였다는 점에 주목해야 함. 다수의 노동자들은 심신의 안정이 가장 중요한 사후 조치임에도 불구하고 불안함과 두려움의 공간인 사고 현장(사업장)에서 산재 치료를 받아야만 한 것으로 확인됨.
 - 산재 치료 이후 사업장에 복귀한 노동자의 무려 70.9%가 사고가 났던 사업장에서 다시 일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
 - 산재 비신청자의 경우 사고 사업장에서 계속 일하고 있는 비율이 78.0%로 59.7%인 신청자에 비해 20% 정도나 높은 수준이었음.
 - 이것은 산재 누락자들이 공상처리나 사업주의 비제도적 조력을 통하여 치료비 등의 보상을 충분히 받는 경우라 할지라도, 기술적인 보상 이외의 불이익에 있어서 산재신청자에 비해 더 큰 압력을 받고 있는 상황에 처해있음을 시사함.

- 산재피해 노동자들이 경험하는 산재 종결 이후의 어려움은 크게 재요양 승인 자체의 어려움, 사고 사업장으로의 무조건적인 복귀 강요, 불완전한 치료나 요양의 종결, 너무 적은 보상금 등으로 범주화됨.
 - 산재 비신청자들이 산재 신청자들에 비해 산재 종결 후 후유 증상 치료 및 재요양의 필요성에 대해 좀 더 강한 문제의식을 표출함.

- 가장 많이 선택된 산재 예방 조치는 ‘작업환경 개선’과 ‘안전교육’이었음.
 - 예방 조치와 관련, 한국의 전문가 집단의 관점과 산재 피해 외국인 노동자 당사자 집단의 선택지 간에 차이가 있음에 주목해야 함.
 - 한국의 보수적인 전문가 집단이 제안하는 한국어 습득은 5.5%에 불과했고, 진보적인 전문가 집단이 제안하는 자유로운 사업장 이동, 사업장 내 외국인 차별 철폐, 노동조합의 결성(노동자 권력기관의 조직화) 등도 10%에 못 미치는 비교적 낮은 응답율에 그침.

- 이번 조사를 통해 산재는 피해 당사자에게 단지 신체와 경제적 손실을 넘어 ‘마음’과 ‘자신감’, ‘인간관계’ 등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총체적이며 생애사적인 사건이라는 점이 확인됨.
 - 전반적으로는 업무상 재해로 인한 영향이 2년 미만인 경우가 약 60% 정도로 다수이지만, 10년 이상 또는 평생이라고 응답한 비율도 약 24%로 결코 적지 않은 비율이었음.
 - 산재가 생애사적인 사건임은 산재 피해 노동자들 가운데 64.4%만이 계속 일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확증됨. 이것은 산재의 후유증이 신체적인 것에 그치지 않고 경제적인 것, 그리고 삶 전체의 지속가능성으로까지 확장된다는 것을 뜻함.
 - 이러한 조사 결과는 산재 보상이 신체적 치료 및 경제적 손실의 보상을 넘어 심리적인 레질리언스와 사회관계의 복원, 나아가 삶의 지속가능성의 재구축으로까지 확장될 수 있어야 함을 시사함.

- 산재 피해자의 권리 구제 과정에서 성적 차별이 확인됨.
 - 산재신청율의 경우 여성노동자가 남성노동자에 비해 10% 이하 낮고, 공상처리의 경우는 20% 이하 낮는데 반해 본인부담율은 무려 30% 이상 높게 나타남.

- 이것은 여성노동자들이 남성노동자들에 비해 산재보험에 접근성이 취약하며, 사업주로부터 보상을 받을 개연성은 더욱 낮으며, 산재임에도 불구하고 사후 처리를 스스로 감내해야 하는 확률은 압도적으로 높다는 것을 뜻함.
 - 여성노동자들의 본인 부담율이 아주 높는데, 본인 부담자의 경우 타집단에 비해 치료 및 요양 기간은 매우 짧으며, 계속 노동과 사고 사업장 복귀 비율은 매우 높게 나타남.
- 산재 발생 원인, 치료 및 요양 과정에 대한 평가에 있어서 H-2(방문취업)비자 소지자들의 차별적인 경향성이 확인됨.
- 산재 발생 원인으로 추출된 네 가지 요인 모두에서 H-2(방문취업)비자 소지자들은 다른 집단에 비해 낮은 평균값을 보임.
 - H-2(방문취업)비자 소지자들은 산재보험 이용시 정보 부족의 어려움을 가장 낮게 지각하고, 치료 및 요양 과정에서의 어려움 및 차별 지각 역시 상대적으로 덜 느끼는 것으로 분석됨.
 - 그러나 산재 종결 이후 느끼는 어려움의 체감 정도는 타 집단과 비교했을 때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남.

2) 면접 조사 결과 요약과 시사점

- 면접 조사에 참여한 외국인 노동자 산재피해자들 10명 가운데 산재 신청자는 8명이었음. 사업주가 산재 신청에 초기부터 조력한 경우는 단 한 건에 그침.
- 산재 피해를 경험한 면접자들의 작업 환경은 열악한 노동조건, 기계작동에 대한 교육과 정보 전달 미흡, 임의적인 작업 변경, 안전 장구 미지급 등의 문제가 중첩되어 있는 곳이라는 점에서 ‘산재 유발’ 혹은 ‘항상적인 산재 위험 노출’ 환경이라 할 만한 곳들임.
- 면접에 참여한 산재 피해 외국인 노동자들의 산재 사고 당시 동일 사업장 근속 기간은 상대적으로 짧은 것으로 나타남. 5달 미만으로 비교적 짧은 경우가 5건에 달함. 그러나 1년 6개월에서 5년 사이 곧 상대적으로 근속 기간이 긴 경우도 5건에 달함.

이것은 근속 기간이 산재 발생율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수는 있지만 산재 발생의 절대적인 요인으로 단정 지을 수 없음을 뜻함.

- 면접을 통해 조사한 10가지 케이스 가운데 사업주가 산재 발생 초기에 산재 신청에 조력한 경우는 단 한 건에 불과함. 6건은 사업주의 거부나 다양한 방식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지원단체나 개인의 도움으로 산재신청을 한 경우임. 나머지 한 건은 공상 처리, 나머지 한 건은 산재미적용 사업장이었음.
- 면접에 참여한 노동자들이 산재 처리 과정에서 경험한 어려움으로는 산재 병원의 무성의와 인종주의, 산재 피해자의 신분 및 고용에 대한 불안, 취약한 공공 부문, 외국인 노동자들 자신의 취약한 권리 의식 등이 확인됨.

2. 정책 제언

-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우리는 외국인 노동자 산재 예방과 구제 방안 개선책 모색에 참조할 수 있는 몇 가지 원칙을 도출함.
 - 첫째 산재 원인과 관련 개인적인 요인보다는 구조적, 제도적, 환경적 요인 분석이 우선시되어야 함.
 - 둘째 공식적인 통계보다 훨씬 대규모로 존재하는 실질적인 산재 피해 현황에 대한 실태 파악이 시급함. 특히 산재 은폐 및 누락 현황에 대한 실태 파악이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함.
 - 셋째 피해 구제는 신체적이며 경제적인 손실의 보전을 넘어서서 총체적인 삶의 지속가능성을 재구축하는 방향으로 확대될 수 있어야 함.
 - 넷째 산재 예방과 구제에 있어 기존의 접근법이 간과해온 문화적 차별(인종주의)의 규제, 공공 부문의 책무성 제고, 당사자의 권리의식 함양 등의 과제가 적극적으로 논의될 수 있어야 함.
 - 다섯째 외국인 노동자 내부에서 산재 피해에 상대적으로 더욱 취약한 집단(이주 여성노동자 등)에 대한 특별한 고려가 요청됨.

- 이러한 원칙에 기반하여 정책적인 개선 방안 및 과제의 목록을 좀 더 구체적으로 제안해보면 다음과 같음.
 - 첫째, 산재 유발 사업장 작업 환경 개선을 위해 적극적인 유도 및 제재 정책 도입이 요청됨. 외국인 노동자가 주로 고용되어 있는 50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의 환경 개선을 위한 컨설팅, 기계 설비 유지 보수 등을 위한 직접적인 지원이 필요함. 더불어 외국인 노동자 배정시 고용노동부가 시행하고 있는 ‘점수제’가 보완될 수 있어야 함. 산업안전보건법 상 위험성평가 인정 또는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을 받은 경우 가점 각 1점을 부여하는 현행 제도는 바람직함. 그러나 ‘사망사고’와 ‘산재은폐’로만 제한된 감점 사유는 확대될 수 있어야 함.
 - 둘째, 외국인 노동자 산재 은폐 실태에 대한 전면적인 조사와 산재 은폐를 강요하는 환경 및 요인 분석이 즉각적으로 실시될 수 있어야 함. 이번 조사를 통해 확인된 바와 같이 산재 피해 노동자의 1/2 이상이 산재보상보험제도를 이용하지 않는

현실은 제도 자체의 정당성을 위협한다는 점 그리고 (이 역시 이번 조사에서 확인된 바와 같이) 산재보험제도에서 누락된 산재피해자가 2차, 3차 피해의 희생자가 되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심각하게 평가되어야만 함. 산재은폐 및 누락에 대한 전면적인 실태 조사에 근거해 산재피해 노동자들을 제도내로 견인할 수 있는 실효적 조치의 도입이 즉각적으로 모색될 수 있어야 함. 이번 조사를 통해 산재보험을 신청하지 않는 세 가지 요인으로 확인된 ‘외국인을 무시’하는 사업장 문화, ‘공상 처리’ 관행, ‘체류상의 불안정성’이라는 문제를 완화시킬 수 있는 조치가 이에 포함됨. 특히 이번 조사 결과 5인 미만 사업장과 50인 이상 사업장의 산재 신청율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는 점에서 이들 사업장에 대한 특별 관리가 요청됨.

- 셋째, 산재 피해 외국인 노동자의 제도 접근성을 제고시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산재 관련 정보 전달 체계가 그들에게 익숙한 언어로 구축될 수 있어야 함. 본 조사에서 확인된 바와 같이 외국인 노동자가 산재보험 이용시 경험하는 가장 큰 어려움은 정보 부족임. 현재 고용노동부가 시행중인 산재예방 교육은 개괄적인 내용이어서 외국인 노동자의 실질적인 산재 대응력이나 제도접근성을 제고시키는 데에는 한계를 보임. 무엇보다도 산재 실무 기관인 근로복지공단에 다국어 통역시스템이 구축될 수 있어야 함. 근로복지공단 내에 통역시스템이 전무하여 산재 피해 이후 치료 및 요양 과정에서 한국어에 서툰 피해 노동자가 또 다른 불안을 경험해야 하는 현 상황은 시급히 개선될 수 있어야 함.
- 넷째, 산재 사업장 사업주가 산재 피해 노동자의 산재 신청을 도와줄 ‘조력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상응하는 벌칙 및 제재 조치가 마련될 수 있어야 함. 본 조사에서 확인된 바와 같이 산재 신청 및 보상 과정에서 사업주의 비협조로 어려움을 경험한 외국인 노동자는 40%를 상회함. 산재 발생시 노동자가 산재 보험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사업주의 날인(및 날인 거부사유서), 임금대장 제출 등 사업주의 조력이 필수적임. 본 조사를 통해 나타난 바와 같이 산재보험 적용을 회피하기 위해 조력을 거부하는 사업주가 적지 않은 것이 현실임. 벌칙 조항이 없는 현행 산재법 하에서는 사업주의 조력 행위를 강제하거나, 조력 행위 미이행을 제재할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한 개정이 요청됨.
- 다섯째, 외국인 노동자의 업무상 질병 입증 책임은 완화될 수 있어야 함. 2016년 기준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외국인 노동자 판정 건수는 내국인의 1.86%에 불과함. 외국인 노동자가 업무상 질병으로 산재를 신청하는 비율은 내국인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함. 열악한 노동 환경에서 주로 고강도의 육체 노동에 종사하고 있

는 외국인 노동자의 현실을 감안할 때 업무상 질병으로 인한 산재 신청율과 승인율은 비현실적으로 낮은 수치임. 업무상 질병으로 인지하지 못하고 출국하거나 개인적인 상병으로 치부해버릴 가능성도 무시 못하지만, 본 조사를 통해 확인된 바와 같이 피해 당사자에게는 명백히 업무상 질병에 해당하는 산재가 공적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 곧 지나치게 엄격한 입증책임의 문제로 제도의 이용 자체를 포기해버리는 경우도 빈번한 것이 현실임. 이러한 문제의 개선을 위해서는 외국인 노동자에게 산재로 업무상 질병도 인정받을 수 있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직종별로 발생가능한 업무상 질병유형에 대한 정보제공이 필요함. 또한 신청이 저조한 원인규명을 위한 실태조사 후 입증책임의 완화 등 외국인 노동자도 폭넓게 보호받을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책마련이 요구됨.

- 여섯째, 산재 예방책과 관련 고용허가제도 자체의 개선, 무엇보다도 외국인 노동자의 사업장 변경 및 성실근로자제도의 요건 완화가 요청됨. 산업 재해 유발 환경에 노출된 노동자가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가장 신속한 방법은 상대적으로 안전한 사업장으로 이직하는 것임. 그러나 산재 후유증으로 노동자가 사업장 이동을 원하는 경우 매우 엄격한 조건의 충족이 선행될 수 있어야 함. 이를테면 산재 원인이 기계결함이나 시설물 하자 등에 있을 것, 사업주가 1개월 이내에 산재 원인 제거 등의 조치를 이행하지 않을 것, 고용센터가 근로관계 유지가 어렵다고 인정할 것 등임. 이러한 엄격한 조건하에서 사업장 이동은 실질적으로 불가능함. 본 조사 결과에서 확인된 바와 같이 산재 피해 외국인 노동자의 70% 이상은 두려움의 공간인 사고 사업장으로 복귀함. 사업주들은 퇴사(사업장 이동)의 자유가 없는 외국인 노동자를 대상으로 적극적인 사업장 환경 개선에 나서려 하지 않으므로, 사업장 이동의 불허는 또 산재 발생의 유인으로 작용하게 됨. 따라서 본인이 원할 경우 산재발생 사실만으로 사업장을 퇴사할 수 있는 권리를 우선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방식으로서의 제도 개선은 매우 시급하고 절박한 과제임. 마찬가지로 맥락에서 동일 사업장 근속을 조건으로 하는 성실근로자 제도의 조속한 개선 역시 시급한 과제임.
- 일곱째, 보험급여의 확대가 필요함. 본 조사를 통해 확인된 바와 같이 산재보험 이용시 피해자들은 적은 보험급여와 과도한 자부담비용이라는 어려움을 경험함. 산재보험에서는 요양기간 동안 치료비를 지급하나 일부 비급여 부분이 발생하고 이는 재해자가 지불해야 함. 중대재해를 당해 수술을 할수록 노동자가 지불해야 하는 비용도 높아지는 것이 현실임.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용노동부는 산재 치료

기간 중 발생한 자부담 치료금액은 노동자가 지불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함.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경우 사업주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하지만 산재 피해 외국인 노동자에게는 거의 불가능한 방법임. 산재 치료 과정 중 발생하는 자부담 비용 전액을 보험 급여화하거나 근로복지공단에서 우선 지급하고 사업주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식 등의 방안이 모색될 수 있어야 함.

- 여덟째, 산재 경험에서 특별한 위상을 갖는 두 집단, 곧 여성이주노동자 및 동포 노동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장 환경 및 산재 실태 조사가 필요함. 본 조사 결과 여성이주노동자는 산재 피해 외국인 노동자 집단 가운데서도 가장 취약한 집단으로 판명됨. 동포 노동자는 산재 피해 외국인 노동자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집단임. 동포 노동자들이 산재 발생과 처리 과정에서 일반 외국인 노동자와 구분되는 독특한 반응 양상을 보인다는 점이 본 조사를 통해 드러남. 산재 발생 및 처리 과정에 대한 평가, 차별 지각 등 대부분의 조사 항목에서 그들은 일반 외국인 노동자에 비해 우호적인 반응을 보였으나, 산재 종결 이후 느끼는 어려움의 체감 정도는 타 집단과 비교했을 때 가장 높게 나타남. 동포 노동자의 산재율을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이러한 독특한 행태에 대한 다각도의 분석과 진단이 요청됨.
- 마지막으로, 산재를 기술적인 사건사고로 규정하는 관점을 넘어서서 한 인간의 삶 전체에 총체적인 영향을 미치는 생애사적인 사건으로 재규정하는 관점의 도입이 필요함. 산재 피해자가 경험하는 신체적, 경제적 고통과 더불어 문화적 차별이 고려될 수 있어야 하며. 산재 보상의 개념 역시 신체적 치료 및 경제적 손실의 보상을 넘어 심리적인 레질리언스와 사회관계의 복원, 나아가 삶의 지속가능성의 재구축으로까지 확장할 수 있는 조치들이 모색될 수 있어야 함.

○ 경기도 차원에서 자체적으로 모색할 수 있는 외국인 노동자 산재 예방 및 구제를 위한 조치를 제안해보면 다음과 같음.

- 첫째, 외국인 노동자 산업 재해의 심각성에 관한 도 차원에서의 문제 의식과 정규적인 실태 조사 및 공론화가 요청됨. 한국의 외국인력정책은 주지하다시피 ‘국가사무’에 해당함. 그러나 이번 조사 참여자의 비자 유형의 다양성이 보여주는 바와 같이 실제 산업 현장에는 고용허가제 대상 외국인 노동자 뿐만 아니라 다양한 외국인이 실질적인 노동자로 취업하고 있는 것이 현실임. 게다가 경기도는 전국 최대의 외국인 밀집 지역임. 정보가 제한되어 있는 기본적인 국가 사무에 지자체가 개입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과제이기는 하나, 외국인 산재의 심각성

을 고려했을 때 지자체 차원에서 자체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조치를 발굴하는 일 역시 회피될 수 없는 과제임.

- 둘째, 향후 ‘경기도 안전 관리계획’ 수립시 외국인 노동자가 다수 고용되어 있는 산업단지의 안전 및 외국인 노동자 사업장 안전(산재 예방 및 구제)을 주요한 과제로 포함시킬 수 있어야 함.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근거하여 수립되는 경기도 안전관리 계획은 산업단지 안전관리와 관련한 ‘세부 추진 대책’으로 “도와 시군간 협업을 통해 산업단지 안전 관리 강화” 및 “안전관리 규정 정비 및 안전보건공단 연계 강화”를 제시함. 주지하다시피 도내 주요 산단은 외국인 노동자가 다수 고용되어 있는 소중제조업체들로 구성된다는 점에서 도내 산단의 안전관리는 곧 외국인 노동자 고용 사업장의 안전 관리와 연계되는 과제임. 그러나 ‘2017 경기도 안전 관리계획’에 외국인의 안전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생략되어 있음. 경기도 안전 관리계획에 외국인 노동자의 산업안전을 명시적으로 포함시킴으로써 외국인 노동자의 산업 안전 문제를 도내 안전의 공론장에 공식적으로 제기하는 효과를 창출할 수 있게 됨.
- 셋째, 도내 다섯 개지사(경기지사, 경기북부지사, 경기서부지사, 경기동부지사, 경기중부지사)를 운영중이며 ‘경기도안전문화운동추진협의회’의 회원기관이기도 한 ‘안전보건공단’과의 업무 협조를 통해 도내 외국인 산재 취약 사업장에 대한 산업 안전 컨설팅, 위험성 평가, 외국인 노동자 대상 안전교육 등의 시행이 필요함. 이러한 프로그램에 자발적으로 참여한 사업장에는 도차원에서 상징적인 방식이나 ‘인증’을 수여함으로써 외국인 산재 경감을 위한 사업체들의 자구적인 노력을 장려하는 효과를 창출함. 안전교육에는 외국인 노동자의 문화와 상황에 정통한 지원단체 활동가들이 참여함으로써 교육의 효과를 배가시킬 수 있을 것임.
- 넷째, 외국인 노동자 산재 피해자를 위한 ‘전용 쉼터’를 설치, 운영이 요청됨. 경기도 내 외국인 노동자를 위한 쉼터는 매우 드물 뿐 더러 시설이 열악하여 이용자 만족도도 다른 서비스에 비해 낮은 편임.(오경석 외 2016) 본 조사에서 확인된 바와 같이 다수의 산재 피해 외국인 노동자는 안정적인 치료와 요양에 적합한 장소라고 하기 어려운 사고 당시 사업장 기숙사에서 통원 치료를 받고 있는 형편임. 산재 치료 과정에서 기숙사 퇴출이나 치료 종결 이전 업무 복귀를 강요받는 사례도 빈번함. 외국인 노동자 대부분은 기숙사 이외에 자율적인 주거 공간을 갖고 있지 못하다는 점에서 산재 피해 외국인 노동자의 안정적인 치료와 요양을 위한 전용 쉼터가 운영될 수 있다면 피해 구제 과정에서 매우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임.

경기도 외국인 산업재해자 실태조사

참고 문헌

- 강명희. 2002. 「외국인 근로자의 산업안전연구: 30인 이하 중소기업체를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고용노동부. 2014. 「외국인 근로자 산업재해 예방 대책」. (2014.5.8.)
- 권민지, 김덕현, 김연각, 김현중, 유현정, 장한결. 2015. 「현장 취재 논문 : 2015 농축산업 이주노동자 근로환경 관련 법제 연구」. 『공익과 인권』 15: 307-363.
- 근로복지공단. 2017. “외국인 산업재해 현황 정보공개청구”. 정보공개청구자료 (2017.3.21.)
———. 2017. “외국인 업무상질병 재해 현황”. 정보공개청구자료 (2017.5.24.)
- 김규상, 이미영, 박인정, 류향우, 김태균, 원용립, 이선웅, 송윤희. 2007.
「이주 노동자의 건강실태 및 건강관리 방안 연구」. 산업안전보건연구원.
- 김기웅. 2010. 「외국인 노동자의 유해화학물질 대사와 민감도 차이에 의한 인류생태학적 연구.
1, styrene과 toluene 노출근로자 중심」. 산업안전보건연구원
- 김삼화 의원실. 2017. “무너지는 코리안 드림, 이주노동자 산재발생을 제조업·건설업이 압도적 비중 차지”. 김삼화 의원실 2017 환노위 국정감사 보도자료 (2017.9.26.).
- 김승대. 2009. 「외국인 근로자들의 일상적인 건강장애에 미치는 영향」.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9(9): 268-277.
- 김승만. 2011. 「한국에서 이주노동자들의 노동현실」. 『정세와노동』 (67): 52-59.
- 김용규. 2010. 「국내 이주노동자의 정신건강 현황 및 과제」. 정신건강정책포럼 4(1): 38-53.
- 김일룡. 2002. 「일부지역 외국인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관한 태도와 지식 및 행태」.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창연, 강인화. 2009. 「서울시 이주여성노동자 안전 실태 및 개선방안 연구」. 서울시 여성가족재단.
- 김현숙, 최송식, 김희재, 박병현. 2015. 「외국인 노동자 건강정책의 쟁점과 정책 제언」.
『사회복지정책』 42(4): 203-229.
- 김혜선, 정진주. 2015. 「제조업 외국인근로자의 산업안전보건과 사업장 변경의 딜레마」.
『산업노동연구』. 21(2): 261-301.
- 남동희. 1997. 『외국인 근로자 관리실무』. 서울: 미래미디어.
- (사)노동인권회관. 2002. 『우리들의 산재왕국, 실태와 개선방안』.
- 노재철. 2010. 「미등록외국인근로자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노동법논총』 18(-): 37-90.

- 노지현. 2015. 「산업재해를 겪은 후 여성 이주노동자들의 삶에 대한 연구」.
『한국사회복지질적연구』. 9(1): 315-347.
- . 2015. 「산업재해를 경험한 이주노동자들의 삶에 관한 연구」. 서강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 2015. 「이주노동자 자살 사례 연구 -자살원인분석을 중심으로-」. 『사회복지연구』 46(1): 247-281.
- . 2016. 「남성 이주노동자의 산업재해 후 삶에 대한 현상학적 연구」.
『한국사회복지학』 68(1): 23-52.
- 노지현, 강선경. 2016. 「산업재해를 겪은 이주노동자들의 한국생활 경험과정에 관한 연구: 근거이론 접근」. 『사회복지정책』 43(1): 135-164.
- 대한산업보건협회. 2006. 「이주노동자의 산업재해」. 『안전기술』 104(-):60-64.
- 매일노동뉴스. 2017. “이주노동자 산재발생률 국내노동자의 6배 육박”. (2017.9.25.)
- 박수만, 정혜선, 김용규, 이윤정. 2007. 『외국인 근로자의 사업장 보건관리 개선방안』.
한국노동조합총연맹.
- 박은주. 2012. 「외국인 근로자 산재보상실태 분석」. 근로복지공단 근로복지연구원.
- 박혜립, 이선애, 김순신, 김동건, 홍가연, 양원호, 이식용. 2012.
「외국인 근로자의 산업재해 현황과 그 특성」. 『자연과학연구논문집』 10(1): 103-110.
- 방명석, 김건우. 2011. 「건설업에 종사하는 외국인근로자의 산업재해분석 및 예방대책」.
『대한안전경영과학회 학술대회논문집』 2011(1): 365-371.
- 변광섭. 2004. 「외국인 근로자의 안전사고 현황과 개선대책」. 한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부종식. 2012. 「이주노동자의 의료인권」. 『생명윤리정책연구』 6(1): 69-81.
- 설동훈. 2003. 「외국인 근로자의 산업재해 실태와 예방을 위한 정책제언」. 『安全保健』 15(6): 16-23.
- . 2009. 「빈곤의 길목에 선 이주노동자」. 『황해문화』 64(-): 142-162.
- 설동훈, 김종일, 이종구, 이상철. 1995. 「한국의 외국인 노동자 정책과 지원운동」.
『경제와 사회』 (28): 77-100.
- 설동훈, 홍승권, 고현웅, 김인태. 2005. 「외국인노동자 보건의료실태 조사연구」. 국제보건의료발전재단.
- 성서공단노조. 2013. 「성서이주노동자 건강권 실태조사 결과」. 『레프트대구』 -(7): 158-183.
- 손기상, 이승영. 2009. 「안전관리자의 건설현장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의식조사」.
『建設 安全技術』 49(-): 70-77.

- 송서순. 2010. 「외국인근로자 고용제도의 헌법적 함의」. 제주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송연이, 김희걸, 이꽃메, 정혜선, 김현리, 현혜진, 김정희. 2007.
「외국인 근로자의 산업안전보건 지원체계」. 『한국직업건강간호학회지』 16(1): 67-77.
- 송윤희, 김규상, 이선웅, 최선행. 2008. 「이주 노동자들의 생물학적 노출 지표와 건강 실태:
2005년 특수건강진단 결과 자료 토대」. 『대한직업환경의학학회지』 20(2): 63-73.
- 송효민, 김광희, 신윤석. 2015. 「외국인 건설 근로자의 재해발생 매커니즘 분석」.
『한국방재학회 학술발표대회논문집』 14(-): 140-140.
- 신성수, 배영복, 하행봉, 강경식. 2015. 「외국인근로자 건설현장의 재해분석 및 위험성 연구평가」.
『대한안전경영과학회지』 17(2): 35-45.
- 심규범. 2002. 「건설현장의 외국인근로자 활용 실태 및 개선 방향」.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건설동향브리핑』 2002(-): 2-21.
- 오경석, 이경숙, 박미화. 2016. 「경기도 외국인주민 지원기관 현황 및 지원서비스 수요조사」.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 .
- 양옥경, 박향경, 손가현. 2010. 「이주노동자의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연구」.
『정신보건과 사회사업』 35(-): 141-175.
- 양재영. 2012. 「이달의 안전교실 - 외국인 근로자의 안전·보건 관리」. 『안전기술』 174(-): 64-68.
- 양학수. 2004. 「건설현장 외국인근로자의 실태조사를 통한 재해예방대책별 상대적 중요도 분석:
외국인 산업연수생을 중심으로」. 서울산업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외국인노동자의료공제회. 2003. 『외국인노동자 직업병 실태조사 보고서』.
-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2009. 「고용허가제 시행 5주년 이주근로자 노동권 실태조사」.
- 유길상, 이규용. 2002.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실태와 정책과제」. 한국노동연구원
- 유길상, 박영범, 어수봉, 박성재. 2007. 『외국인고용허가제시행 3주년 평가 및 제도개선방안 연구』.
노동부.
- 유동수. 2004. 「외국인 근로자 사업장의 안전보건 조사 연구」.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관형. 2011. 「외국인근로자의 안전보건실태와 건강보호방안 연구」.
『대한안전경영과학회 학술대회논문집』 2011(2): 35-39.

- 이관형, 조흥학. 2012. 「외국인근로자의 근로환경 및 안전보건실태 조사 연구」.
『대한안전경영과학회지』 14(1): 53-63.
- 이관형, 조흥학, 유기호. 2010. 「외국인 근로자의 안전보건 실태와 보호방안 연구」.
산업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
———. 2012. 「인간/시스템안전분야 : 우리나라 전체근로자와 외국인근로자의
산업재해율과 사망만인율 비교 연구」. 『한국안전학회지』 27(1): 96-104.
- 이돈철. 2012. 「건설현장 외국인근로자의 산업재해분석과 안전관리 방안에 관한 연구」.
인천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돈철, 김치경. 2012. 「건설현장 외국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분석과 안전관리 방안에 관한 연구」.
『대한안전경영과학회 학술대회논문집』 2012(1): 13-21.
- 이병운, 고준기. 2010. 「외국인근로자의 보건의료 현황과 문제점」. 『漢陽法學』 31(-): 323-352.
- 이선웅, 김규상, 김태우. 2008. 「이주노동자와 국내 한국인노동자의 산업재해현황 및 특성 비교」.
『대한직업환경의학회지』 20(4): 351-361.
- 이수연. 2014. 「외국인여성근로자의 노동인권 실태」. 『젠더법학』 5(1-2): 101-153.
- 이승길. 2001. 「외국인 근로자의 안전보건실태 및 산재보험 처리에 관한 조사 연구」.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연심. 1997. 「국내 외국인 노동자의 산업재해보상에 관한 연구:
상당사례 내용을 중심으로(1996. 2)」. 『연세사회복지연구』 4(-): 337-338.
- 이연옥. 2016. 「미등록외국인근로자의 법적 지위와 관련 정책의 문제점」.
『다문화콘텐츠연구』 21(-): 7-42.
- 이재섭, 김우람, 이자효. 2014. 「건설산업에서 외국인 근로자의 적절한 안전교육 실시 방법」.
『한국구매조달학회지』 13 (1 통권20호): 53-69.
- 이창익, 정숙희. 2007. 『외국인 노동자의 노조가입 욕구 및 성향에 관한 연구』. 한국노총중앙연구원.
- 이창원, 최서리, 오경석, 박우, 정정훈, 정기선. 2015. 『건설업 종사 외국인근로자 인권상황 실태조사』.
국가인권위원회.
- 이한숙, 김사강, 강혜숙, 오경석, 우삼열. 2017. 『이주 인권가이드라인 재구축을 위한 연구』.
국가인권위원회.

- 장호면. 2004. 「외국인근로자의 안전의식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장호면, 김경훈, 김재준. 2009. 「건축공사에서 외국인근로자의 안전의식에 관한 연구」.
『한국건축시공학회지』 9(1): 75-80.
- 전북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외국인노동자대책협의회. 2002. 『국내 외국인근로자 인권 상황
실태조사』. 국가인권위원회.
- 전용일, 이명숙, 손동희. 2016. 『2015년도 외국인근로자 보건관리 실무역량강화 기초 및 심화교육
결과보고서』.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 전용일, 한종희, 손동희. 2016. 『외국인근로자 보건의료지원 사업 개발 결과보고』.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 정경환, 신윤석. 2012. 「건설업 외국인근로자의 재해현황 분석과 산업안전보건 의식조사를 통한
안전관리 개선 방안」. 『건축시공』 12(6): 6-14.
- 정경환, 이혜인, 권혜리, 박정은, 신윤석. 2015. 「국내 건설현장 외국인 근로자 안전교육 모델 개발」.
『한국건축시공학회지』 15(2): 227-235.
- 정민구, 신대웅, 정경환, 신윤석. 2014. 「외국인 건설근로자의 직무스트레스 관리 방안」.
『한국방재학회 학술발표대회논문집』 2014(-): 308-308.
- 정병호, 오경석, 신은주, 위은진, 정진현, 이병하, 이경숙. 2011.
『이주 인권가이드라인 구축을 위한 실태조사』. 국가인권위원회.
- 정원일, 전용일. 2014. 「사업장 안전보건 환경에 따른 근로조건과 산업재해 발생」.
『한국위기관리논문집』 10(11): 323-344.
- 정원일, 이광석, 전용일. 2011. 「산재발생요인과 근로손실 분석-소규모 제조업체에 고용된
국내 근로자와 외국인 근로자 비교분석」. 『한국경제연구』 29(2): 139-174.
- 정진우. 2016. 「외국인근로자의 산업안전보건 강화방안에 관한 연구」. 『法과 政策』 22(2): 355-385.
- 정진주, 김용규, 김인아. 2013. 『외국인근로자 안전보건정보 숙지문제 해결방안 연구』.
산업안전보건연구원.
- 정혜선, 김용규, 김현리, 이꽃매, 송연이, 김정희, 현혜진, 이윤정, 김희걸. 2008. 「성별에 따른 외국인
근로자의 건강실태 및 직업적 특성」. 『한국직업건강간호학회지』 17(2): 126-137.
- 조재환. 2009. 「건설업 종사자들의 안전의식 및 안전교육과 산업재해의 인과효과에 대한 연구」.
동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조현태. 2008. 「외국인 근로자들의 건강 실태 조사 연구」. 『한국직업건강간호학회지』 17(2): 224-229.
- 조희학. 2010. 「외국인근로자의 법률적 보호와 사업주 책임」. 『노동법논총』 19(-): 57-84.
- 차옥승. 2013. 「이주노동자들의 실태와 문제점 해결 방안 모색-남양주 가구단지를 중심으로」. 『담론 201』 16(2): 165-193.
- 최재욱. 2003. 「외국인 근로자 안전보건 현황 및 정책 방향」. 『安全保健』 15(6): 24-33.
- 최재욱, 김정아, 김해준, 박종태. 1999. 「한국 일부지역의 이주근로자의 근로조건과 산업재해실태 조사」. 『대한직업환경의학회지』 11(1): 66-79.
- 하은희, 이승길, 최재욱, 홍윤철. 2002. 「외국인 근로자들의 근로실태, 산업재해 및 건강실태」. 『산업보건』 166(-): 4-13.
- 한국노동조합총연맹. 2009. 『이주노동자 보호구 착용 및 산업안전보건교육 실태조사』.
- 한국산업안전공단. 2003. 『외국인 근로자 안전보건 실태조사 연구』.
 —————. 2006. 『외국인 근로자의 산업안전보건 실태조사』.
- 한동우. 2002. 「국내 이주노동자의 실태와 사회적 대응방안」. 『비판사회정책』 -(12): 13-42.
- 황성호, 김해성, 이선희, 백남원. 2006. 「서울, 경인지역 일부 외국인 근로자들의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조사」. 『한국산업보건학회지』 16(1): 17-26.

경기도 외국인 산업재해자 실태조사

설문지



경기도 외국인 산업재해자 실태조사

안녕하십니까?

먼저 바쁘신 가운데 시간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는

「경기도 외국인 인권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해 설립된 기관으로

경기도 지원으로 「경기도 외국인 산업재해자 실태조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귀하께서 응답하신 내용은 외국인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산업재해자의 충분한 치료와 보상을 보장하기 위한 정책 자료로 활용될 것입니다.

응답 내용은 통계법 제33조에 따라 통계적 목적 외에는 사용하지 않을 것을

약속하오니, 정확하고 솔직하게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설문에 응해주심에 감사드리며,

귀하의 삶에 늘 행복과 건강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2017년 6월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 소장 오 경 석

※ 본 조사의 응답 내용은 통계법 제33조에 의하여 통계적 목적 외에는 절대 사용하지 않을 것을 약속드립니다.
본 조사와 관련된 문익은 아래 연락처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tel_031. 492. 9347 email_gmhr@gmhr.or.kr 연구팀장 이경숙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
Gyeonggi Institute of Research and Policy Development for Migrants' Human Rights

A. 기본정보 (공통)

※ 최근 3년 이내에 업무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다치거나 질병이 생겨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은 경험이 있거나 현재 치료 중인 분만 응답해 주세요. 산재보험을 신청하지 않고, 본인이나 회사가 부담한 분도 응답해 주세요.

A1. 당신은 업무 중 어떤 유형의 사고나 병을 경험하셨나요?

(경험이 많다면 가장 최근의 것을 생각하고 한 가지만 표시하십시오.)

- | | | | |
|----------------|--------------|------------|------------|
| ① 떨어짐 | ② 넘어짐 | ③ 부딪힘 | ④ 물체에 맞음 |
| ⑤ 무너짐 | ⑥ 끼임 | ⑦ 절단·베임·찢림 | ⑧ 감전 |
| ⑨ 폭발·파열 | ⑩ 화재 | ⑪ 깔림·뒤집힘 | ⑫ 이상 온도 접촉 |
| ⑬ 불균형 및 무리한 동작 | ⑭ 화학물질 누출·접촉 | ⑮ 폭력 행위 | ⑯ 동물 상해 |
| ⑰ 업무상 질병 | ⑱ 기타 () | | |

A2. 당신이 업무 중 사고로 다쳤거나 병에 걸렸을 당시, 어디에서 일했습니까?

(경험이 많다면 가장 최근의 것을 생각하고 한 가지만 표시하십시오.)

- ① 공장 ② 건설현장 ③ 농장, 축사 ④ 병원, 식당 ⑤ 기타()

A3. 당신의 국적은 무엇입니까?

- | | | | | |
|----------|----------|----------|--------|---------|
| ① 중국(동포) | ② 중국(한족) | ③ 베트남 | ④ 필리핀 | ⑤ 태국 |
| ⑥ 몽골 | ⑦ 인도네시아 | ⑧ 우즈베키스탄 | ⑨ 스리랑카 | ⑩ 방글라데시 |
| ⑪ 미얀마 | ⑫ 캄보디아 | ⑬ 파키스탄 | ⑭ 네팔 | ⑮ 기타() |

A4. 당신이 업무 중 다쳤거나 병이 났을 때, 체류 자격(VISA)은 무엇입니까?

- | | | | |
|----------------|---------------|---------------|------------|
| ① E-9 (비전문 취업) | ② H-2 (방문 취업) | ③ E-7 (특정 활동) | ④ F-2 (거주) |
| ⑤ F-4 (재외동포) | ⑥ F-5 (영주) | ⑦ F-6 (결혼 이민) | ⑧ G-1 (기타) |
| ⑨ 미등록 | ⑩ 기타 () | | |

A5. 당신의 성은 무엇입니까?

- ① 남자 ② 여자 ③ 기타

A6. 당신은 현재 몇 살입니까?

- | | | | | |
|-------------|-------------|-------------|-------------|-------------|
| ① 19세 미만 | ② 20세 ~ 24세 | ③ 25세 ~ 29세 | ④ 30세 ~ 34세 | ⑤ 35세 ~ 39세 |
| ⑥ 40세 ~ 44세 | ⑦ 45세 ~ 49세 | ⑧ 50세 ~ 54세 | ⑨ 55세 ~ 59세 | ⑩ 60세 이상 |

A7. 당신은 2017년 6월 현재까지 한국에 거주한 지 얼마나 되었습니까?

(재입국의 경우 최초 입국 시점부터 현재까지 기간으로 표시하십시오.)

- ① 1년 미만 ② 1년 이상 ~ 3년 미만 ③ 3년 이상 ~ 5년 미만 ④ 5년 이상

A8. 사업장 내에서 업무와 관련된 한국어 대화가 어느 정도 가능한가요?

- ① 거의 못함
- ② 업무에 필요한 최소한의 대화만 가능
- ③ 일상생활이나 업무에 필요한 대화가 어느 정도 가능
- ④ 거의 모든 내용 이해

Gyeonggi Institute of Research and Policy Development for Migrants' Human Rights

B. 원인과 누락 (공통)

B1. 당신이 업무 중 사고로 다쳤거나 병에 걸렸을 때, 일하던 곳의 직원은 몇 인이었습니까?

- ① 5인 미만 ② 5인 ~ 9인 ③ 10인 ~ 29인 ④ 30인 ~ 49인 ⑤ 50인 ~ 99인
- ⑥ 100인 ~ 299인 ⑦ 300인 ~ 499인 ⑧ 500인 ~ 999인 ⑨ 1,000인 이상

B2. 당신이 업무 중 사고로 다쳤거나 병에 걸렸던 때는, 그 사업장에서 얼마 동안 일하고 있을 때였습니까?

- ① 6개월 미만 ② 6개월 이상 ~ 1년 미만 ③ 1년 이상 ~ 2년 미만 ④ 2년 이상 ~ 3년 미만
- ⑤ 3년 이상 ~ 4년 미만 ⑥ 4년 이상 ~ 5년 미만 ⑦ 5년 이상 ~ 10년 미만 ⑧ 10년 이상

B3. 다음은 당신이 업무 중 사고로 다쳤거나 병에 걸리게 된 원인이나 이유와 관련된 질문입니다. 각 항목에 대한 동의 정도를 표시하십시오.

항목	매우 그렇다	그렇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1. 평소 의료기관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없어 사고를 당하거나 병에 걸렸다.	①	②	③	④
2. 몸이 아플 때도 회사에서 일을 쉬지 못하게 해서 사고를 당하거나 병에 걸렸다.	①	②	③	④
3. 작업 중 휴식 시간을 충분히 사용할 수 없어서 사고를 당하거나 병에 걸렸다.	①	②	③	④
4. 한국어가 익숙하지 않아서 사고를 당하거나 병에 걸렸다.	①	②	③	④
5. 사업장 이동이 허용되지 않아서 사고를 당하거나 병에 걸렸다.	①	②	③	④
6. 동료의 조력을 충분히 받지 못해서 사고를 당하거나 병에 걸렸다.	①	②	③	④
7. 사업장 내에서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차별을 받아 사고를 당하거나 병에 걸렸다.	①	②	③	④

항목	매우 그렇다	그렇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8. 안전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해서 사고를 당하거나 병에 걸렸다.	①	②	③	④
9. 적절한 안전장구를 지급 받지 못해서 사고를 당하거나 병에 걸렸다.	①	②	③	④
10. 관리자가 업무 내용을 자세히 설명해주지 않아 사고를 당하거나 병에 걸렸다.	①	②	③	④
11. 작업할 때 사용하는 기계/기구 결함 때문에 사고를 당하거나 병에 걸렸다.	①	②	③	④
12. 무거운 물건을 반복적으로 다루다가 사고를 당하거나 병에 걸렸다.	①	②	③	④
13. 장시간의 초과근무 때문에 사고를 당하거나 병에 걸렸다.	①	②	③	④
14. 작업장 내의 소음/분진/화학물질 때문에 사고를 당하거나 병에 걸렸다.	①	②	③	④
15. 한국인 동료나 관리자의 폭행 때문에 사고를 당하거나 병에 걸렸다.	①	②	③	④
16. 한국에 온 뒤 급격한 날씨, 음식, 생활습관(화장실 사용 등)의 변화로 사고를 당하거나 병에 걸렸다.	①	②	③	④
17. 한국 생활의 외로움, 우울감 때문에 사고를 당하거나 병에 걸렸다.	①	②	③	④

B4. 당신은 업무 중 사고로 다쳤거나 병에 걸렸으나, 산재보험 혜택을 받지 못한 동료를 보았거나, 그런 근로자가 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까?

① 아니요

② 예 

B4-1. 업무 중 사고로 다쳤거나 병에 걸렸으나 산재보험 처리가 되지 않은 근로자는 누구입니까?

① 외국인 근로자 ② 한국인 근로자

B5. 당신은 업무 중 사고로 다쳤거나 병에 걸렸을 때, 산재보험을 신청했습니까?

① 예 ('C1'로 가세요)

② 아니요 ('D1'로 가세요)

C. 산재보험 신청한 경우만

C1. 당신의 산재보험 처리에 도움을 준 기관이나 사람은 누구입니까?
(한 가지만 표시하십시오.)

- | | | |
|---------------|-------------|---------|
| ① 사업주 | ② 직장 동료 | ③ 모국 사람 |
| ④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 ⑤ 노무사 및 변호사 | ⑥ 종교기관 |
| ⑦ 의사 및 병원 관계자 | ⑧ 기타 () | |

C2. 다음은 산재보험 이용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각 항목에 대한 동의 정도를 표시하십시오.

항목	매우 그렇다	그렇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1. 산재보험 신청 방법을 잘 몰라 어려움을 겪었다.	①	②	③	④
2. 사고나 질병 입증에 어려움을 겪었다.	①	②	③	④
3. 산재승인이 빨리 되지 않아 병원비 납부 등으로 생활고를 겪었다.	①	②	③	④
4. 산재신청 및 보상과정에서 사업주가 협조하지 않아 어려움을 겪었다.	①	②	③	④
5. 병원 치료 시 자부담 비용이 많아서 어려움을 겪었다.	①	②	③	④
6. 산재 치료 및 요양 기간이 짧아서 어려움을 겪었다.	①	②	③	④
7. 산재 진행절차 등에 관해 설명해 주는 사람이 없어 불안하였다.	①	②	③	④
8. 사업주가 임금을 적게 신고하여 모든 보상을 적게 받았다.	①	②	③	④
9. 산재 치료 및 보상과정에서 이의가 있었으나 관련 정보를 알 수 없어서 어려움을 겪었다.	①	②	③	④
10. 산재 치료 및 보상과정에서 설명을 듣기는 했으나 통역이 없어서 제대로 이해할 수 없었다.	①	②	③	④
11. 사업주는 별것도 아닌 일에 산재 신청해서 본인이 법적인 불이익(과태료, 벌금)을 받았다며 비난했다.	①	②	③	④
12. 산재보험 처리와 관련하여 대행수수료를 너무 많이 내서 부담되었다.	①	②	③	④
13. 근로복지공단 종사자가 치료가 끝나지 않았는데 종결할 것을 요구했다.	①	②	③	④

▶ 'E1'으로 가세요

D. 산재보험 신청안한 경우만

D1. 당신이 업무 중 사고로 다쳤거나 병이 났을 때, 사업주(관리자)가 산재보험으로 처리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해당하는 항목에 모두 표시하십시오.)

- ① 아무런 설명 없이 그냥 하지 말라고 했다.
- ② 부상이나 질병 정도가 약해서 공상으로 처리하자고 했다.
- ③ 노동법상 사업장에 문제(감사, 벌금, 외국인 쿼터 제한)가 생긴다고 했다.
- ④ 산재보험을 신청하지 않으면 사업장 이동을 시켜준다고 했다.
- ⑤ 산재보험을 신청하면 해고한다고 했다.
- ⑥ 산재 적용사업장이 아니라고 했다.
- ⑦ 사업주가 충분한 치료와 보상을 해 준다고 했다.
- ⑧ 불법체류자/불법고용자라서 산재가 안 된다고 했다.
- ⑨ 개인적인 사고(실수, 동료 폭행)라 산재가 안 된다고 했다.
- ⑩ 산재로 인정받기 어려우니 하지 말라고 했다.
- ⑪ 회사에서 아직 산재로 처리한 적이 없다고 했다.
- ⑫ 외국인이라서 안 된다고 했다.
- ⑬ 기타 ()

D2. 치료비는 누가 부담했습니까?

- ① 본인
- ② 사업주 (사장님)
- ③ 사업주와 본인이 나누어서

D3. 다음은 산재보험으로 처리하지 않은 경우 치료 과정에서 있을 수 있는 어려움입니다. 각 항목에 대한 동의 정도를 표시하십시오.

항목	매우 그렇다	그렇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1. 사업주는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병원으로 데리고 가지 않았다. (동네 작은 병원, 아는 병원으로 갔다)	①	②	③	④
2. 병원 입원 및 진료 시에 의사에게 거짓말 (개인적인 이유로 인한 상해)을 하라고 했다.	①	②	③	④
3. 사업주는 충분히 치료받지 않았는데 퇴원 및 치료중단을 종용했다.	①	②	③	④
4. 사업주는 치료 시 충분한 조력(병원비, 동행)을 해주지 않았다.	①	②	③	④
5. 사업주는 치료 중임에도 사업장에서 일하라고 했다.	①	②	③	④
6. 사업주는 치료 중에 월급을 주지 않거나 조금만 주었다.	①	②	③	④

항목	매우 그렇다	그렇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7. 사업주는 재해자 때문에 자신이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했다며 면박을 주었다.	①	②	③	④
8. 사업주는 재해자가 사업장에 안 좋은 영향을 끼친다며 기속사에서 나가라고 했다.	①	②	③	④
9. 적절한 치료(의료기관, 기간)를 받지 못하여 장애가 생기거나 장애가 심해졌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D4. 당신은 급여 및 장애에 대하여 사업주로부터 제대로 된 보상이나 충분한 보상을 받았습니까?

① 예 ('E1'로 가세요)

② 아니오 

D4-1. 치료비나 급여, 장애 보상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면, 왜 나중에라도 산재보험을 신청하지 않았나요? (한 가지만 표시하십시오.)

① 신청할 수 있는지 몰라서
 ② 신청서류, 절차 등을 잘 몰라서
 ③ 신청하지 않겠다고 사업주와 약속해서
 ④ 산재 처리 대신 사업장 이동을 선택했으므로
 ⑤ 현재도 그 사업주와 계속 일하고 있으므로
 ⑥ 직장생활 중에 처리할 시간을 낼 수 없어서
 ⑦ 신청해도 보상받을 수 있는 금액이 많지 않아서
 ⑧ 불법채류/불법고용 상태가 드러날까 봐
 ⑨ 기타 ()

E. 사후 처리 (공동문항)

E1. 치료 및 요양 과정에서 있을 수 있는 외국인 차별에 대한 질문입니다.
각 항목에 대한 동의 정도를 표시하십시오.

항목	매우 그렇다	그렇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1. 주변 사람들로부터 '피병'이라는 비난을 받은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2. 의료진으로부터 외국인이라서 차별을 받은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3. 병원이나 요양시설의 한국인 환자로부터 차별을 받은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4. 한국어 소통이 어려워 불이익을 받은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5. 출신국으로 인한 차별을 받은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6. 음식 등으로 인한 불편을 겪은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7. 의료진의 진료 방식으로 인한 불편을 겪은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E2. 당신은 현재 치료 및 요양 중입니까?

① 예 ('F1'로 가세요)

② 아니요 ('E3'으로 가세요)

E3. 업무 중 사고로 다쳤거나 병에 걸렸을 때, 치료 및 요양 기간은 어느 정도였나요?

① 1일 ~ 3일

② 4일 ~ 7일

③ 8일 ~ 14일

④ 15일 ~ 28일

⑤ 29일 ~ 90일

⑥ 91일 ~ 180일

⑦ 6개월 이상

E4. 통원치료 동안 당신은 어디에서 생활했습니까? (중복 표시 가능)

① 자기 집

② 사고(질병) 당시 사업장 기숙사

③ 친구나 아는 사람의 집

④ 친구의 직장 기숙사

⑤ 쉼터

⑥ 기타 ()

E5. 당신은 치료 및 요양 종결 후에도 계속 일을 하고 있습니까?

① 예 |||||

E5-1. 치료 및 요양 종결 후에 일한 곳이
당신이 업무 중 사고로 다쳤거나 병이 난 곳입니까?

- ① 예 ② 아니오

② 아니오 |||||

E5-2. 일을 시작하지 않은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신체적 후유증
- ② 정신적 후유증 (두려움 및 의욕상실)
- ③ 재해 사업장 사용주의 복귀 거부
- ④ 재취업 정보 부족
- ⑤ 본국 귀환 준비
- ⑥ 기타 ()

E6. 다음 각 항목에 대한 동의 정도를 표시하십시오.

항목	매우 그렇다	그렇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1. 산재종결 후 후유 증상 치료 및 재요양이 필요하였다.	①	②	③	④
2. 공단에서 후유 증상 치료나 재요양 승인을 받는 것이 어려웠다.	①	②	③	④
3. 장애보상 신청방법을 몰라 어려움을 겪었다.	①	②	③	④
4. 장애보상금이 너무 적은 것 같다.	①	②	③	④
5. 사업주가 치료 종결 후 재해 원인에 대한 아무런 조치 없이 사업장에 복귀하여 동일업무를 하라고 했다.	①	②	③	④

F. 종합 (공통)

F1. 외국인근로자가 업무 중 사고로 다치거나 병에 걸리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는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중복 표시 가능)

- ① 작업 환경 개선
- ② 자유로운 사업장 이동
- ③ 적절한 휴식 시간 및 휴가 보장
- ④ 사업장 내 외국인 차별 철폐
- ⑤ 안전교육
- ⑥ 안전 장비 지급 및 착용
- ⑦ 숙련된 한국어 습득
- ⑧ 스스로 조심하기
- ⑨ 적절한 근로 시간
- ⑩ 노동조합의 결성(사업장 내 근로자단체 구성)

F2. 업무 중 사고로 다쳤거나 병에 걸렸을 때, 당신이 당한 가장 큰 손실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한 가지만 표시하십시오.)

- ① 경제적 손실
- ② 신체적 손상
- ③ 마음의 상처
- ④ 인간관계 악화
- ⑤ 자신감 상실
- ⑥ 기타 ()

F3. 업무 중 사고로 다쳤거나 병에 걸린 경험이, 당신에게 끼친 영향은 얼마나 지속되리라고 생각합니까?

- ① 1년 미만
- ② 1년 이상~2년 미만
- ③ 2년 이상~3년 미만
- ④ 3년 이상~5년 미만
- ⑤ 5년 이상~10년 미만
- ⑥ 10년 이상
- ⑦ 평생

- 설문에 성실히 답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15385)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화정로 26 (초지동 667-2, 4층)
26 Hwajeong-ro, Danwon-gu, Ansan-si, Gyeonggi-do, 15385 Korea
전화. 031 492 9347 전송. 031 492 9349 누리집. www.gmhr.or.kr